



영안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경중심의 교회요, 복음중심의 교회요, 선교중심의 교회요, 또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영안교회는?	균형목회상	비전(Vision)
1. 그리스도의 몸	1. 영성목회	1. 성령충만
2. 복음의 일꾼	2. 치유목회	2. 확실한 신앙고백
3. 교회의 일꾼	3. 교육목회	3. 고지선점(인물 양성)
4. 전도 지역	4. 비전목회	4. 통일시대 준비
5.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사명들	세가지전략
1. 전도	1. 나이테 전략 - 신앙의 중심으로 흡수
2. 양육	2. 평생 교육 -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
3. 성숙, 교육	3. 평신도 지역 - 은사 발견 및 봉사 파견
4. 훈련	
5. 예배, 선교, 봉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2)

진실로 섬기는 법률 동반자,
법률사무소 청지기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신앙의 가치 위에서
정직과 신뢰를 지키며
교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가사 · 상속

형사

희생 · 파산

기업 자문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한 영혼 한 가정을 귀히 섬기겠습니다.”

청지기 법률사무소 청지기

오시는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17 윤앤준빌딩 2층 (서초역 1번 출구 100m)
대표전화 : 02-525-6000
E-MAIL : desk@chungzigi.com

연구총서 2025년

디아스포라와 인도적 지원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디아스포라와 인도적 지원

연구총서 2025년



사단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People in Northeast Asia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동북아한민족협의회는
1999년에 발족하여 2003년 2월 15일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대북지원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 2008~2017년 기간에는 남북 교류중단으로 NGO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탈북자 주민들을 돕고 있다. 그동안 사단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는 북한동포 의약품 지원(항생제, 영양제, 비타민, 결핵약 등), 북한동포 생필품지원(밀가루, 식용유 등), 북한 농어촌 지역 옷감지원, 생필품(라면, 쌀, 세탁비누 등), 비료지원 등을 통해 민족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로운 복음통일의 시대를 향해 기도로 비상하며 복음통일의 역군으로서 NGO가 되길 갈망하고 있다.

동북아한민족연구소는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과제를 연구 목적으로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및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단행하는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산하 연구소이다.

디아스포라와 인도적 지원

디아스포라와 인도적 지원 연구총서 2025년

초판 1쇄 발행 2025년 12월 15일

지은이 | 동북아한민족협의회

펴낸곳 | 기독교연합신문사(도서출판 UCN)

등록번호 | 제21-347호

등록일자 | 1992년 6월 28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21 5층

전화 | (02) 585-2754

팩스 | (02) 585-6684

이메일 | ucndesign@naver.com

디자인&인쇄 | 기독교연합신문사 출판국

ISBN | 978-89-6006-949-7 (93230)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저자와 도서출판 UCN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디아스포라와 인도적 지원

연구총서 2025년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인사말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연구총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연구총서에는 박학다식한 학자들의 학술논문을 담았습니다. 동북아한민족협의회는 1999년 동북아아세아선교회로 시작하여 2003년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북한 동포에게 생필품과 의약품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정부의 통일정책,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본 통일 방향을 홍보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북아한민족협의회는 그동안 북한에 생필품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및 탈북민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한편으로 『동북아한민족협의회 회보』를 발행해 왔으나 향후 동북아한민족협회의 대북 지원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론적인 틀을 갖춘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선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와 인도적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보고 추후 한인 디아스포라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선교 및 북음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총서 발간을 계기로 관련 학술연구가 축적되어 동북아한민족협회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연구총서 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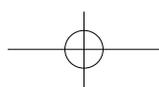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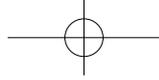
2025년 10월

사단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 양병희

차례

- ★ 디아스포라와 인도적 지원 __7
이양호 동북아한민족연구원장, 전 고려대 교수
- ★ 유대인 국제 네트워크와 디아스포라 유대인: __ 65
19세기 영국 유대인 몬테피오리의 사례연구
최영철 성균관대 교수
- ★ 미국의 이민정책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__91
우평균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 ★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인도적 지원 __151
김향은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Diaspora and Humanitarian Aid __7
Yangho Rhee President of Institute of Asian overseas korean, ex-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 Jewish International Networks and Diaspora Jewry: __65
A Case Study of Montefiore, a 19th-Century British Jew
Young Chol Choe University College, Sungkyunkwan University
 - U.S. Immigration Policy and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Immigration Policies __91
Pyung Kyun Woo Senior Fellow,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Humanitarian Support for Diaspora of Overseas Adoptees Residing in Korea __151
Hyang Eun Kim Kosin University



디아스포라와 인도적 지원

이양호*

[국문 요약]

본 논문에서는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와의 제도적 관계를 다루며 한편으로 홈랜드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아웃리치 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의 홈랜드에 대한 지원,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점점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홈랜드도 이들에 대한 아웃리치 정책을 추진하게 되며 디아스포라 개입을 표방하면서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핵심어: 디아스포라, 인도적 지원, 홈랜드, 아웃리치 정책, 송금

* 동북아한민족연구원장, 전 고려대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소르본느(Sorbonne)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앙스포(IEP de Paris)에서 소련동구권학 박사과정(DEA)을 마쳤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단독 저서로는 『China 2050 Project: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2005), 『인도의 부상: 축쇄에서 풀려난 아시아 호랑이』(2009), 『양파껍질과 마프료시카: 국가의 흥망성쇠』(2011), 『불평등과 빈곤』(2013),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6),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7), 『힌두-이슬람 국가,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9), 『중국의 변화와 대국굴기』(2022), 『기본소득』(2025) 등이 있다. 번역서로는 『문명의 충돌이나 문명의 화해냐』(2008),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2010)이 있다. 논문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중동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의 농지개혁과 사유화”,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변형과 농민, 1978~1997”, “브라질의 좌파정권과 소득불평등”, “아프리카의 소득불평등과 민주주의”, “도시의 불평등과 복지: 베를린, 파리, 런던 비교연구”,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중국과 미국의 비교” 등이 있다.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디아스포라
 - 1. 역사적으로 본 디아스포라
 - 2. 이민자
 - 3. 종교 이민
 - 4. 난민
- III.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의 제도적 상호 관계
- IV. 홈랜드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아웃리치 정책
- V. 홈랜드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개입
- VI. 인도적 지원, 디아스포라 그리고 홈랜드
- VII. 나가며

〈참고문헌〉

I. 들어가며

본 논문은 디아스포라와 인도적 지원을 국가와 연계시켜 이론화하는 작업이다. 디아스포라는 이민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는 디아스포라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하고 자국 디아스포라에 대한 ‘아웃리치 정책^{outreach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역사적으로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외국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또는 최근 외국에 정착한 자국 이민자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 디아스포라의 국제 송금^{international remittances}, 투자 등을 활성화하고 홈랜드^{homeland country}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도 원래 고향이던 고국인 홈랜드에 투자하거나 가족 친지에게 송금 등을 통해 홈랜드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긴장, 팬데믹 등의 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홈랜드가 위기에 처할 때 디아스포라가 홈랜드를 지원하기도 하고 역으로 국가도 자국 디아스포라가 외국에서 반이민정서로 인해 곤경에 처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사실 디아스포라는 대체로 살기 힘들어 홈랜드를 떠나 외국에 정착한 사람들로써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자 여전히 발전하지 못한 홈랜드에 투자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물론 고급 인재들이 홈랜드에 남아 있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면서 두뇌유출^{brain drain}로 홈랜드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홈랜드가 어려울 때 송금 등을 통해 홈랜드의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문화적 종족적 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송금 등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처한 기후 위기,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전쟁과 기아 등으로 홈랜드가 위기에

처할 때 구세주로 등장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자체도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지역을 잘 알고 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구호단체나 인도주의적 지원단체보다 더 효율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디아스포라 개념은 고대 그리스어의 동사인 스페이로(*speiro*)에서 나왔으며 디아(*dia*)라는 말이 붙어 ‘흩어 퍼짐(*dispersion, scattering*)’을 의미한다. 물론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사는 유대인 공동체의 역사와 관계가 있고 유대교에서는 디아스포라가 약속된 땅에서 유대인 추방을 의미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과거 유대인들을 지칭했으나 이제는 이민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 확산(*dispersion*)을 말하며 이스라엘 영토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diaspora를 *speiro*(sow) + *dia*(over)로 본 것이다. 1975년 웹스터 사전(*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에서는 디아스포라를 ‘바빌론 추방 이후 팔레스타인 밖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식민지의 정착’ 즉,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규정하였다. 1993년까지 옥스퍼드 영어사전(*New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이방인 국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흩어 퍼지는 현상으로 규정했다. 점차 디아스포라를 유대인을 넘어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Thucydides*)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에서 디아스포라를 예기나인섬 사람들(*Aeginetans*)의 퍼짐으로 보았다. 결국,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들이 퍼져 나가는 것을 디아스포라로 본 것이다.¹ 1990년대 이전에는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에 한정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강제적 및 자발적 이민자를 포함하게 되었다. 추방자(*exiles*), 난민(*refugees*), 이민자(*immigrants*), 종교적 소수자, 망명 신청자(*asylum-seekers*) 등도 포함되었다. 이민자가 국적까지 얻고 후손을 낳아 정착해도 제1세대뿐만 아니라 몇 세

1 Sheffer 2003, p.9.

대를 거친 후손까지도 디아스포라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현대의 디아스포라는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많아져 더 이상 영토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민족주의와 긴장 속에 처해 있다.² 디아스포라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도 종족적 또는 민족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란 감렌 Alan Gamlen이 2019년 출간한 서적 『인간지정학 Human Geopolitics: States, Emigrants, and the Rise of Diaspora Institutions』에서 1750년대 이후 디아스포라와 유출 이민자 emigrants의 단어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었고 보았다. ‘홈랜드 밖에 사는 사람들 people living outside their homeland’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민자보다 디아스포라가 더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고 보았다.³ 디아스포라는 거의 유출 이민자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보통 영어권에서는 유출 이민자 emigrant와 유입 이민자 immigrant를 구분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둘 다 이민자로 하고 있어 혼동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개념은 출신 국가를 떠나는 유출 이민자이며 유입 이민자는 아니다. OECD가 2015년에 출간한 『이민자와 연계: 디아스포라의 세계적 개요 2015년 Connecting with Emigrants: A Global Profile of Diasporas 2015』에서도 부제에서 보는 것처럼 유출 이민자와 디아스포라를 혼용해 같이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아스포라를 분석하고 디아스포라 - 홈랜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출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은 홈랜드에서 살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홈랜드를 등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점차 이들이 목적지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수용 국가 host country 에서 정착하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홈랜드에 대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지원을 하는 과정이

2 Pahor 2023, p.200.

3 Gamlen 2019, pp.8-9.

나타난다. 홈랜드가 위기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홈랜드를 돕는 것이다. 디아스포라가 보내는 국제 송금 등은 홈랜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물론 홈랜드도 디아스포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디아스포라 담당 기구를 두거나 이들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연 재해 등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스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리스 경제위기는 그리스 디아스포라의 크기를 확대시켰다. 50만 명의 유출 이민자가 그리스를 떠나 해외에서 직업을 찾을 기회를 얻으려 했다. 역사적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노동 순수출국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민 물결이 있었다.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1920년대까지 첫 번째였고 미국이 목적지 국가였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로 백만 명 이상이 그리스를 떠나 산업 붐을 맞은 서유럽에서 노동력 갭을 메워주었고 멀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까지 이주했다. 2010년 세 번째 이민이 있었다. 세 번째 이민은 앞의 두 번의 이민과는 달리 숙련된 노동력들이 주로 EU 국가로 나갔다. 그리스가 위기를 맞이하여 유출 이민이 늘어남으로써 홈랜드와 디아스포라 간의 관계도 변한다. 그리스가 디아스포라를 지원하기 어려워지자 오히려 디아스포라가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디아스포라 개입 diaspora engagement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⁴ 또한 구소련이 붕괴하자 흑해와 코카서스 지역의 그리스 공동체가 정치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리스 정부와 미국의 그리스 디아스포라, 구소련의 그리스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같은 부유한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이에 연계를 구축해 지원하였다.⁵

이 논문은 이러한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와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보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적 이민과 관련하여 라

4 Anastasakis et al. 2022, pp.2-3.

5 Grigoriadis 2022, p.235.

벤스타인의 법칙 [Ravenstein's law](#)이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이동한다. 대도시는 주민이 증가하는데 출생률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이민자가 유입하기 때문이다. 목적지 국가의 이민자 수는 산업, 무역,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증가한다. 각 이민은 회귀 이민을 동반한다. 이러한 논리가 1885~1889년 영국과 웨일즈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들었던 라벤스타인 [Ravenstein Ernst Georg](#)의 논리였다.⁶ 이러한 논리에 대해 국제적 이민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국제적 이민은 후진국에서 자본주의 시장이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세계경제체제론 [world-system theory](#), 국제적 이민은 경제적 요인 특히 임금 격차로 결정된다는 신고전주의 경제론 [theory of neoclassical economics](#), 국제적 이민은 착취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이라는 신맑스이론 [neo-Marxist theory](#), 이민 네트워크가 이민을 증가시킨다는 이민네트워크이론 [migration network theory](#) 등이 있다.⁷ 이 논문에서는 국제적 이민의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인 협력을 주요 분석 주제로 한다.

홈랜드는 디아스포라가 홈랜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홈랜드의 아웃리치 정책은 디아스포라 투자를 끌어들이며 홈랜드의 경제발전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거나 디아스포라의 기여를 통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웃리치 정책은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연금과 건강 케어와 같은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홈랜드에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홈랜드의 내부 갈등이나 긴장 상황에서 피스메이커 [peacemakers](#)로 역할도 할 수 있다.⁸

이 논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디아스포라의 규모 및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사회경제

6 Bunduchi and Vasile 2023, pp.19-20.

7 Bunduchi and Vasile 2023, pp.34-37.

8 IOM 2019, p.4.

적 역할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세계은행, 국제이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등에 의해 이민자, 종교이민자, 난민 등 디아스포라에 대한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세계 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등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현지인의 태도 등에 대한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민자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며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로 이주하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와의 제도적 상호 관계이다. 과거에는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와의 관계가 거의 없었지만 디아스포라가 목적지 국가에서 네트워크 등을 형성하고 홈랜드에 있는 가족 등에게 송금을 하거나 투자 등을 하게 되면서 홈랜드는 디아스포라 문제를 전담하는 국가 기구 등을 두게 되고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와의 관계를 디아스포라 전담 기구나 실제 사회경제적인 발전에의 기여 등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디아스포라에 대한 홈랜드의 아웃리치 정책이다. 아웃리치 정책으로 이민자는 목적지 국가에서 정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유입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디아스포라가 정착하면 홈랜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국제 송금을 보내거나 투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홈랜드는 해외에 나가 거주하는 디아스포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홈랜드는 이들 디아스포라에게 재외 국민 투표권 등을 부여하여 디아스포라 개입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홈랜드의 아웃리치 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넷째, 디아스포라가 홈랜드에 개입하는 디아스포라 개입을 다룬다. 가장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의 개입은 국제 송금으로 송금이 얼마나 되며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로 흘러가는지 살펴본다. 이민은 기본

적으로 두뇌유출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디아스포라가 홈랜드에 역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멘토링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도 분석한다.

다섯째, 중요한 것은 디아스포라나 홈랜드가 위기나 위협에 처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위협을 줄이기 위해 홈랜드와 디아스포라가 협력하게 된다. 이것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디아스포라가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 결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지원보다 디아스포라 개입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들이 있어 디아스포라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디아스포라

1. 역사적으로 본 디아스포라

셰퍼 Gabriel Sheffer는 2003년에 출간한 『디아스포라 정치 ^{Diaspora Politics: At Home Abroad}』라는 책에서 역사적으로 본 디아스포라, 근대의 디아스포라, 초기 디아스포라 ^{insipient diaspora}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디아스포라는 민족 - 종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혐오증 ^{zenophobia}이나 적대감이 표출될 수 있어 각국 정부가 정보 공개 등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표 1〉 고대에서 중세까지 역사적으로 본 주요 디아스포라의 숫자와 지정학적 분포

디아스포라	숫자(명)	주요 수용 국가와 지역
아르메니아인	5,500,000	이란, 튀르키예, 레바논, 시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조지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국인	35,000,000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태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남미, 유럽
드루즈인	1,000,000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독일인	2,500,000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라틴아메리카, 중동부유럽
그리스인	4,000,000	알버니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남아공, 에티오피아, 독일, 서유럽, 중동
집시	8,000,000	미국, 캐나다, 구소련, 발칸, 동중서부유럽
인도인	9,000,000	피지, 가이아나, 자메이카, 케냐,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네팔, 미얀마, 오만,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남아공, 싱가포르, 스리랑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예멘
유대인	8,000,000	미국, 캐나다, 남아공,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구소련,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출처: Sheffer(2003).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에서 중세까지 중국인 디아스포라 3,500만 명, 인도인 900만 명, 유대인 800만 명, 집시 800만 명, 아르메니아인 550만 명, 그리스인 400만 명, 독일인 250만 명, 드루즈인Druze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물론 수용 국가는 세계 각국이다.

〈표 2〉 근대 디아스포라의 숫자와 지정학적 분포

디아스포라	숫자(명)	주요 수용 국가와 지역
아프로아메리칸 (Afro-american)	25,000,000	미국
흑인노예 (Black Atlantic)	1,500,000	미국, 캐나다, 영국
헝가리인	4,500,000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미국, 캐나다, 구유고슬라비아, 구소련
이란인	3,500,000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서유럽
아일랜드인	10,000,000	미국, 영국
이탈리아인	8,000,000	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일본인	3,000,000	미국, 하와이, 브라질, 페루, 캐나다
쿠르드족	14,000,000	이라크, 이란, 시리아, 튀르키예, 독일, 프랑스, 기타 서유럽 국가
레바논인 (기독교)	2,500,000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만 국가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서아프리카
폴란드인	4,500,000	미국, 캐나다, 서유럽, 구소련
터키족	3,500,000	독일, 불가리아, 네덜란드, 키프로스, 그리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오스트리아

출처: Sheffer(2003).

근대 시대에는 디아스포라가 미국계 흑인 2,500만 명, 쿠르드족 1,400만 명, 아일랜드인 1,000만 명, 이탈리아인 800만 명 등이다.

현대 초기 디아스포라는 러시아인 2,500만 명, 멕시코인 2,000만 명, 말레이인 500만 명, 타밀족 320만 명이고 한국인도 350만 명이다.

〈표 3〉 현대 초기 디아스포라의 숫자와 지정학적 분포

디아스포라	숫자(명)	주요 수용 국가와 지역
알바니아인	1,000,000	그리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구유고
알제리인	1,500,000	프랑스, 독일, 튀니지, 모로코
불가리아인	500,000	미국, 서유럽 국가, 구소련
콜롬비아인	250,000	미국, 이스라엘
크로아티아인	350,000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쿠바인	750,000	미국
체코인	2,500,000	미국, 서유럽 국가들
이집트인	1,000,000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미국, 캐나다,
필리핀인	2,000,000	미국, 캐나다, 페르시아만 국가, 서유럽 국가
이스라엘인	750,000	미국, 캐나다, 남아공, 오스트레일리아
아이티인	750,000	미국, 캐나다, 바하마
자메이카인	300,000	미국
한국인	3,500,000	중국,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구소련
라트비아인	120,000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리투아니아인	850,000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인	5,000,000	인도, 태국, 싱가포르
멕시코인	20,000,000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모로코인	1,500,000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파키스탄인	750,000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페르시아만 국가
포르투갈인	2,000,000	프랑스, 캐나다, 미국, 영국
푸에르토리코인	600,000	미국
러시아인	25,000,000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구소련
세르비아인	130,000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슬로바키아인	1,500,000	헝가리, 미국, 캐나다, 구유고
슬로베니아인	200,000	미국, 캐나다
스페인인	1,000,000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영국, 캐나다
시리아인	750,000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타밀족	3,200,000	스리랑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우크라이나인	1,800,000	폴란드, 에스토니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인	1,000,000	캄보디아, 일본, 미국, 캐나다

출처: Sheffer(2003).

2. 이민자

디아스포라는 이민자와 난민을 포함한다. 종교이민자도 있어서 이들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디아스포라로 이민자, 종교이민자, 난민을 분석하고자 한다. 맥크리프 Marie McAuliffe와 우초 Linda A. Oucho가 IOM에서 2024년 편집하여 발행한 『세계이주리포트 World Migration Report 2024』 등 디아스포라나 이민자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리포트에서는 ‘국제 이민자’는 ‘통상의 거주지 국가를 옮긴 사람 any person who has changed his or her country of usual residenc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출 이민자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국제 이민자는 2020년 2억 8,100만 명이였다. 세계 인구의 3.6%에 달한다. 남성은 1억 3,500만 명으로 세계 남성의 3.5%, 여성은 1억 4,600만 명으로 세계 여성의 3.7%를 차지한다. 노동자 이민은 1억 6,900만 명, 실종된 이민자는 약 8,500만 명이다.

〈표 4〉 국제 이민자 숫자, 2020년

	숫자	비고
여성	1억 3,500만 명	2020년 세계 여성 인구의 3.5%
남성	1억 4,600만 명	2020년 세계 남성 인구의 3.7%
아동	2,800만 명	2020년 세계 아동 인구의 1.4%
노동자 이민	1억 6,900만 명	2019년 세계 노동자
실종된 이민자	약 8,500만 명	2023년 사망 및 실종

출처: World Migration Report(2024).

국제 이민자의 숫자는 1970년 약 8,500만 명에서 2020년 약 2억 8,000만 명으로 3배 증가했다. 세계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70년 2.3%에서 2020년 3.6%를 차지하였다. 물론 이 수치는 1970년에는 135개 국가나 영토 및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2020년에는 232개를 대상으로 한 수치이다.

〈표 5〉 1970년 이래 국제 이민자 숫자 및 비율

연도	국제이민자 숫자(명)	세계인구 중 이민자 비율(%)
1970	84,460,125	2.3
1975	90,368,010	2.2
1980	101,983,149	2.3
1985	113,206,691	2.3
1990	152,986,157	2.9
1995	161,289,976	2.8
2000	173,230,585	2.8
2005	191,446,828	2.9
2010	220,983,187	3.2
2015	247,958,644	3.4
2020	280,598,105	3.6

출처: World Migration Report(2024).

지역으로 보면 1995년과 2020년 사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북미지역으로 1995년 10.4%에서 2020년 14.5%로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이 비율이 1995년 7.0%에서 10.9%로 증가했고 오세아니아에서는 16.8%에서 21.2%로 증가했다. 아프리카가 다소 감소했고 아시아와 남미는 약간 증가했다. 이 수치는 이들 지역에 들어온 유입 이민자를 의미한다.

〈표 6〉 지역으로 본 이민자 숫자 및 비율, 1995년과 2020년

지역	연도	이민자(백만 명)	인구 중 이민자의 비율(%)
아프리카	1995	10.1	1.4
	2020	15.8	1.2
아시아	1995	39.2	1.1
	2020	71.1	1.5
유럽	1995	50.8	7.0
	2020	81.7	10.9
남미 및 카리브해	1995	6.2	1.3
	2020	13.3	2.0
북미	1995	30.7	10.4
	2020	53.3	14.5
오세아니아	1995	4.9	16.8
	2020	9.0	21.2

출처: World Migration Report(2024).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로 이주하느냐도 중요하다. 1995년 이민자가 가장 많은 출신 국가는 러시아, 인도, 멕시코, 우크라이나 순이었지만 2020년에는 인도, 멕시코, 러시아, 중국 순으로 바뀌었다.

〈표 7〉 이민자의 20개 출신 국가, 숫자 및 비율, 1995년과 2020년

1995년			2020년		
국가	이민자(백만 명)	비율(%)	국가	이민자(백만 명)	비율(%)
러시아	11.38	7.1	인도	17.79	1.3
인도	7.15	0.7	멕시코	11.07	7.9
멕시코	6.95	7	러시아	10.65	6.8
우크라이나	5.60	9.9	중국	9.80	0.7
방글라데시	5.37	4.5	방글라데시	7.34	4.3
중국	4.70	0.4	파키스탄	6.14	2.7
영국	3.61	5.9	우크라이나	6.05	12.2
파키스탄	3.33	2.6	필리핀	6.01	5.2
카자흐스탄	3.30	17.2	폴란드	4.82	11.3
이탈리아	3.20	5.3	영국	4.62	6.4
독일	3.04	3.6	인도네시아	4.58	1.6
튀르키예	2.73	4.5	볼리비아	4.49	13.6
필리핀	2.43	3.4	카자흐스탄	4.20	18.3
인도네시아	1.93	1	루마니아	3.98	17.1
포르투갈	1.91	15.9	독일	3.85	4.4
모로코	1.88	6.5	이집트	3.57	3.4
폴란드	1.76	4.4	튀르키예	3.28	3.7
벨라루스	1.74	14.7	모로코	3.25	8.1
한국	1.68	3.6	이탈리아	3.25	5.1
아프가니스탄	1.67	8.5	베트남	3.07	3.1

출처: World Migration Report(2024).

목적지인 유입 이민 국가는 1995년이나 2020년 단연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 국가였다. 1995년에는 러시아가 두 번째로 선호되는 국가였지만 2020년에는 독일로 바뀌었다. 이민자가 많이 몰리는 목적지 국가는 1995년에는 미국, 러시아, 독일, 인도, 프랑스의 순이었지만 2020년에는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영국 순이었다.

〈표 8〉 이민자의 20개 목적지 유입 국가, 숫자 및 비율, 1995년과 2020년

1995년			2020년		
국가	이민자(백만명)	비율(%)	국가	이민자(백만명)	비율(%)
미국	24.60	9.3	미국	43.43	13.1
러시아	11.91	8.0	독일	14.22	17.0
독일	7.28	9.0	사우디아라비아	13.00	37.3
인도	6.69	0.7	러시아	11.58	7.9
프랑스	5.96	10.3	영국	8.92	13.1
우크라이나	5.77	11.3	아랍에미리트	8.43	85.3
사우디아라비아	4.94	26.5	프랑스	8.09	12.4
캐나다	4.69	16.1	캐나다	7.81	20.7
오스트레일리아	4.11	22.9	오스트레일리아	7.41	29.1
영국	3.99	6.9	스페인	6.63	14.2
카자흐스탄	2.89	18.3	이탈리아	6.13	10.1
파키스탄	2.46	2.0	우크라이나	4.57	10.4
중국 홍콩	2.09	34.4	인도	4.48	0.3
코트디부아르	2.02	14.2	태국	3.53	5.1
아랍에미리트	1.78	73.6	카자흐스탄	3.39	18.1
이탈리아	1.70	3.0	말레이시아	3.08	9.5
이스라엘	1.55	29.5	쿠웨이트	2.98	69.8
요르단	1.53	33.4	중국 홍콩	2.85	38.1
아르헨티나	1.51	4.3	요르단	2.69	26.4
우즈베키스탄	1.43	6.3	일본	2.49	2.0

출처: World Migration Report(2024).

국제 이민자를 보면 유럽 및 북미지역이 약 1억 5,0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가 2020년 약 5,000만 명에 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그 절반 수준인 약 2,200만 명이다. 소득으로 보면 고소득국가에 이민자가 2020년 약 1억 8,0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9〉 국제 유출 이민자 숫자, 1990~2020년(단위: 명)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세계	152,968,157	173,230,585	220,983,187	280,589,10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286,341	13,151,229	15,854,637	22,221,538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17,608,769	20,321,397	32,638,434	49,767,746
중아시아 및 남아시아	26,168,623	20,139,825	19,676,783	19,427,576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6,835,882	10,506,212	15,760,463	19,591,106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	7,135,971	6,539,738	8,326,588	14,794,623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제외)	258,678	296,618	298,175	313,069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4,473,260	5,065,063	6,830,423	9,067,584
유럽 및 북미	77,218,633	97,210,503	121,597,684	145,414,863
선진국 지역	82,767,210	103,962,010	130,562,258	157,253,443
후진국 지역	70,218,947	69,268,575	90,420,929	123,344,662
후진국 지역(최저발전국가(LDC 제외))	59,158,726	59,204,627	79,989,053	107,159,937
후진국 지역(중국 제외)	67,419,066	65,850,628	86,472,612	118,939,005
최저발전국가	11,060,221	10,063,948	10,431,876	16,184,725
내륙(Land-locked)발전국가(LLDC)	14,212,843	11,503,826	11,597,176	15,022,720
소형섬(Small island)발전국가(SIDS)	2,312,665	3,287,168	4,710,457	5,678,001
고소득국가	76,295,202	101,641,715	142,642,749	181,897,756
중소득국가	67,228,996	63,873,275	69,069,732	85,895,533
상중소득국가	35,289,343	35,822,210	42,080,101	57,383,443
하중소득국가	31,939,653	28,051,065	26,989,631	28,512,090
저소득국가	9,193,274	7,322,731	8,781,206	12,232,043

출처: Ness(2023).

3. 종교 이민

세계적으로 출신지가 아닌 국가에 사는 이민자 즉, 유출 이민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종교 집단은 기독교이다. 이민자 중 기독교인 47%, 무슬림 29%, 비종교인 Religiously unaffiliated 13%, 힌두교도 5%, 불교도 4%, 유대교도 1%이다.

〈표 10〉 출신지가 아닌 국가에 사는 이민자 즉, 유출 이민자 중 종교인 비율

	이민자 중 비율(%)	세계 인구 중 비율(%)
기독교인	47	30
무슬림	29	25
비종교인	13	23
힌두교도	5	15
불교도	4	4
기타 종교	2	
유대교도	1	0.2

출처: Kramer and Tong(2024).

유럽에 사는 국제 이민자 즉, 유입 이민자 중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6% 정도로 1990년이나 2020년 거의 동일한 비율이었다. 무슬림은 약 16~18%로 추정된다. 불교도, 힌두교도, 유대교도 이민자는 1~2%에 머물렀다.

〈표 11〉 유럽의 유입 종교이민자 변화, 1990년과 2020년

	이민자(명) 1990년	이민자(명) 2020년	증가율 변화(%)	총이민자중 비율(%), 1990년	총이민자중 비율(%), 2020년
기독교인	28,650,000	48,870,000	71%	57	56
비종교인	11,380,000	17,450,000	53%	23	20
무슬림	7,900,000	15,890,000	101%	16	18
기타 종교	530,000	1,470,000	177%	1	2
불교도	560,000	1,330,000	138%	1	2
힌두교도	490,000	1,140,000	132%	1	1
유대교도	400,000	630,000	60%	1	1
모든 이민자	49,910,000	86,780,000	74%	100	100

출처: Kramer and Tong(2024).

〈표 12〉 북미의 유입 종교이민자 변화, 1990년과 2020년

	이민자(명) 1990년	이민자(명) 2020년	증가율	총이민자중 비율(%), 1990년	총이민자중 비율(%), 2020년
기독교인	19,820,000	39,740,000	101%	72	68
비종교인	4,300,000	8,100,000	89%	16	14
무슬림	1,300,000	4,680,000	260%	5	8
힌두교도	830,000	3,030,000	267%	3	5
불교도	730,000	1,550,000	112%	3	3
기타 종교	310,000	1,140,000	272%	1	2
유대교도	330,000	470,000	40%	1	1
모든 이민자	27,610,000	58,710,000	113%	100	100

출처: Kramer and Tong(2024).

북미 대륙에 사는 유입 이민자 비율을 보면 1990년대와 2020년에 큰 차이가 난다. 기독교인이 총이민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이나 2020년 가장 높았다. 단, 2020년에는 1990년에 비해 기독교도

이민자의 비율이 약간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다. 무슬림 이민자는 5~8%였다. 힌두교도, 불교도, 유대교도가 이민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5%였다. 유럽에 유입된 이민자에 비교하면 북미에 유입된 이민자의 기독교인 비율이 높았고 무슬림의 비율이 낮았다.

4.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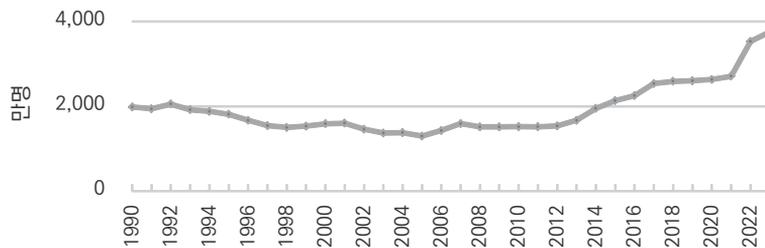
2022년 말 실향민^{displaced person}도 1억 1,700만 명에 달한다. 난민, 망명신청자^{asylum-seekers}, 국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others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국내 실향민^{IDP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을 포함한다.

〈표 13〉 실향민 숫자, 2022년

구분	숫자(백만 명)	비고
난민	35.3	2022년 세계적으로 난민
망명신청자	5.4	2022년 세계적으로 망명신청자
국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	5.2	2022년 세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주로 베네수엘라인이며 난민이나 망명신청자 제외
국내 실향민	71.2	2022년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6,250만 명; 재난으로 인한 870만 명

출처: World Migration Report(2024).

〈그림 1〉 난민의 증가추세, 1990~2023년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발전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난민은 1990년대~2000년대에는 1,500~2,00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23년에는 약 3,757만 명으로 증가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강제 실향민(forcibly displaced people)이 1억 2,260만 명이다. 6,830만 명은 국내 실향민이고 난민 3,790만 명, 망명 신청자 800만 명, 기타 국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 580만 명이다. UNHCR이 맡고 있는 국제 보호가 필요한 모든 난민들 중 거의 2/3가 4개 국가 출신이다. 시리아 630만 명, 베네수엘라 620만 명, 우크라이나 610만 명, 아프가니스탄 610만 명이다. 난민을 수용한 국가는 콜롬비아, 독일, 이란, 튀르키예, 우간다로 국제 보호가 필요한 세계 난민의 1/3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란 380만 명, 튀르키예 310만 명, 콜롬비아 280만 명, 독일 270만 명, 우간다 170만 명이다. 2023년 말 1억 1,730만 명의 강제 실향민 중 4,700만 명 즉 40%가 18세 이하 아동이다. 2018~2023년 평균 33만 9,000명의 아동이 매년 난민으로 태어났다. 약 43만 3,600명의 난민이 2024년 전반기에 원래 국가로 돌아왔고 8만 5,000명은 재정착(resettlement)하였다. 중저소득국가가 세계 난민의 71%를 받아들였고 최빈국가는 전체의 22%에게 망명을 제공하였다. 69%의 난민은 인접국에 살고 있다.⁹

〈표 14〉 재정착을 필요한 난민과 세계적으로 재정착한 난민의 숫자, 2005~2022년

연도	총 예상 재정착 필요 인원(명) (다년 계획 포함)	재정착 도착 인원(명)	재정착한 비율(%)
2005		80,734	
2006		71,660	
2007		75,271	
2008		88,772	
2009		112,455	

9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

2010		98,719	
2011	805,535	79,727	9.9
2012	781,299	88,918	11.38
2013	859,305	98,359	11.45
2014	690,915	105,148	15.22
2015	958,429	106,997	11.16
2016	1,153,296	172,797	14.98
2017	1,190,519	102,709	8.63
2018	1,195,349	92,348	7.73
2019	1,428,011	107,729	7.54
2020	1,440,408	34,383	2.39
2021	1,445,383	57,436	3.97
2022	1,473,156	114,242	7.75

출처: World Migration Report(2024).

지난 10년간 재정착을 필요로 하는 난민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UNHCR은 2011년 약 80만 5,000명의 난민이 재정착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았지만 2022년에는 15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05년에는 8만 1,000명이 재정착했지만 2021년에는 5만 7,000명, 2022년에는 11만 4,000명이 재정착했다. 재정착률은 2022년 7.75%였다.

III.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의 제도적 상호 관계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와의 관계는 최근 강화되고 있다. 디아스포라가 홈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가 기구를 두어 디아스포라와 홈랜드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110개 국가에 439개의 디아스포라 기구가 있다. 한 국가에 평균 4.4개의 기구가 있는 셈이다. 멕시코가 디아스포라 기구의

첫 선구자였다. 멕시코 외교부 [Mexican Secretariat of Foreign Affairs](#) 가 1821년 만들어져 미국에 있는 멕시코 디아스포라와 일했다. 미국이 멕시코 땅을 병합하면서 1848년 이후 미국에 멕시코인들의 이민이 시작된 것이다. 1919년 중국은 서방귀국협회 [Western Returned Association](#) 를 발전시켜 100여 년 동안 해외 중국 학생들과 학자들이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되돌아오게 하였다. 레바논도 디아스포라 기구를 오래전에 만들었다. 1943년 외교 이민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migrants](#) 를 만들었고 1958년 레바논 위기 이후 1959년에 세계레바논문화연합 [World Lebanese Cultural Union](#) 이 만들어져 디아스포라들이 협력을 추구했다.¹⁰

1970년대와 1980년대 파키스탄과 필리핀은 해외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와 직접 연계된 기구를 만들었다. 아시아에서 노동력 이동에 따라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1980년대 방글라데시와 키리바시에서도 비슷한 기구들이 만들어져 오스트레일리아의 계절노동자 프로그램 [Seasonal Worker Programme](#) , 뉴질랜드의 공인 계절 고용 계획 [Recognized Seasonal Employer scheme](#) 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는 기구를 만든 것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디아스포라 기구들이 점차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튀니지에 해외 튀지니인 사무소 [Office for Tunisians Abroad](#) 가 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로 편입된다. 그리고 1992년 앙골라, 1993년 세네갈에도 만들어진다. 1990년대에는 전담 장관급 부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990년 모로코에 해외 거주 모로코인부 [Ministry for Moroccans Residing Abroad](#) , 1994년 아이티에 해외 거주 아이티인부 [Ministry of Haitians Living Abroad](#) 가 만들어진다. 1990년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지만 새로운 형태 즉 준정부독립기구 [quangos](#) 와 자문기구 [advisory bodies](#) 였다. 말리에 1991년 해외 말리인 고위 평의회 [High Council of Malians Abroad](#) 로 정부 관료와 디아스포라의 혼합 형태였다. 2000년대부터 디아스포라 전담 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제기구들이 후진국들의 지속 가능 발전을

10 Tittel-Mosser 2023, p.8.

위해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¹¹

디아스포라 기구가 증가한 첫 번째 단계는 20세기 전체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가 나타나면서부터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세계적으로 민주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체주의 사회가 디아스포라에게 개방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90년대 EU 등에서 노동력 이동을 위해 국경 간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디아스포라 기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유엔을 포함하여 세계은행, IOM 등이 이민에 대한 세계 거버넌스 체제^{global governance regime}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¹² “디아스포라 개입이 세계화되고 있다^{diaspora engagement goes global}”고 알란 캄렌은 표현하고 있다.¹³

1970년 10개국이 디아스포라 기구를 유지했다. 1980년 15개였다. 1990년에는 22개를 넘지 않았다. 2000년에는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는 유엔 회원국의 1/4 즉 159개국 중 41개국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10개 국가가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적어도 47개 국가는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에는 118개국이 적어도 하나의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지고 있었고 몇 개국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다.¹⁴

디아스포라 개입 정책^{diaspora engagement policies}은 새롭지만 점차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남미에서 디아스포라 개입 정책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7~2017년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의 집권 시기 가장 혁신적인 디아스포라 개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디아스포라 문제가 외교부의 기능에 불과하던 다른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독자적인 장관급 부처를 두

11 Tittel-Mosser 2023, pp.9-10.

12 Gamlen 2019, pp.31-39.

13 Gamlen 2019, p.183.

14 Gamlen 2014, p.S185; Gamlen 2019, p.9.

어 정책 결정을 집중시켰다. 비슷한 과정들이 남미에 나타나 국가 기구와 디아스포라 사이에 관계가 설정되었다.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도 유사한 공식 기구를 만들었다. 디아스포라 개입 정책은 남미에서 비교적 새로운 정책이다.¹⁵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지원하는 기구를 해외에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 조사한 IOM 100개국 중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에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국가의 비율은 15%, 50~100개국에 기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비율은 31%, 50개국 미만에 기구를 가진 국가의 비율은 54%였다. 유럽 국가들은 영사관을 이 수치보다 더 많은 국가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홀랜드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지원 기구를 해외에 설치한 비율(단위: %)

	세계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100개국 이상에	15	3	22	12	46
50~100개국	31	32	33	32	18
50개국 미만	54	65	45	56	36

출처: IOM(2024c).

IOM 75개국에 대한 자료 분석에 따르면 디아스포라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 비율은 국가적으로 이민 전략 migration strategy 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68%, 부분적으로 이민 전략을 가진 국가는 76%, 규정된 이민 전략을 가진 국가는 85%이다.

15 Margheritis 2021, pp.33-34.

〈표 16〉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 비율(단위: %)

	이민 전략 부재	부분적 이민 전략	규정된 이민 전략
예	68	76	85
부분적으로	3	12	9
아님	29	12	6

출처: IOM(2022).

티텔모세 Fanny Tittel-Mosser가 맵핑한 110개 국가 중 108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디아스포라 개입을 다루는 기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관련 기구가 없는 국가는 2개 국가로 베네수엘라와 마셜군도였다. 79개 국가는 적어도 하나의 전담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국가들은 여러 개의 기구들을 가지고 있다.¹⁶

〈표 17〉 디아스포라 개입 기구 분류

아구니아스-뉴랜드 모델	감렌 모델	티텔모세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 전담 부처 및 혼합 권한을 가진 부처를 포함한 부처급 기관 • 하부 부처급 • 행정부에 직접 보고하는 기타 국가 기관 • 지방 정부 기관 5개국 • 영사 네트워크 • 준정부 기관(예: 재단 및 자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 혼합형 부처 (디아스포라 참여 전담 아님) • 장관급 전담 부처 (디아스포라 개입 전담) • 하부 부처 • 행정 기관 • 준정부 독립 기구 (반사립 기관만 포함) • 입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 부처 내 단위 • 행정부 • 부처급 기관 • 준정부 독립 기구 • 공익목적협회 • 노동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 자문 기관 • 대표 기관

출처: Tittel-Mosser(2023).

각국의 디아스포라 기구를 분류하는데 대체로 세 명의 학자가 제시하는 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아구니아스 Dovelyn R. Agunias와 뉴랜드 Kathleen Newland가 2012년 IOM을 통해 발간한 『디아스포라의 발전에의 개입 로드맵 Developing a Road Map for Engaging Diasporas in Development』에서 분류한 6개 분류이다. 두 번째는 2019년 알란 감렌이 『인간지정학』에서 제시한 6개 분류이다. 세 번째는 티텔모세가 EUDiF European Union Global Diaspora Facility 에

16 Tittel-Mosser 2023, p.10.

서 출간한 『디아스포라 개입 기구 유형』^{A Typology of Diaspora Engagement Institutions}을 통해 EUDiF의 9개 분류를 제시하였다.

아구니아스 - 뉴랜드 모델에서는 장관급^{ministry-level}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 장관급이 아닌 하위급^{sub-ministrial}에서 담당하는 디아스포라 기구, 국가 차원에서 다른 유형의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 지역 차원에서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 준정부기구^{quasi-governmental}로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장관급 기구의 경우 장관급 전담 부처 및 혼합 권한을 가진 부처를 포함한 부처급 기관은 26개국이며 이 중 12개국은 디아스포라 전담 기구이다. 하부 부처급은 17개국 21개 기구였다. 감렌의 모델에서는 혼합 장관급 부처는 디아스포라 전담 기구가 아니며 전담 부처를 따로 분리하고 있다. 감렌의 행정 기관은 아구니아스 - 뉴랜드 모델의 다른 국가 기구와 같다. 감렌의 준정부독립기구^{quango}는 반사립^{semi-private} 기구를 의미한다. 감렌 모델의 입법기구는 아구니아스와 뉴랜드 모델의 광범한 준정부기구를 포함한다. 티렐모세의 분류에서는 부처^{95개국 154개 기관}, 부처 내 단위^{52개국 66개 기관}, 행정부^{34개국 65개 기관}, 부처급 기관^{29개국 47개 기관}, 준정부독립기구^{29개국 34개 기관}, 공익목적협회^{19개국 25개 기관}, 노동을 담당하는 공공기관^{12개국 19개 기관}, 자문기관^{16개국 17개 기관}, 대표기관^{12개국 12개 기관}이다.

여기서는 아구니아스 - 뉴랜드 모델에서 나오는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각국의 디아스포라 담당 기구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8〉 장관급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 2010년

국가	기구	유출 이민자(명)	전체 인구 중 유출 이민자 비율(%)	주요 목적지
아르메니아*	Ministry of Diaspora	870,200	28.2	러시아
알제리	Ministry of National Solidarity, Family and the National Community Abroad	1,211,100	3.4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State Committee on Affairs of the Diaspora	1,432,600	16.0	러시아
방글라데시*	Ministry of Expatriates' Welfare and Overseas Employment	5,380,200	3.3	인도
베냉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frican Integration, the Francophone Community, and Beninese Abroad	513,600	5.8	나이지리아
코모로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and Cooperation of the Diaspora	38,600	5.6	프랑스
도미니카	Ministry of Trade, Industry, Consumer, Diaspora Affairs	69,300	104.1%**	미국
조지아*	State Ministry for Diaspora Issues	1,057,700	25.1	러시아
아이티*	Ministry of Haitians Living Abroad	1,009,400	9.9	미국
인도*	Ministry of Overseas Indian Affairs	11,357,500	0.9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2,502,300	1.1	말레이시아
이라크	Ministry of Migration and Displaced	1,545,800	4.9	이란
이스라엘	Ministry of Information and Diaspora	1,019,900	14	팔레스타인
레바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migrants	664,100	15.6	미국
북마케도니아*	Agency for Emigration	447,100	21.9	이탈리아
말리	Ministry of Malians Abroad and African Integration	1,012,700	7.6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Ministry Charged with the Moroccan Community Residing Abroad	3,106,600	9.3	프랑스
니제르	Ministry of African Integration and Nigerians Abroad	386,900	2.4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Ministry of Overseas Pakistanis	4,677,000	2.5	인도
세네갈*	Ministry of Senegalese Abroad	632,200	4.9	감비아
세르비아	Ministry of Religion and Diaspora	196,000	2.0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Government's Office for Slovenians Abroad	132,000	6.5	독일
소말리아	Ministry for Diaspora and Community Affairs	812,700	8.7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Ministry of Foreign Employment Promotion and Welfare	1,847,500	9.1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xpatriates	944,600	4.2	요르단
튀니지	Ministry of Social Affairs, Solidarity, and Tunisians Abroad	651,600	6.3	프랑스

출처: Agunias and Newland(2012). * 디아스포라 전담부(Ministry of dedicated to diaspora) ** 세계은행에 따르면 유출 이민자(emigrants) 비율은 한 국가의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은 해당 국가의 인구에 대한 이민자 수의 비율로 정의되며, 인구와 이민자의 합계에 대한 비율이 아니다. 이러한 정의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표 19〉 장관급이 아닌 하위급에서 담당하는 디아스포라 기구, 2010년

국가	기구	유출 이민자(명)	전체 인구 중 유출 이민자 비율(%)	주요 목적지
알바니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aspora Department	1,438,300	45.4	그리스
브라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ndersecretary General for Brazilian Communities Abroad	1,367,100	0.7	미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Ministry of Human Rights and Refugees, Department of Diaspora	1,461,000	38.9	크로아티아
부룬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rectorate of Diaspora	356,000	4.2	탄자니아
칠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General Office for Consular and Immigration Services; Office for Chileans Abroad.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Public Security,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igration	633,600	3.7	아르헨티나
이집트	Ministry of Manpower and Emigration, Emigration Sector	3,739,100	4.4	사우디아라비아
엘살바도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Vice Ministry for Salvadorans Abroad	1,269,100	20.5	미국
에티오피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aspora Affairs Directorate General; Ministry of Capacity Building, Diaspora Coordinating Office	620,100	0.7	수단
에리트레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partment of Eritreans Abroad	941,200	18	수단
독일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Sector Project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3,540,600	4.3	미국
가나	Ministry of Interior, National Migration Unit	824,900	3.4	나이지리아
멕시코	Secretariat of Foreign Affairs, Subsecretariat for North America; Institute for Mexicans Abroad	11,859,200	10.7	미국
네덜란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Division	993,400	6	독일
페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ndersecretary for Peruvians Abroad	1,090,800	3.7	미국
필리핀	Department of Labor,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Labor,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for Migrant Workers' Affairs	4,275,200	4.6	미국
루마니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partment for Relations with the Romanians Abroad	2,769,400	13.1	이탈리아
우루과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rectorate General for Consular Affairs and Expatriate Ties	353,400	10.5	아르헨티나

출처: Agunias and Newland(2012).

디아스포라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장관급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는 아르메니아, 알제리 등이다. 2010년의 경우 아르메니아는 전체 인구 중 유출 이민자가 28.2%를 차지하며 목적지는 러시아였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이 전체 인구 중 유출 이민자가 많은 국가로 장관급 부처가 디아스포라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만을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를 가진 국가는 아르메니아, 인도, 아이티 등이다.

〈표 20〉 국가 차원에서 다른 유형의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 2010년

국가	기구	유출 이민자 (명)	전체인구 중 유출 이민자 비율(%)	주요 목적지
불가리아	State Agency for Bulgarians Abroad	1,200,600	16.0	튀르키예
칠레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Chilean Communities Abroad	633,600	3.7	아르헨티나
중국	State Council, 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verseas Chinese Affairs	8,343,600	0.60	미국
이집트	Higher Committee on Migration	3,739,100	4.4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National Council for Migrants from Guatemala	871,900	6.1	미국
헝가리	The Secretariat of Hungarians Living Abroad	462,700	4.6	독일
말리	Consultation Framework on Migration	1,012,700	7.6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National Council on Mexican Communities Abroad	11,859,200	10.7	미국
모로코	Interdepartmental Committees	3,106,600	9.3	프랑스
니제르	Committee in Charge of Migration	386,900	2.4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Technical Working Group and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Migration	1,000,000	0.6	미국
필리핀	Office of the President,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Committee on Overseas Workers Affairs	4,275,200	4.6	미국
폴란드	Interministerial Team on Migration Questions	3,102,600	8.2	독일
포르투갈	Council of Ministers, High Commission for Immigration and Intercultural Dialogue	2,230,000	20.8	프랑스
시에라리온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the Diaspora	267,000	4.6	기니
슬로바키아	Government Office of the Slovak Republic, Office for the Slovaks Living Abroad	520,100	9.6	체코
스위스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407,800	5.4	스페인

출처: Agunias and Newland(2012).

장관급이 아닌 하위 수준에서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로는 알

바니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등이다. 알바니아는 45.4%가 이민자이며 주요 목적지는 그리스였다. 엘살바도르도 20.5%가 이민자이며 목적지는 미국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다른 유형의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는 불가리아, 멕시코, 포르투갈이었다. 불가리아의 유출 이민자의 16%는 목적지가 튀르키예이며 멕시코의 경우 10.7%는 목적지가 미국, 포르투갈의 경우 20.8%가 목적지는 프랑스였다.

〈표 21〉지역 차원에서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 2010년

국가	기구	유출 이민자(명)	전체 인구 중 유출 이민자 비율(%)	주요 목적지
엘살바도르	National Secretariat for Migrants(various states)	1,269,100	20.5	미국
인도	Government of Kerala, Department of Non-Resident Keralites' Affairs; Government of Gujarat, Non-Resident Indian Division	11,357,500	0.9	아랍에미리트
중국	The 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SOCAO) of Shanghai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8,343,600	0.60	미국
소말리아	Office for Development and Partnership with the Puntland Diaspora Community	812,700	8.7	에티오피아
멕시코	National Coordination for Statelevel Migrant Affairs Offices (various states)	11,859,200	10.7	미국

출처: Agunias and Newland(2012).

지역 차원에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디아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는 엘살바도르, 인도, 중국, 소말리아, 멕시코 등이었다. 엘살바도르의 유출 이민자의 20.5%는 목적지가 미국이며 소말리아의 경우 8.7%는 목적지가 에티오피아, 중국의 경우 0.6%가 목적지는 미국이었다.

〈표 22〉 준정부기구로 다이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 2010년

국가	기구	유출 이민자 (명)	전체인구 중 이민자 비율(%),	주요 목적지
도미니카	National Presidential Council for Dominican Communities Abroad	1,035,800	10.1	미국
이스라엘	Jewish Agency for Israel American Jewish Joint Distribution Committee	1,019,900	14.0	팔레스타인
모로코	Hassan II Foundation for Moroccans Resident Abroad Council on the Moroccan Community Abroad	3,106,600	9.3	프랑스
말리	High Council of Malians Abroad	1,012,700	7.6	코트디부아르
몰타	Malta's Emigrants' Commission	107,500	26.2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Consultative Council of the Institute for Mexicans Abroad	11,859,200	10.7	미국
페루	Advisory Council	1,090,800	3.7	미국
한국	Overseas Koreans Foundation	2,078,700	4.3	미국

출처: Agunias and Newland(2012).

준정부기구로 다이스포라 기구를 가진 국가는 도미니카, 이스라엘, 몰타, 한국 등이다. 이스라엘 유출 이민자의 14.0%는 목적지가 팔레스타인이며 몰타의 경우 26.2%는 목적지가 오스트레일리아, 도미니카의 경우 10.1%가 목적지는 미국, 모로코의 경우 9.3%가 목적지는 프랑스, 한국의 경우 4.3%가 목적지는 미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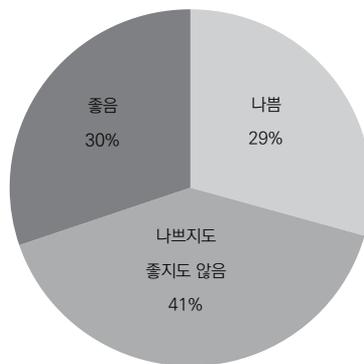
IV. 홈랜드의 다이스포라에 대한 아웃리치 정책

홈랜드의 아웃리치 정책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2003년 7월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연합 제정법 [Constitutive Act](#)에 ‘아프리카 다이스포라가 대륙의 일부로서 아프리카 연합 건설에 완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권장한다’라는 세부 조항을

삽입했다.¹⁷ 홈랜드는 디아스포라가 보내는 송금이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홈랜드는 디아스포라에 대해 아웃리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민자 등 디아스포라는 목적지 국가에서 유입 이민자로서 언어, 문화 등이 서로 달라 정착지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한다. 홈랜드는 디아스포라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국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목적지 국가에서 해소해 줄 수 있다.

우선 디아스포라가 목적지 국가에서 유입 이민자로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유입 이민자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출처: World Value Survey Wav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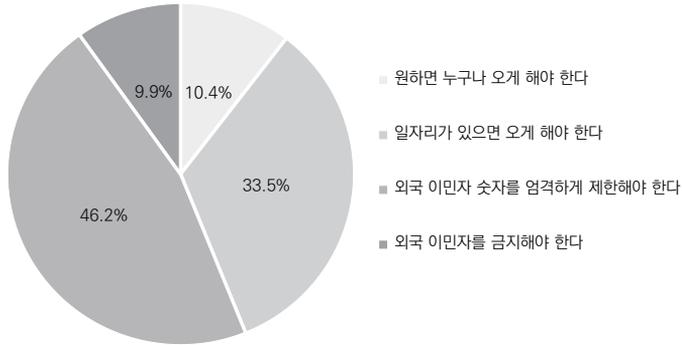
세계가치조사 웨이브 7(2017~2022년) 자료를 분석하면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나타난다. 유입 이민자가 목적지 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좋게 보는 목적지 국가의 사람들과 나쁘게 보는 목적지 국가의 사람들의 비율이 약 30%로 비슷하다.

외국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원하면 누구나 오게 해야 한다 10.4%, 일자리가 있으면 오게 해야 한다 33.5%, 외국 이민자 숫

17 Fakir 2021,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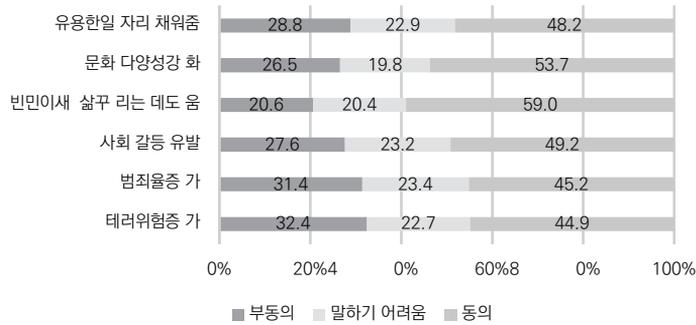
자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46.2%, 외국 이민자를 금지해야 한다 9.9%로 외국 이민자 유입에 대해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그림 3〉 유입 이민자에 대한 이민정책에 대한 선호



출처: World Value Survey Wave 7.

〈그림 4〉 이주민에 대한 호감 및 반감(단위: %)



출처: World Value Survey Wave 7.

외국 이민자들에 대한 입장은 유용한 일자리를 채워준다 48.2%, 문화다양성을 강화시켜 준다 53.7%, 빈민이 새 삶을 꾸리는 데 도움

움이 된다 59.0%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49.2%, 범죄율이 증가한다 45.2%, 테러 위험이 증가한다 44.9%로 부정적 이미지도 강하다.

따라서 홈랜드는 목적지 국가가 디아스포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자국의 이민자들이 목적지 국가에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민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홈랜드가 디아스포라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권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 세계 96개국 중 36%가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 보호 메커니즘을 가진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50%, 유럽 44%, 미주 41%, 아프리카 22%였다.

〈표 23〉 디아스포라 권리 보호 메커니즘 유무(단위: %)

	세계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있음	36	22	41	50	44
부분적으로	33	45	18	29	34
없음	31	33	41	21	22

출처: IOM(2024c).

이러한 해외에서 일하는 디아스포라의 권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국가의 비율 즉, 96개 국가 중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36% 국가를 디아스포라 개입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디아스포라 개입이 없는 국가는 25%, 디아스포라와 공식적인 개입을 가진 국가는 58%였다. 디아스포라의 개입과 참여가 많을수록 디아스포라 보호 메커니즘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4〉 자국민 보호 메커니즘 여부(단위: %)

	디아스포라의 개입 없음	디아스포라의 공식적 개입
자국민 보호 메커니즘	25%	58%

출처: IOM(2024b).

국가가 위기의 경우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설정해 놓았는지에 대해 58%가 조치들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설정(단위: %)

	세계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있음	58	40	81	52	73
부분적으로	39	57	15	44	27
없음	3	3	4	4	0

출처: IOM(2024c).

이민과 디아스포라 정책을 시행하는 기구를 가진 비율을 순이민율에 따라 분류하면 주요 출신지 국가(primarily origin countries) 74%, 주요 목적지 국가(primarily destination countries) 58%였다. 디아스포라가 개입하는 국가의 비율은 주요 출신지 국가 75%, 주요 목적지 국가 55%였다. 세계적으로 유출 이민자가 많은 중진국들이 이민과 디아스포라 기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반해 유입 이민자들이 많은 선진국들은 기구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6〉 이민과 디아스포라 정책 시행 기구를 가진 국가 및 디아스포라가 개입하는 국가 비율

	주요 출신지 국가 비율	주요 목적지 국가 비율
이민과 디아스포라 정책을 시행하는 기구	74%	58%
디아스포라가 개입하는 국가	75%	55%

출처: IOM(2022).

디아스포라가 홈랜드에 귀환을 원할 경우 회귀 디아스포라의 재통합을 촉진하는 국가의 비율은 보면 이민과 디아스포라 정책을 맡은 기구가 없는 국가는 9%, 전담 기구는 아니어도 시행하는 국가는 40%, 전담 기구가 있는 경우 32%였다.

〈표 27〉 회귀 디아스포라 재통합 촉진 관련 전담 기구 유무

	기구가없음	전담아닌기구	전담기구
있음	9%	0	32%
부분적으로	18%	40%	31%
없음	73%	60%	37%

출처: IOM(2022).

재외국민 투표권을 규정한 국가는 2012년의 경우 총 115개 국가로 유럽이 41개국, 아프리카 28개국, 아시아 20개국, 미주 16개국이다.

〈표 28〉 재외국민 투표권 규정(external voting provisions)을 가진 국가

대륙	국가
아프리카 (28)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남아공, 수단, 토고, 튀니지, 짐바브웨
미주 (16)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포클랜드제도, 기아나,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미국, 베네수엘라
아시아 (20)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오만, 필리핀, 싱가포르,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예멘
유럽 (41)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저지,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맨섬, 몰도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태평양지역국가 (10)	오스트레일리아, 쿡제도, 피지,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Науру, 뉴질랜드, 팔라우, 피터켄섬, 바누아투
합계	115

출처: Agunias and Newland(2012).

세계 74개국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국가들은 유럽연합으로부터 디아스포라 연계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들의 디아스포라의 숫자는 1억 3,000만 명이며 3,430억 달러를 송금으로 받는데 정부와 디아스포라 개입의 정도가 다르다. 51개국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56개국은 투표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17개 국가만이 명백한 디아스포라 정책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법은 2000년 이후 만들어졌다. 디아스포라 정책을 가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베냉, 카보베르데,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이라크, 케냐,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모로코, 네팔, 나이지리아, 몰도바, 토고, 우간다, 잠비아였다.¹⁸

〈표 29〉 이중국적, 투표권, 디아스포라 정책 유무에 따른 디아스포라 조직, 송금액, 이민자 숫자

	국가	국가 숫자 (개)	EU에 있는 디아스포라 조직 숫자(개)	송금액(달러) 2019년	이민자 숫자(명) 2019년
이중국적	불허	23	116	149,424,955,567	54,610,798
	허용	51	335	184,880,938,710	74,983,524
투표권	없음	18	127	76,557,722,551	28,547,127
	있음	56	324	257,748,171,726	101,047,195
디아스포라 정책	없음	57	331	282,931,486,007	109,416,665
	있음	17	120	51,374,408,269	20,177,657

출처: Orozco(2021).

〈표 29〉를 이중국적, 투표권, 디아스포라 정책 유무에 따라 각 국가당 평균을 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중국적, 디아스포라 정책이 허용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디아스포라 조직 숫자는 더 많았다. 그러나 투표권이 허용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보다 디아스포라 조직 숫자가 더 적었다. 디아스포라 조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송금액이나 이민자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투표권도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송금액이나 이민자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 투표권이 주어진다

18 Orozco 2021, p.46.

고 해서 디아스포라 조직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중국적이나 디아스포라 정책이 없더라도 송금액이나 이민자 숫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다. 투표권은 허용되는 경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보다 송금액이나 이민자 숫자가 더 많았다. 물론 이 <표>는 2021년의 자료이다.

<표 30> 이중국적, 투표권, 디아스포라 정책에 따른 국가 평균

	유무 (국가숫자)	EU에 있는 디아스포라 조직숫자(개)	송금액(달러) 2019년	이민자 숫자(명) 2019년
이중국적	불허(23개국)	5.0	6,496,737,199	2,374,383
	허용(51개국)	6.6	3,625,116,445	1,470,265
투표권	없음(18개국)	7.1	4,253,206,808	1,585,952
	있음(56개국)	5.8	4,602,645,924	1,804,414
디아스포라 정책	없음(57개국)	5.8	4,963,710,281	1,919,591
	있음(17개국)	7.1	3,022,024,016	1,186,921

출처: Orozco(2021)에서 저자가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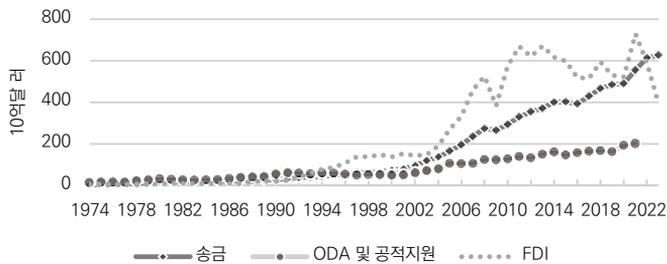
2024년의 IOM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정책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송금 유입이 더 많았다. 92개 국가에 대한 조사에서 이민정책이 없는 국가는 개인 송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2%, 이민정책이 있는 국가는 8.84%였다. 해외의 디아스포라가 홈랜드의 정책 과정이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홈랜드에 더 연계되어 투자도 더 많이 했다. 디아스포라 개입이 없는 국가는 개인 송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5%인데 반해 공식적인 디아스포라 개입이 있는 국가는 8.88%였다. 2022년의 경우 이 두 가지 정책 즉, 이민에 대한 전담정책^{dedicated policies on emigration} 과 공식적인 디아스포라 개입을 혼합한 국가에서는 개인 송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9%에 달했다. 이 둘 중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국가는 3.86%, 이 둘 중 하나만 가진 국가는 5.74%였다.¹⁹

19 IOM 2024a, pp.40-41.

V. 홈랜드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개입

이민은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고 이민자로 인해 홈랜드는 큰 혜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민자가 해외에서 버는 임금은 국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버는 것보다 몇 배 될 수 있다. 국제 송금은 2000년 1,280억 달러에서 2022년 8,31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발전도상국에 대한 공식적인 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와 해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를 훨씬 상회한다.²⁰ FDI, ODA, 송금을 비교하면 2000년까지는 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0년대부터 FDI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0년대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송금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FDI보다 많아졌다. FDI가 5,900억 달러였던 데 반해 송금은 6,271억 달러였다. ODA 등 공식원조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결국 송금은 중저소득국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 중저소득국가에 대한 송금, FDI, ODA



출처: FDI, ODA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송금은 World Bank Database.

디아스포라가 홈랜드에 FDI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중국의 예를 들면, 해외 중국인들이 1985~2000년 중국 FDI의 70%를 차지했다. 물

20 World Migration Report 2024, p.61.

론 1995년의 경우 중국에의 FDI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왔으며 대만에서 9%가 왔다.²¹

〈표 31〉 국제 송금을 받는 수혜국 상위 10개 국가, 2010~2022년(단위: 10억 달러)

순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22년
1	인도 53.48	인도 68.91	인도 83.15	인도 111.22
2	중국 52.46	중국 63.94	중국 59.51	멕시코 61.10
3	멕시코 22.08	필리핀 29.8	멕시코 42.88	중국 51.00
4	필리핀 21.56	멕시코 26.23	필리핀 34.88	필리핀 38.05
5	프랑스 19.9	프랑스 24.07	이집트 29.6	프랑스 30.04
6	나이지리아 19.75	나이지리아 20.63	프랑스 28.82	파키스탄 29.87
7	독일 12.79	파키스탄 19.31	파키스탄 26.09	이집트 28.33
8	이집트 12.45	이집트 18.33	방글라데시 21.75	방글라데시 21.50
9	벨기에 10.99	독일 15.57	독일 19.32	나이지리아 20.13
10	방글라데시 10.85	방글라데시 15.3	나이지리아 17.21	독일 19.29

출처: World Migration Report(2024).

송금을 받는 국가는 어떤 국가들인가? 2022년 인도, 멕시코, 중국, 필리핀, 프랑스가 송금받는 5대 국가였다. 인도가 1,112.2억 달러를 받았다. 멕시코가 그다음으로 611억 달러, 중국 510억 달러, 필리핀 380.5억 달러 순이다.

〈표 32〉 국제 송금을 하는 송출국 상위 10개 국가, 2010~2022년(단위: 10억 달러)

순위	2010년	2015년	2020년	2022년
1	미국 50.53	미국 60.72	미국 66.54	미국 79.15
2	사우디아라비아 27.07	아랍에미리트 40.7	아랍에미리트 43.35	사우디아라비아 39.35
3	러시아 21.45	사우디아라비아 38.79	사우디아라비아 34.6	스위스 31.91
4	스위스 18.51	스위스 26.03	스위스 29.64	독일 25.6
5	독일 14.68	러시아 19.69	독일 22.45	중국 18.26
6	이탈리아 12.88	독일 18.25	중국 18.3	쿠웨이트 17.74
7	프랑스 12.03	쿠웨이트 15.2	쿠웨이트 17.36	룩셈부르크 15.51
8	쿠웨이트 11.86	프랑스 12.79	러시아 16.87	네덜란드 15.41
9	룩셈부르크 10.66	카타르 12.19	프랑스 14.78	프랑스 14.44
10	아랍에미리트 10.57	룩셈부르크 11.23	네덜란드 14.31	카타르 12.29

출처: World Migration Report(2024).

21 Kuznetsov and Sabel 2006, p.3.

송금을 보내는 국가는 디아스포라가 주재하는 국가로 주로 고소득 국가 중 거의 대부분 국제 송금 송출국이다. 2022년 미국 791.5억 달러였고 그 뒤가 사우디아라비아 393.5억 달러, 스위스 319.1억 달러, 독일 256.0억 달러 순이었다.

신아메리카경제 New American Economy 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2018년에만 1,330억 달러 이상 벌어서 360억 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약 980억 달러의 소비력을 가졌다. 두뇌유출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을 잃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는 그들의 홈랜드 대륙을 잊지 않았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는 홈랜드에 송금을 보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보내는 송금은 2020년 약 420억 달러에 달했다.²²

세계적으로 2022년 국제 송금액은 8,31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 64억 7,000만 달러는 중저소득국가가 받은 액수이다. 문제는 송금에 너무 의존하면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금의존도 dependency on remittances 는 GDP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될 수 있다. 2022년 GDP에서 받는 송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타지키스탄 51%, 통가 44%, 레바논 36%, 사모아 34%, 키르기스스탄 31%였다. 송금에 의존도가 높으면 노동 참여율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 송금액이나 환율 변화에 취약해진다.²³

각국은 송금 거래 비용 remittance transaction cost 을 줄여 송금을 유인하려 한다. 송금 비용과 관련해 SDG 타깃은 송금액의 3% 이하로 정했지만 대부분이 한도를 넘었다. MGI 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 49개 국가들 중 37%의 국가가 송금 비용 비율이 7% 이상, 49%의 국가가 송금 비용 비율 3~7%,

22 Negash 2021, p.38.

23 World Migration Report 2024, p.38.

12%의 국가가 3% 미만이었다. 2019년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적인 평균은 6.94%였다. G20^{Group of Twenty} 은 송금 거래 비용을 5%로 낮추려고 했다.²⁴

〈표 33〉 49개 국가 송금 거래 비용 비교

국가비중	12%	49%	37%	2%
송금 거래비용	3% 미만	3~7%	7% 이상	무응답

출처: IOM(2019).

아이킨스 Kingsley Aikins와 러셀 Martin Russell은 2021년 IOM에 기고한 글 “디아스포라의 미래^{The future of diasporas}”라는 글에서 송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송금은 디아스포라 자본 가능성^{diaspora capital poential}의 방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의 세대 간 이전으로 디아스포라 개입은 발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으로부터 2050년까지 북미에서만 30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홀랜드, 선조 또는 친밀감^{affinity}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박애가 홀랜드에 디아스포라를 개입시키는데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Aaffluence와 Iinfluence의 금융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디아스포라의 ‘소프트 파워’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²⁵

물론 디아스포라는 브레인^{HQ: highly qualified} 유출이라는 비판도 있다. 브레인 이민율은 출신국가에서 태어나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을 받고 해외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원래 국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동일한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인구로 나눈 값이다. 브레인 이민율은 후진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브레인 유출이 아프리카 등에서 높은 편이다. 브레인 이민율은 2010/2011년 아프

24 IOM 2019, p.24.

25 Aikins and Russell 2021, pp.6-7.

라카의 모리셔스는 43.8%, 남미의 아이티는 75.1%, 아시아의 파푸아뉴기니 20.6%였다.

〈표 34〉 브레인 이민율, 2010/2011년과 2000/2001년

대륙	국가	이민율(%) 2010/2011년	이민율(%) 2000/2001년	이민자(천명) 2010/2011년
아프리카	모리셔스	43.8	53.1	47.4
	짐바브웨	43.6	30.1	88.8
	콩고	37.4	34.8	38.9
	시에라리온	32.7	36.3	25.7
	잠비아	29.9	16.3	30.3
	말라위	21.9	19.9	9.8
	모잠비크	17.0	39.5	29.5
	가나	15.9	11.6	116.0
	세네갈	14.8	16.8	51.0
	카메룬	14.4	16.0	64.3
중남미	아이티	75.1	47.1	167.4
	트리니다드 및 토바고	68.2	72.4	115.5
	자마이카	32.7	47.1	293.0
	온두라스	32.2	13.7	59.6
	쿠바	20.0	27.8	342.6
	엘살바도르	20.0	14.2	128.6
	과테말라	17.4	18.9	80.1
	우루과이	14.1	8.3	41.7
	도미니카	11.8	10.1	167.5
	콜롬비아	10.8	6.0	375.1
아시아	파푸아뉴기니	20.6	16.4	12.6
	쿠웨이트	17.8	10.0	30.3
	라오스	14.9	25.3	52.0
	캄보디아	14.8	/	52.7
	시리아	17.5	/	75.4
	베트남	10.6	18.3	539.9
	싱가포르	9.6	9.9	74.7
	뉴질랜드	9.4	8.1	174.8
	네팔	8.9	2.2	60.4
	필리핀	8.1	6.8	1,545.2

출처: Feld(2021).

반면에 디아스포라 두뇌들이 홈랜드의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2016년 세계은행 서베이에 따르면 중동

과 북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 전문가들 중 87%가 홈랜드에 있는 개
인들에게 멘토링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였다. 많은 사
람들은 돈을 주기보다 멘토링을 하고 싶어 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다. ‘마음이 두
장소에 있는 hearts are in two places’ 디아스포라 전문가들이 시간과 경험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험을 저렴하게 전수하고 cheapen the experience’ 자녀들이 그들의
뿌리에 연결되도록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²⁶ 디아스포라가 지식경
제 knowledge economy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디아스포라는 여전히 홈랜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 디아스포라의 경우 그리스 내의 조직
에 도움을 제공하거나 전문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옥스포
드 남동유럽연구소 SEESOX: South East European Studies at Oxford의 SEESOX-GDUK survey
에 따르면 금융 및 비금융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 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8.6%였다. 이에 반해 제공에 관심이
없다는 견해는 43.9%였다. 전문적 협력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34.9%였고 전문적 협력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8.2%였다.

〈표 35〉 그리스 내의 조직에 도움 제공 또는 전문적 협력의 발전에 대한 SEESOX-GDUK survey

금융 또는 비금융 도움을 제공	비율(%)	전문적 협력을 발전시킴	비율(%)
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못했음	48.6	아님. 그러나 하고 싶음	34.9
아님. 여기에 관심이 없음	43.9	아님. 여기에 관심이 없음	58.2
예. 관심이 있음	7.5	예. 관심이 있음	6.9

출처: Pratsinakis and Kafe(2022).

26 Avni 2021, pp.14-15.

VI. 인도적 지원, 디아스포라 그리고 홈랜드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 목살을 앓고 있고 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파괴, 세계적인 온도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등이 많은 사람들을 기아와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디아스포라가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전통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들에 의해 위기, 갈등이나 재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위기, 갈등, 재난에 처해서도 생명을 구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인도주의법에 근거한 전통적인 인본주의적 원칙인 인본성^{humanity}, 불편파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을 따르는 것이다.²⁷ 불편파성은 처음의 충동을 억누르고 필요의 긴급성과 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적 억제를 통해 개입하는 것이다. 차별을 두지 않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긴급한 필요에 우선권을 두며 개인적 차원에서 동정이나 이익에 구애되지 않고 편애를 갖지 않고 판단이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중립성은 갈등에서 어느 쪽에 편을 들거나 반대하지 않고 신뢰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인도적 지원을 정치화하지 않는 것이다. 참상을 보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대화를 위한 신뢰를 유지하여야 한다. 독립성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인도적 기구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나 비국가 조직에 대해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²⁸ 문제는 과연 평균적인 인간 95%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인도주의가 경제주의자와 계산을 따지는 사람들의 시대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

27 González and Gan. 2024.

28 Carbonnier 2015, pp.32-33.

이다.²⁹

디아스포라 개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조직으로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 디아스포라 조직은 전통적인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는 아니지만 인도주의적 위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홈랜드에 대해 잘 알고 디아스포라 조직과 지역 공동체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쉽고 자주 가능해 실시간으로 위기가 발생하면 바로 경고음을 보내줄 수 있다. 위기 발생 지역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과의 연계 관계가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다.³⁰

생존을 위해 이민한 사람들은 점차 생활이 안정되면 자국이 위기에 처하거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 홈랜드를 돕는 인도주의적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2009년 전후 코소보 가구의 약 30%가 해외에 살고 있었다. 오늘날 코소보의 디아스포라는 GDP의 30% 이상에 기여하며 매년 3억 유로라는 FDI 유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 서비스의 12억 유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전쟁이 1995년 끝난 이후 200만 명의 보스니아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고 이들은 비자발적 이민자들이었다. 코소보와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디아스포라는 전쟁 전후 어려운 시기에 홈랜드에 대한 안전망을 형성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기억이 공동체를 통합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³¹

디아스포라는 홈랜드와 목적지 국가인 거주지 국가^{country of residence}에서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참여해 왔다.³² 아메드 Bashair Ahmed 박사 등이

29 Carbonnier 2015, p.34.

30 DEMAC 2022b, p.8.

31 Ajeti 2021, p.9.

32 IOM 2023, p.6.

운영하는 디아스포라 연구조직인 샤바카Shabaka가 레바논, 네팔, 니카라과, 수단, 우크라이나, 잠비아 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홈랜드의 위기는 제1세대 이민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제2세대 디아스포라에게서도 디아스포라 인도주의를 자극한다. 일반적인 NGO나 인도주의적 구호단체에서는 지원의 포커스를 변경하기가 보통 어렵지만 디아스포라는 쉽게 포커스를 인도주의적 행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조직은 NGO나 인도주의적 구호단체와 달리 재빠르게 추가 펀딩을 활용하기 힘들다. 반면에 디아스포라는 놀라운 적응 전략을 보여준다. 레바논, 니카라과, 수단, 잠비아에서 이러한 적응 전략의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는 기존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구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행동한다. 서베이에 응답한 디아스포라의 70%는 활동 기금을 마련하는데 개인 소득을 사용하는 반면 62%는 자신의 저축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³³

〈표 36〉 디아스포라의 인도주의적 관행 7개 주요 특징

전통적인 인도주의 원칙	인터뷰한 사람들이 느끼는 신뢰성	디아스포라 인도주의 관행	인터뷰한 사람들이 느끼는 신뢰성
인본성(Humanity)	중간	자원(Resourcing)	낮음
자원봉사(Volunteer service)	낮음	자발적 참여(Volunteering)	높음
중립성(Neutrality)	낮음	약속(Commitment)	높음
독립성(Independence)	낮음	접근(Access)	높음
보편성(Universality)	높음	필요 평가(Needs assessment)	높음
단결성(Unity)	중간	정치(Politics)	낮음
불편파성(Impartiality)	낮음	편파성(Partiality)	낮음/높음

출처: Gamlen and Chakma(2025).

출신국이 다른 디아스포라의 상호 인도적 지원도 있다. 아울러 디아스포라는 범세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하기도 한다. 출신 국가

33 Shabaka. 2021, pp.4-6.

가 다른 디아스포라가 서로 조직을 만들고 협력체를 구성해서 자국인 홈랜드 국가의 난민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도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난민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디아스포라는 인도적 지원에서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주의적 인도주의보다 디아스포라가 신뢰를 받지만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다.

디아스포라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DEMAC가 연구개발회사인 올빼미연구소 Owl Re와 함께 2021년에 수행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인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동티모르, 튀니지 5개국 108개 디아스포라 조직을 크게 4개 범주로 그룹화하고 있다. 거주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식 등록 단체가 79%를 차지한다. 출신 국가에 공식 등록하고 거주 국가에 대표부를 가진 단체는 6%를 차지한다. 자원봉사자 형태가 15%이다.

〈표 37〉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동티모르, 튀니지의 108개 디아스포라 조직 범주화

구분	비율
거주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직원 및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공식적인 조직을 가진 단체	35%
거주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만 주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덜 공식적인 구조와 거버넌스를 갖춘 단체 및 협회	44%
출신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거주 국가에 지사 또는 대표를 두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직원 및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단체	6%
출신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이는 자원봉사자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공식적인 구조와 거버넌스는 없는 모임	15%

출처: DEMAC(2022b).

인도주의적 지원의 대상은 누구인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난민 등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다. 이 민은 복지의 차이와 같은 장기적인 세계적 불균형에 대비해, 그리고 갈등과 같은 쇼크에 적응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약 1억 8,400만 명이 국적을 둔 국가 밖에서 살고 있고 이들 중 약 20%는 난민이다. 이민자와 난민 중 43%는 중저소득국가에서 살고 있고 40%는 OECD와 같은 고소득국가에서 살고 있다. 17%는 걸프만 국가GCC: [Gulf Cooperation Council](#)에 살고 있다. 중저소득국가에 약 7,900만 명의 이민자와 난민이 살고 있다. 이 중 2,700만 명이 난민이다. 고소득 국가에는 7,400만 명의 이민자와 난민이 살고 있다. 이 중 1,000만 명의 난민이 있다. 걸프만 국가에는 약 3,100만 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고 난민이 많지 않다. 이민자가 걸프만 국가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표 38〉 소득에 따라 분류한 이민자와 난민

	거주 비율	경제이민자	난민
저중소득국가	43%	28%	15%
고소득국가	40%	35%	5%
걸프만 국가	17%	17%	

출처: World Bank(2023).

경제이민자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동하지만 대부분의 난민은 발생 국가가 한정되어 있다. 6개 국가에서 국제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76%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800만 명, 시리아 680만 명, 베네수엘라 560만 명, 아프가니스탄 280만 명, 남수단 240만 명, 미얀마 120만 명이다. 난민은 가족이나 공동체가 많아 노동연령 성인인 경제이민자와 다르다. 아동이 난민의 41%를 차지한다. 많은 난민은 재산을 남겨두고 저축한 돈도 없이 와 빈곤에 처해 있다.³⁴

물론 인도주의적 대상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지 경제이민자 중 이민 험프hump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민은 못 사는 국가에서 잘사는 국가로 이주하여 생명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물론 극빈국가

34 World Bank 2023, p.54.

〈표 39〉 2014~23년 국제 보호 및 재정착 도착 신청에 대한 긍정적 결정을 포함한 인도적 입국

	2014~18년 평균(명)	2019년 (명)	2020년 (명)	2021년 (명)	2022년 (명)	2023년 (명)	변화(%), 2019~23년	변화(%), 2022~23년
오스트레일리아	16,660	18,762	13,171	5,947	13,307	17,875	+36	+34
오스트리아	18,909	7,425	6,835	12,105	16,560	23,195	+239	+40
벨기에	11,759	6,770	5,885	10,120	11,005	12,740	+116	+16
캐나다	40,413	48,533	25,485	60,235	74,345	75,050	+194	+1
칠레	91	20	5	15	60	202	+3940	+237
콜롬비아	24	337	351	550	131	59	-83	-55
코스타리카	318	1,330	3,425	624	3,951	2,889	-16	-27
체코	318	135	105	260	325	335	+219	+3
덴마크	5,483	1,575	450	830	665	1,140	+153	+71
에스토니아	81	50	25	50	2,100	3,880	+15420	+85
핀란드	4,118	2,555	1,815	1,955	2,335	2,605	+44	+12
프랑스	27,869	33,740	20,470	35,810	38,875	44,440	+117	+14
독일	192,240	75,210	63,865	65,245	133,240	140,250	+120	+5
그리스	6,876	17,350	34,325	16,575	19,245	24,950	-27	+30
헝가리	607	60	130	40	30	25	-81	-17
아이슬란드	105	380	385	290	950	330	-14	-65
아일랜드	844	1,760	1,140	1,930	3,955	3,330	+192	-16
이스라엘	268	130	68	15	20	25	-63	+25
이탈리아	30,380	19,730	11,935	28,370	26,965	23,535	+97	-13
일본	122	101	91	654	1,997	1,342	+1375	-33
한국	464	295	221	114	67	214	-3	+219
라트비아	104	35	25	90	230	120	+380	-48
리투아니아	176	90	80	435	305	405	+406	+33
룩셈부르크	702	705	765	860	1,040	910	+19	-13
멕시코	2,336	8,228	19,997	20,403	21,220	16,174	-19	-24
네덜란드	13,333	6,720	9,045	12,535	16,585	15,315	+69	-8
뉴질랜드	3,635	3,333	2,277	1,554	3,552	5,727	+152	+61
노르웨이	8,483	4,590	2,670	4,755	4,225	4,425	+66	+5
폴란드	508	265	370	2,155	3,870	4,635	+1153	+20
포르투갈	404	545	315	320	675	310	-2	-54
슬로바키아	113	35	40	45	70	75	+88	+7
슬로베니아	109	85	85	15	205	155	+82	-24
스페인	3,853	39,230	51,420	20,940	36,235	53,690	+4	+48
스웨덴	36,287	11,070	8,030	10,315	9,840	5,795	-28	-41
스위스	15,084	11,795	10,800	10,075	10,500	13,660	+26	+30
튀르키예	15,279	5,445	8,753	13,227	12,857	9,966	+14	-22
영국	13,314	19,408	9,339	30,582	24,018	65,291	+599	+172
미국	154,665	88,915	63,487	48,332	91,999	100,812	+59	+10
모든 국가	626,333	436,742	377,680	418,372	587,554	675,876	+79	+15
모든 유럽국가	392,059	261,313	240,349	266,702	364,048	445,541	+85	+22

출처: OECD(2024).

보다 상중소득국가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이민 험프라고 이야기한다. 2020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와 같은 저소득국가의 인구 중 1% 미만 그리고 일본, 카타르, 미국과 같은 고소득국가의 1% 미만이 해외에 산다. 이에 반해 알바니아, 도미니카와 같은 중위권 소득국가에서 가장 높은 이민자율을 보이고 있다. 발전이 이민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중위권 소득국가 사람들은 고소득국가나 저소득국가 사람들보다 이주할 인센티브가 더 많다.³⁵ 이민 험프는 생존을 위해 이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는가? 독일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제 보호 및 재정착이 필요한 이민자들을 약 14만 명을 받아들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였다. 미국은 2023년 약 10만 명, 캐나다 약 7만 5,000명, 영국은 약 6만 5,000명, 스페인 약 5만 4,000명, 프랑스 약 4만 4,000명을 받아들였다.

디아스포라는 국가와는 달리 재정착지를 제공하거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아스포라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연대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UN 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에서도 디아스포라라는 비전통적 인도주의적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행위의 자금을 개방하고 있다. DEMAC Diaspora Emergency Action and Coordination 조직도 디아스포라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³⁶ 그러면서 DEMAC는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28개 조직을 성공적인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35 World Migration Report 2024, pp.269-270.

36 DEMAC 2022a, p.10.

〈표 40〉 DEMAC이 인도주의적 지원의 성공적 사례로 든 28개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조직

순번	성공적인 내용	성공적인 디아스포라 조직 사례
1	디아스포라 조직이 제도적 인도주의 활동가 및 메커니즘과 효과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	Syrian NGO Alliance (SNA); Yemen Aid
2	엄브렐라(umbrella) 조직이 개별 디아스포라 조직들 간의 조정을 통해 특히 위기 대응 시 부가가치를 창출	Haiti Renewal Alliance; American Relief Coalition for Syria
3	디아스포라 조직이 연계성을 통해 국가 당국과 쉽게 협력	Association des Tunisiens des Grandes Ecoles - ATUGE; Austria-Pakistan Association
4	디아스포라 조직이 다른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지식과 학습의 원천	World Humanitarian Action Forum; Imnania Medics International
5	디아스포라 조직이 역량이 높고 강화할 능력이 있어 전문적인 인도주의 단체 가능	The Organisation of Sierra Leonean Healthcare Professional Abroad; DOZ E.V.
6	디아스포라 조직이 인도주의 지원 분야에서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을 전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Coopération Médicale; Sudanese American Physicians Association
7	디아스포라 조직이 지역 사회를 대변하고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	Sudan NextGen; Omid International
8	디아스포라 조직이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	Healing Venezuela; Basecamp Beirut
9	디아스포라 조직이 피해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접근 어려움을 극복	Foundation for Refugee Economic Empowerment; Dominica Amateur Radio Club Inc. (DARCI)
10	디아스포라 조직이 제공하는 성별에 따른 지원은 지역 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 높음	Himilo Relief and Development Association; Dawrati
11	디아스포라 조직이 현지 연결망과 지식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New Ways; Institute of Chin Affairs
12	디아스포라 조직이 해당 국가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재함으로써 인도주의와 개발의 연계체제(nexus)를 형성	Keihan; Finnish-Somalia Network
13	디아스포라 조직이 새로운 디지털 도구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출신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	Global Ukraine; Syrian Charities and Associations Network in the United Kingdom
14	디아스포라 조직이 거주 국가와 출신 국가 모두에서 비상사태 대비에 중요한 역할	Hand in Hand for Aid & Developmen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lumni Association Indonesia

출처: DEMAC(2022a).

위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1993년 소말리아 지식인들이 디아스포라와 함께 세운 뉴웨이즈 New Ways의 기금 마련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뉴웨이즈의 총예산 중 기금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식량 프로그램 WFP: World Food Program 으로부터 45.1%, UNICEF 44%, 유엔 인구 기

금UNFPA 7.4%, 소말리아 인도주의 기금Somalia Humanitarian Fund 3.5%였다.³⁷

이러한 조직적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국제적 행위자로 역할을 하게 되고 인도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인도적 지원의 세계적 수요는 증가하여 2015년 이후 250% 증가했다. 2022년 29개 국가 중 1개 국가 즉 세계 인구의 3%가 팬데믹, 갈등, 기후변화 등으로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인도적 지원의 주요 행위자로 출현하게 되었다. 홈랜드와 정서적 문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디아스포라 집단들이 형성되어 위기와 발전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인본주의는 고통을 줄여주고 인간 조건을 증진시키고 위기에 신속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아스포라 인도주의는 국가를 초월한 원조, 빈곤퇴치, 갈등, 질병, 자연재해 등에 지원한다.³⁸

감렌과 차크마Anurug Chakma는 인간이 만든 위기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자연적 재해를 겪은 네팔과 통가를 비교 분석한 적이 있다. 이러한 비교는 디아스포라 활동이 위기 유형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연재해에는 더 광범위하고 공동체 중심적인 대응이, 분쟁 상황에서는 더욱 집중적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관료적 장벽을 우회하며, 지역적 요구를 해결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 세계 인도주의 시스템 개혁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⁹

37 DEMAC 2022a, p.80.

38 Gamlen and Chakma 2025, pp.1-2.

39 Gamlen and Chakma 2025, p.14.

VII. 나가며

과거와는 달리 디아스포라의 홈랜드에 대한 개입이 증가되고 있다. 국가는 디아스포라 등 이민을 다루는 정부 부처를 두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디아스포라의 개입을 후원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도 홈랜드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국제 송금이나 FDI 투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홈랜드가 위기나 갈등에 처할 때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디아스포라가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조직을 형성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디아스포라를 역사적 차원에서 그리고 근현대에서 디아스포라를 추정하였다. 디아스포라는 이민자, 종교이민자, 난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였다. 아울러 디아스포라와 홈랜드 간의 협력을 위해 제도적으로 어떠한 기구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들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디아스포라가 해외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홈랜드가 이들을 위한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주는 등 과감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역으로 디아스포라가 홈랜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디아스포라의 송금 및 투자 등을 포함한 아웃리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두뇌의 해외 유출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디아스포라의 멘토링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홈랜드에 전파하는 긍정적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갈등과 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을 겪는 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의 갈등 지역, 자연재해 지역에 디아스포라들의 연대가 이루어져 이들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국제사회에서 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쟁에 대한 억제

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Agunias, Dovelyn R. and Kathleen Newland. 2012. *Developing a Road Map for Engaging Diasporas in Development: A Handbook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in Home and Host Countries*.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Aikins, Kingsley and Martin Russell. 2021. "The future of diasporas." In IOM, *The Future of Diasporas*, pp.5-7. Geneva: IOM.
- Ajeti, Emira. 2021. "Raising the future of diasporas on their own terms: A new sense of belonging. In IOM, *The Future of Diasporas*, pp.9-12. Geneva: IOM.
- Anastasakis, Othon, Foteini Kalantzi, Antonis Kamaras, and Manolis Pratsinakis. 2022. "Introduction: The Greek Crisis as a Critical Juncture in Homeland-Diaspora Relations." In Othon Anastasakis, Manolis Pratsinakis, Foteini Kalantzi, and Antonis Kamaras, eds. *Diaspora Engagement in Times of Severe Economic Crisis: Greece and Beyond*, pp.1-15. Cham: Palgrave Macmillan.
- Avni, Ronit. 2021. "Using technology to channel diaspora knowledge hom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he Future of Diasporas*, pp.13-16. Geneva: IOM.
- Bunduchi, Elena and Valentina Vasile. 2023. "Migration Theories and the Role of Remittances." In Valentina Vasile, Elena Bunduchi, Daniel Stefan, and Calin-Adrian Comes, eds., *International Labour Mobility: How Remittances Shape the Labour Migration Model*, pp.19-39. Cham: Palgrave Macmillan.
- DEMAC(Diaspora Emergency Action and Coordination). 2022a. *Diaspora Emergency Action and Coordination Good Practices*. DEMAC: Copenhagen.
- DEMAC. 2022b. *Diaspora Emergency Action and Coordination Key Highlights*. DEMAC: Copenhagen.
- Carbonnier, Gilles. 2015. *Humanitarian Economics: War, Disaster and the Global Aid Mark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kir, Saliem. 2021. "The climate-development nexus and the role of the African diaspora." In IOM, *The Future of Diasporas*, pp.25-27. Geneva: IOM.
- Feld, Serge. 2021. *International Migration, Remittances and Brain Drain Impacts on Development*. Cham: Springer.
- Gamlen, Alan. 2014. "Diaspora Institutions and Diaspora Governanc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s1): S180-S217.
- Gamlen, Alan. 2019. *Human Geopolitics: States, Emigrants, and the Rise of Diaspora Instit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mlen, Alan and Anurug Chakma. 2025. "Trusted intermediaries? The role of diasporas in humanitarian

- assist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117: 1-16.
- González, Pedro Arcos and Rick Kye Gan. 2024. “The Evolution of Humanitarian Aid in Disasters: Ethical Implications and Future Challenges.” *Philosophies* 9(3): 62-72. <https://doi.org/10.3390/philosophies9030062>.
- Grigoriadis, Ioannis N. 2022. “The Ecumenical Patriarchate: Bridging Greece, the Diaspora and the Orthodox World.” In Othon Anastasakis, Manolis Pratsinakis, Foteini Kalantzi, and Antonis Kamaras, eds. *Diaspora Engagement in Times of Severe Economic Crisis: Greece and Beyond*, pp.221-239. Cham: Palgrave Macmillan.
-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9. *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 A Global Perspective*. Geneva: IOM.
- IOM. 2021. *The Future of Diasporas*. Geneva: IOM.
- IOM. 202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22. 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 Data and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A Baseline Report*. Geneva: IOM.
- IOM. 2023. *Framework for Diaspora Engagement in Humanitarian Assistance*. Geneva: IOM.
- IOM. 2024a. *Migration Governance Insights on Regular Pathways: Delivering on the Promise of Migration*. Geneva: IOM.
- IOM. 2024b. *Migration Governance Insights: Informing People-centred Migration Policies*. Geneva: IOM.
- IOM. 2024c. *Social protection of migrants. A thematic paper based on the Migration Governance Indicators (MGI) and the Objectives of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eneva: IOM.
- Kramer, Stephanie and Yunping Tong. 2024. *The Religious Composition of the World's Migrants: Christians are the largest migrant group, but Jews are most likely to have migrated*.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4/08/19/the-religious-composition-of-the-worlds-migrants/>.
- Kuznetsov, Yevgeny and Charles Sabel. 2006. “International Migration of Talent, Diaspora Networks, and Development: Overview of Main Issues.” In Yevgeny Kuznetsov, ed., *Diaspora Networks an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Skills: How Countries Can Draw on Their Talent Abroad*, pp.3-19. World Bank: Washington, DC.
- Margheritis, Ana. 2021. “Diaspora engagement policies in South America.”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he Future of Diasporas*, pp.33-35. Geneva: IOM.
- McAuliffe, M. and L.A. Oucho (eds.), 2024. *World Migration Report 2024*. Geneva: IOM.
- Negash, Almaz. 2021. “Africans in the diaspora: A force for good.” In IOM, *The Future of Diasporas*, pp.37-40. Geneva: IOM.

- Ness, Immanuel. 2023. *Migration as Economic Imperialism: How International Labour Mobility Undermines Economic Development in Poor Countries*. Cambridge: Polity Press.
- OECD. 2015. *Connecting with Emigrants: A Global Profile of Diasporas 2015*. Pari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39845-en>.
- OECD. 2024.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0b0353e-en>.
- Orozco, Manuel. 2021.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diasporas." In IOM, *The Future of Diasporas*, pp.45-50. Geneva: IOM.
- Pahor, Marija Jurić. 2023. "Diaspora and Diasporisation: Slovene National Identity in the Contemporary Globalised World." *Journal of Ethnic Studies* 91: 199-224.
- Pratsinakis, Manolis and Anastasia Kafe. 2022. "The Greek Diaspora in the UK during the Crisis: Socio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of Return and Aspects of Engagement." In Othon Anastasakis, Manolis Pratsinakis, Foteini Kalantzi, and Antonis Kamaras, eds., *Diaspora Engagement in Times of Severe Economic Crisis: Greece and Beyond*, pp.121-152. Cham: Palgrave Macmillan.
- Shabaka. 2021. *Diaspora Engagement in Times of Crisis*. EUDiF, International Centre Migration Policy Development(ICMPD): Brussels.
- Sheffer, Gabriel 2003. *Diaspora Politics: At Home Abroa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ttel-Mosser, Fanny. 2023. *A Typology of Diaspora Engagement Institutions*. Brussels: ICMPD.
- UNHCR website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
- World Bank. 2023. *World Development Report 2023: Migrants, Refugees, and Societies*. Washington, DC: World Bank. doi:10.1596/978-1-4648-1941-4.

Diaspora and Humanitarian Aid

Yangho Rhee

President of Institute of Asian overseas korean,
ex-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 Abstract ◇◇◇◇◇◇◇◇◇◇◇◇◇◇◇◇

This paper discusses the general size of the diaspora, its institutional relationship with the homeland country, and on the one hand, the outreach policy of the homeland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support of the diaspora to the homeland country, and finally, the role of the diaspora in term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s the role of the diaspora is increasing, the homeland country is also pursuing an outreach policy for them, and as it advocates diaspora engag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aspora and the homeland country is becoming closer, not only institutionally but also practically.

Keywords: diaspora, humanitarian assistance, homeland, outreach policy, remittance

유대인 국제 네트워크와 디아스포라 유대인:

19세기 영국 유대인 몬테피오리의 사례연구*

최영철**

[국문 요약]

모세 몬테피오리 Moses Haim Montefiore, 1784~1885는 19세기 영국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몬테피오리는 시온주의 운동의 선구자였으며, 동시에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박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동의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종교를 초월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활동을 펼쳤다.

이 논문에서는 몬테피오리가 핍박받는 유대인을 구출하기 위해 펼쳤던 활동 및 종교를 초월한 자선활동, 그리고 노예제도 철폐운동 등 그의 국제적인 자선 및 인권운동과 초지역적, 초국가적으로 연결된 유대인 네트워크 간의 상관관계를 구조와 행위자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핵심어: 모세 몬테피오리,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26일 세계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성균관대 교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대학교 부설 트루만 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장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로 있다. 단독 저서로 『현대 중동국가의 정치체제 형성과 국제관계』(2014)가 있다. 공동 저서로는 『유대교와 이슬람, 금기에서 범으로』(2008),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2011), 『중동 국가의 내부 갈등』(2013)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A Study on the Israeli-Palestinian Peace Process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Jerusalem”, “Kuwaiti Political Reforms after the ‘Arab Spring’: An Analysis of the Kuwaiti Parliamentary Elections”, “팔레스타인 국가건설과정에서의 내적 갈등과 협력: PLO와 하마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마스의 제도권 진입과정과 관련한 연구”, “이브 칼둔의 정치변동이론과 현대 중동정치 연구에의 함의”, “중동의 재스민 혁명: 튀니지와 이집트 사례”, “이스라엘의 국내 갈등에 관한 연구: 유대계-아랍계 인종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슬람형법과 사형제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권승계 연구(1953-2020): 이브 칼둔의 정치변동이론을 통한 분석” 등이 있다.

목 차

- I. 서론
- II. 몬테피오리의 경제활동
- III. 디아스포라 유대인 인권과 팔레스타인 정착활동 지원
 - 1. 1840년 다마스쿠스 사건
 - 2. 팔레스타인 유대인 공동체 지원
 - 3. 반反노예제도 운동과 국제적인 인권운동
 - 4. 에드가르도 모르타라Edgardo Mortara 사건
 - 5. 몬테피오리 활동의 초超종파성
- IV.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모세 몬테피오리 Moses Haim Montefiore, 1784~1885는 1784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Regione Toscana의 리보르노 Livorno에서 영국에 기반을 둔 세파르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모세 몬테피오리 Moses Vital Montefiore는 1740년대에 리보르노에서 런던으로 이주했다. 몬테피오리는 그의 부모인 요셉 몬테피오리 Joseph Elias Montefiore와 라헬 Rachel¹이 출장차 이탈리아에 있을 때 태어났다.²

모세 몬테피오리는 19세기 영국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적인 지도자이다.³ 그는 젊은 나이에 런던 주식 거래소에서 많은 돈을 모았고 1824년 정규 비즈니스에서 은퇴하여,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공적인 활동에 전념했다. 그는 보험, 가스, 금융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시켰다. 1837~1838년 런던의 사법 집행관이었으며,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 그에게 기사 작위를 부여했다. 그는 유대인 공동체에 기여한 공로로 1846년 준남작 baronetcy 작위를 받았다.⁴

몬테피오리는 1860년 예루살렘 밖에 최초로 유대인 정착촌 미쉬케넷트 샤아나님 Mishkenot Sha'ananim을 건설하는 등 팔레스타인 유대인 공동체의 산업·경제 발전, 교육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거액의 돈을 기부했다.⁵ 그는 1835년부터 1874년까지 영국 유대인 평의회 총재를 역임했다. 특히 그는 해외에서 억압받는 유대인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⁶ 그는 독실한 유대교인으로서 이스라엘 유대교 성지를 일곱 차례 방문했으

1 라헬은 런던의 유대인 금융 갑부 아브라함 모카타(Abraham Mocatta)의 딸이다.

2 Green 2005, p.635.

3 Bartal 1987, pp.5-24; Green 2005, p.631, pp.636-637; Lipman 2007a, p.457; Lipman 2007b, p.456.

4 Lipman 2007a, p.457; *The London Gazette* No. 19558. 14 November 1837, p.2922.

5 Sapir 1996, pp.35-60; Birnbaum 2012, p.31.

6 Green 2005, p.636.

며, 유대민족이 팔레스타인에 귀환하여 정착하는 운동을 펼치는 등 시온주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몬테피오리는 시온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동시에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⁷ 그는 중동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핍박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등 종교를 초월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선활동을 펼쳤다.⁸ 또한 영국 식민지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이에 수반되는 기금을 조성하는 등 노예제도 철폐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몬테피오리가 핍박받는 유대인을 구출하기 위해 펼쳤던 활동 및 종교를 초월한 자선활동, 그리고 노예제도 철폐운동 등 그의 국제적인 자선 및 인권운동과 초지역적, 초국가적으로 연결된 유대인 네트워크 간의 상관관계를 구조와 행위자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II. 몬테피오리의 경제활동

몬테피오리는 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의 재정을 돕기 위해 일했다. 그는 차 도매상과 식료품 가게에서 일했다.⁹ 차 도매상에서 도제로서 비즈니스 훈련을 받았다. 초기에는 좌절을 경험했으나 그의 형 아브라함과 동업하여 큰 명성

7 Lipman 2007a, p.457.

8 Green 2005, p.654.

9 Green 2010, p.25.

을 얻었다. 1803년 그는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인으로 일했으며 런던에서 활동하던 12명의 유대인 금융 브로커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¹⁰ 1806년 엘킨 다니엘 가문의 사기로 고객의 모든 돈을 잃게 된다. 그 결과 그는 중개인 일을 할 수 없었다. 1810년부터 1814년까지 몬테피오리는 민병대에 참여했다. 1815년 그는 다시 중개인 면허를 구입하여 1816년까지 형인 아브라함과 합작 투자를 했으나, 1820년에는 무역 활동을 거의 중단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 가문과의 혼맥을 배경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여 1820년대 이후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정착을 지원하고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펼치는 데 사용했다.

1812년 몬테피오리는 레비 코헨의 딸인 유디트 코헨¹⁷⁸⁴⁻¹⁸⁶²과 결혼함으로써 유럽 금융 재벌 가문의 선두 주자 나단 로스차일드^{Nathan Mayer Rothschild, 1777-1836}와 동서지간이 되었다.¹¹ 나단 로스차일드는 영국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 사업을 이끌어 거부가 되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재벌 가문이다. 이 가문은 몬테피오리가 핍박받는 유대인을 구출하고 노예제도 철폐운동과 종교를 초월한 자선활동,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운동을 펼칠 때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해주었던 든든한 후원자였다.

10 Goodman 1925, pp.30-34; Frankel 1997a, pp.1-2; Hyamson 1945-1951, p.47.

11 Green 2005, p.635; Goodman 1925, pp.27-28; Lipman 2007, p.456.

III. 디아스포라 유대인 인권과 팔레스타인 정착활동 지원

1. 1840년 다마스쿠스 사건

1) 사건 개요

1840년 2월 5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이탈리아 카푸친 수도회의 토마스 신부가 그의 조수인 이브라힘 아마라와 함께 실종되었다.¹² 카푸친 수도회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행사를 위해 두 사람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¹³ 유대인들에 의한 의식(儀式) 살인이라는 것이다. 유대인의 '의식 살인'이란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납치하여 죽인 후, 그 피를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에 발라먹는다는 것이다.¹⁴ 즉 토마스 신부와 그의 조수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의식 살인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에서 빠르게 확산하였으며, 유럽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¹⁵

프랑스 총리 티에르(Thiers)는 다마스쿠스의 프랑스 영사인 라티-망통(Ratti-Menton) 백작에게 오스만 제국의 시리아 총독인 셰리프 파샤와 협력하여 이 살인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십 명의 유대인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다.¹⁶ 결

12 Frankel 1997b, p.1; Jacobs 1902, p.119; Hyamson 1945-1951, p.47; Goodman 1925, pp.61-63.

13 카푸친 수도회의 이탈리아인 수사 토마스 신부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주는 등 보건 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마스쿠스의 많은 유대인 가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토마스 신부와 그의 하인은 일부 무슬림 아랍인들과 다툼을 벌였는데, 그중 한 명인 노새 몰이꾼이 토마스 신부가 자기 손에 죽을 것이라고 떠들었다. 그의 실종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아랍인 상인 중 한 명이 자살했다. Hyamson 1945-1951, p.47 참조.

14 Frankel 1997a, pp.2-3.

15 Frankel 1997b, p.207.

16 Frankel 1997a, p.207; Frankel 1997b, p.1; Hyamson 1945-1951, p.48.

국 16명의 유대인 남성이 토마스 신부와 그의 조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명의 유대인은 심문 과정에서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한 명은 처벌을 피하려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다.¹⁷

프랑스 신문 <르 콩스티튀시오넬 [Le Constitutionnel](#)>은 1840년 3월 29일 자 판에서 유대인의 유월절 의식 살인 혐의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며칠 후 <르 세마포르 드 마르세이유 [Le Sémaphore de Marseille](#)>는 토마스 신부와 그의 조수가 데이비드 하라리 [David Harari](#)라는 유대인 집에서 7명의 유대인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¹⁸ 이 의식 살인 혐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은 데이비드 하라리의 무슬림 종 [Murad el-Fatal](#) 이었다. 이 의식 살인에 참여했다고 그가 주장한 사람들 대부분은 체포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아이작 레비 피치오토는 오스트리아 시민권자였고 오스트리아 영사의 보호 아래 있었다. 그의 오스트리아 시민권은 결국 오스트리아, 영국 및 미국의 개입으로 이어졌다.¹⁹

2) 향의 시위와 협상

이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유럽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²⁰ 유럽에서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유대인의 해방을 앞장서 추진하던 프랑스의 총리 티에르는 프랑스 유대공동체 지도자들의 간청을 묵살하고 다마스쿠스의 프랑스 영사인 라티 - 망통의 고문을 수반한 불법적인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²¹ 오스트리아 총리 클레멘

17 Hyamson 1945-1951, p.48; Frankel 1997b, p.1.

18 Frankel 1997a, p.76.

19 Hyamson 1945-1951, p.48.

20 Hyamson 1945-1951, pp.54-56.

21 Frankel 1997a, p.207; Hyamson 1945-1951, pp.47-49.

스 폰 메테르니히와 영국 외무장관 팔머스턴Palmerston도 경찰 조사와 재판을 지지했다. 그들은 정치인이었던 동시에, 자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다마스쿠스 사건에 개입했다. 당시 중동을 지배했던 서국 열강의 대표로서 시리아에서 오스만 터키의 총독인 무함마드 알리를 퇴각시키고 오스만 제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견제하는 등 국익을 고려한 정치적인 접근 행태를 보였다.

몬테피오리는 영국 외무부 장관 팔머스턴과 다마스쿠스 영사 처칠Charles Henry Churchill, 프랑스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 크리미외Adolphe Crémieux, 오스트리아 영사 멀레이토Giovanni Gasparo Merlato, 덴마크 선교사 니콜라이슨John Nicolayson 등이 참여한 대표단을 이끌고 이집트를 방문했다.²²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협상은 8월 4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되었다. 8월 말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영국과 오스트리아 전함이 무력시위를 하자 이집트 총독은 아직 살아있는 유대인 9명 13명²³의 석방을 지시했다.

몬테피오리는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고 술탄 압둘 메시드 1세를 설득하여 1840년 11월 6일 유혈 충돌의 확산을 막기 위한 칙령을 반포하도록 요청했다. 술탄이 반포한 오스만 제국의 이 칙령은 의식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대인들은 무죄가 명백하며, 최소한의 유죄 근거가 없는 비난과 기소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오스만 제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우리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유대 민족이 그들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무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 때문에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²³

22 Green 2005, p.636.

23 Oller 2009, p.39.

3) 다마스쿠스 사건의 영향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반응

15,000명의 미국 유대인들은 시리아 유대인들이 의식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하여 미국 6개 도시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유대인 공동체가 처음으로 곤경에 처한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소수 민족 이민자 가운데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 행동하도록 했던 최초의 시도였다. 이러한 미국 유대인들의 항의 시위 결과 미국 행정부는 주 이집트 미국 영사로 하여금 오스만 당국에 항의하도록 조치했다.

다마스쿠스 사건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자국 정부를 움직여 위협에 처한 동족 구출을 위해 행동한 첫 사례였다. 미국 행정부가 이 사건을 이슈화하여 외교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국 언론도 이에 가세했으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미국 유대인들은 대중 집회를 통해 연대했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도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에 합류했다.

다마스쿠스 사건은 현대 유대인 언론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또한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감을 강화했다. 그리고 서유럽에서 현대 유대인 언론이 창설되고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파리와 런던의 <유대인 크로니클 The Jewish Chronicle> 창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럽과 미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던 반유대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 ① 유대인 공동체와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연대 정도,
- ②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
- ③ 현지 국가 정책에 대한 영

향력 정도, ④ 유대인 공동체가 현지 언론과 여론에서의 지위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해방을 주도했던 진보적인 국가 프랑스의 티에르 총리가 다마스쿠스 사건에서 유대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영국의 유력지 <런던 타임즈 Times of London>와 <타임즈 Times>의 유대인에 대한 비우호적 보도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유대인 공동체에 충격을 주었다.

티에르 총리, 라티 - 망통 및 <타임즈>와 같은 서구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과 언론이 유대인 의식 살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는 유대인 공동체에 실망을 안겨 주었다.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금융 재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던 로스차일드 가문²⁴이 다마스쿠스 유대인 석방에 크게 기여했다.

유대인 공동체가 기대했던 티에르 총리는 중동에서 유럽 열강과 프랑스 국익을 위해 경쟁해야 했다. 그는 이 문제에서 보편적인 소수 민족의 인권보다는 프랑스의 국익을 우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에서 무함마드 알리 정권의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의식 속에는 중세 시대부터 형성된 유대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²⁵

영국의 유력지 <런던 타임즈>와 <타임즈>,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유력지들이 다마스쿠스 사건에 보인 태도는 12세기 이후 유럽에 확산되었던 유대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보여준다. 유대인의 ‘의식 살인’이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월절

24 영국의 유대인 갑부 나단 로스차일드는 몬테피오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할 때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했으며, 로스차일드 은행 가문의 비엔나 지점장은 오스트리아 당국과 다마스쿠스 유대인 석방을 위한 은밀한 협상을 진행했다.

25 티에르 총리는 프랑스 은행 재벌이며,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인 제임스 로스차일드(James de Rothschild)에게 중세 시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위해 기독교인의 피를 요구할 만큼 광신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납치하여 죽인 후, 그 피를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에 발라먹는다는 것인데 동물의 피를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²⁶는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에서 1세기에 드루이드교도들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의식을 하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브라함 시절부터 유대인이 반대했다는 사실과 기독교인들이 동물의 피를 먹지만 유대인들은 동물의 피는 절대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세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성경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공개된 구약 성경과 탈무드를 통해 이러한 유대교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12세기부터 형성된 유대인 의식 살인 신화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기독교 사회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맥스 디몬트의 저서 『유대 민족의 놀라운 모험 Amazing Adventures of the Jewish People』에서 유대인 의식 살인 혐의에 대한 유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144년 영국의 노르위치 마을에서 한 남자 어린아이가 실종되었고 변절한 한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피의 제사를 위해 그 아이를 살해했다고 거짓으로 실토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조치가 있기에 앞서 죽은 아이의 시체가 살해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채 발견되었다. 현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해서 그 아이는 성인으로 대접받게 되고 그의 고향 교회의 사당에 모셔졌다. 하나의 실례가 마련되었고 그 후 2세기 동안 유대인에 대한 의식 살인 혐의는 유럽대륙에 전염병처럼 번졌다.”²⁸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 유대인 공동체는 두 가지 성과를 거뒀다. 첫째, 유대인의 의식 살인에 대한 비난이 명백한 거짓임을 밝혔다. 둘

26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3:17)

27 이러한 유대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세기 나치 독일의 유대인 600만 학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28 맥스 디몬트 1994, pp.228-229.

째, 중부 및 서부 유럽 전역의 유대인 공동체가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되었고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연대를 달성했다.

그러나 몬테피오리를 포함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의식 살인에 대한 재판 결과를 결정적으로 반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과거 유럽 자유주의 담론에 의해 미신으로 낙인찍힌 유대인에 대한 신화와 편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굳어진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의 시민권과 사회·정치적 지위 그리고 그들의 물리적 안전까지 영향을 미쳤다.²⁹

다마스쿠스 사건은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가 가졌던 계몽과 근대성에 대한 기대가 환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신화가 합리성보다 우위에 있었다. 반동적, 보수적인 정권은 유대인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옹호했다. 반면 진보적인 국가들과 언론 기관들은 유대인의 의식 살인의 허구성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반유대주의 문화적 담론이 큰 힘을 발휘했고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유럽 열강 간 경쟁은 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랑스 총리 아돌프 티에르, 오스트리아 총리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 영국의 외무장관 팔머스턴을 중요한 행위자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또한 시리아 무슬림 사회에 내재되었던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 간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유럽 기독교 사회에 내재되었던 반유대주의와 기독교 시온주의 또는 철학적 유대주의가 이 사건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몬테피오리는 1840년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 핍박받는 유대인을 구출하는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로서의 명성을 획득했다. 비록 몬테피오리가 40년 동안 영국 유대인 평의회 총재로 재임했지만, 영국 밖

29 Frankel 1997, p.433.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다마스쿠스 사건은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의 국제적인 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첫 번째 활동이었다.³⁰

2. 팔레스타인 유대인 공동체 지원

몬테피오리는 젊었을 때 종교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1827년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후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독실한 유대교인이 되었다.³¹ 그는 1838년 이스라엘의 토지를 구입하여 팔레스타인에 정착하는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고 시도했으나 터키 등 강대국들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후에 팔레스타인에 인쇄기와 섬유공장 등을 도입하는 다양한 산업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몇 개의 농장을 설립했다. 1860년 구 예루살렘 성 밖 힌놈의 골짜기 서편에 첫 유대인 동네인 ‘예민 모세’를 세웠다.³²

스파라담 정통파 유대교인이었던 몬테피오리는 박애주의자로서 영국 정부 내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했다. 그는 해외에서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1846년 러시아, 1863년 모로코, 1867년 루마니아 등을 각각 방문하여 해당 국가 정부를 설득하였다.³³ 1872년 표트르 대제의 200주년 행사 Bicentennial celebration 에서 유대인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여 유대인의 해방을 역설했으나 1881년부터 러시아에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재개되었다. 그는 유대 국가의 메시아적인 회복을 믿었으나 유대 문제의 해

30 Green 2005, p.635.

31 Lipman 2007a, p.457.

32 Birnbaum 2012, p.31; *Jerusalem Post*, 26 June 2018.

33 Green 2005, pp.636-638.

결을 위한 팔레스타인에서의 대규모 유대 국가 발전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1854년 몬테피오리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유한 미국계 유대인인 그의 친구 유다 투로Judah Touro로부터 그의 유산을 기부받았다. 몬테피오리는 유언 집행자로 임명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생산적인 노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그의 유산을 사용했다. 1855년에 그는 유대인에게 농업 훈련을 제공하는 예루살렘 성 읍바문 외곽에 있는 과수원을 구입했다.

1860년 몬테피오리는 오늘날 미쉬케넛트 샤아나님Mishkenot Sha'ananim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외곽에 최초의 유대인 주거 정착촌과 자선 시설을 건설했다.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선구자가 되었다. 당시 성벽 밖에서 사는 것은 도적들로 인해 위험했었다. 몬테피오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했다. 몬테피오리는 미쉬케넛트 샤아나님을 스파라딤 유대인과 아쉬케나짐 유대인이 함께 사는 새로운 유형의 위생적이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착촌으로 발전시켰다. 몬테피오리는 또한 읍바로Jaffa Road 남쪽, 스파라딤 유대인을 위한 오헬 모셰Ohel Moshe 마을, 아쉬케나짐 유대인을 위한 마즈케레트 모셰Mazkeret Moshe 마을을 연이어 건설했다.³⁴

몬테피오리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산업, 교육 및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거액의 돈을 기부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 건설되는 정착촌에서 생산적인 기업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건축업자들은 영국에서 데려왔다. 이러한 활동은 유대인 정착촌들이 유대인 민족 독립국가 창건 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로 추진되었다.

³⁴ Jerusalem Post, 26 June 2018.

몬테피오리는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값싼 밀가루를 제공하기 위해 예민 모세 Yemin Moshe 지역에 몬테피오리 풍차 Montefiore Windmill를 건설했으며 인쇄기와 직물 공장을 설립했다.³⁵ 그리고 많은 농업 정착촌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유대인 영농을 위해 경작지를 획득하려고 시도했지만 비무슬림에 대한 토지 판매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구^舊유대인 정착촌의 유대인들은 그를 왕자 몬테피오리라고 불렀으며, 이는 히브리 문학에서 언급되는 칭호이다.³⁶

3. 반^反노예제도 운동과 국제적인 인권운동

1820년대부터 몬테피오리는 영국 정계에서 샘 거니 Sam Gurney, 토마스 벅스틴 Thomas Fowell Buxton, 토마스 호지킨 Thomas Hodgkin 등과 함께 노예제도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1935년 나단 로스차일드와 함께 공동 계약자로서 해방된 노예 소유자에게 2천만 파운드의 대출을 제공하여 영국 정부가 1835년 노예해방법 Slave Emancipation Act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노예제도 반대 운동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유대인 해방을 위한 운동과 함께 노예제도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반노예제도 운동을 지원했다.³⁷

1840년 다마스쿠스 유대인 구출을 위해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집트 총독 마흐메트 알리 Mehmet Ali에게 노예제도 폐지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마흐메트 알리 총독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소수 민족

35 Sapir 1996, pp.35-60; Green 2005, p.635.

36 Birnbaum 2012, p.31.

37 Loewe 1983, p.135.

으로서 억압받는 유대인의 인권 문제로부터 종교를 초월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관심의 폭을 확대한 것이다.

몬테피오리가 박해받는 유대인들의 인권 문제에서 노예제도 폐지 등 종교를 초월한 인권운동으로 지평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주의 기독교 세계와의 교류와 접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개신교의 철학적 유대주의 운동과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다. 몬테피오리가 중동지역 유대인 공동체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에서 겪는 유대인의 곤경을 종교적 관용과 시민권에 대한 인권 문제로 관심의 폭을 확대시켰다. 그는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초월하여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³⁸

1860년 시리아에서 드루즈족과 기독교인들 간 내전이 발생하여 드루즈족에 의해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되었다. 이 학살 사건 발생 이후 몬테피오리는 프랑스 유대공동체 지도자 크리미외와 함께 시리아의 빈곤한 기독교 난민들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추진했다. 몬테피오리는 영국, 유럽, 미국에서 약 30,000파운드를 모금했다.

이 모금운동에는 몬테피오리, 크리미외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등 유대인들은 물론, 컬링 어들리 Culling Eardley와 샤프츠버리 Shaftesbury와 같은 개신교 복음주의자들도 참여했다.³⁹

1863년 몬테피오리는 모로코를 방문하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대인들을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살해 혐의로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무슬림의 석방을 위해 모로코 술탄과 협상을 했다.⁴⁰ 그는 모로코의 술탄에게 기독교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더 공정한 대우를 해

38 *Jewish Chronicle*, August 24, 1877, p.13; Green 2005, p.656.

39 Green 2005, p.653.

40 Green 2005, p.636, p.653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몬테피오리의 모로코에서의 인권운동은 영국의 의회와 언론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1870년 몬테피오리는 팔레스타인에서의 기근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유대인에게 100파운드, 가난한 기독교인 구호에 100파운드, 무슬림 공동체 구호에 100파운드를 기부했다. 그리고 1871년 페르시아의 기근 소식을 듣고 유대인에게 50파운드, 기독교인에게 25파운드, 무슬림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25파운드를 기부했다.⁴¹

4. 에드가르도 모르타라 Edgardo Mortara 사건

1857년 말 이탈리아 볼로냐 종교재판소의 종교재판관인 피에르 펠러티 Pier Feletti 신부는 볼로냐에 거주하는 6세 유대인 소년 에드가르도 모르타라를 데려오도록 명령했다. 모르타라의 집에서 그를 돌보았던 안나 모리시 Anna Morisi 라는 가톨릭 신자가 모르타라가 아기였을 때 모르타라가 임종을 앞둔 위독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모르타라가 세례를 받도록 했으며, 교황 비오 9세 Pius IX가 대부가 되었다.⁴² 1858년 6월 24일 교황령 Papal States 경찰은 모르타라의 집에 찾아와 모르타라를 강제로 데려갔다. 교황령 치하에서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모르타라의 유대인 부모는 아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모르타라는 교황 비오 9세의 보호 아래 가톨릭 신자로 자랐고 결국 가톨릭 사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유럽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당시 영국 유대인 평의회 총재로 재임하던 몬테피오리는 영국 모르타라 특별위원회를 구

41 Green 2005, pp.653-654; *Jewish Chronicle and Hebrew Observer*, March 25, 1870, p.3; *Jewish Chronicle and Hebrew Observer*, August 4, 1871, p.2.

42 Kertzer 1998, pp.40-41, p.83, p.148.

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했다.⁴³

몬테피오리는 이탈리아 유대공동체로부터 받은 모르타라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영국 언론과 가톨릭 성직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모르타라를 부모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의 노력을 영국 개신교계와 복음주의 동맹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바티칸에 공식 항의를 제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실패한 후, 개인적으로 로마로 가서 교황에게 모르타라를 부모에게 돌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⁴⁴

몬테피오리는 1859년 4월 5일에 로마에 도착한 후 교황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⁴⁵ 그는 대신 1859년 4월 28일 안토넬리 추기경을 만나 교황에게 제기하는 영국 유대인 평의회 청원서를 전달하고 일주일 동안 교황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틀 후, 1859년 이탈리아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전쟁 중에도 교황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5월 10일 로마를 떠났다.⁴⁶ 영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교황의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서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79명의 시장과 지방단체 자치장, 27명의 영국 유대인 평의회 의원, 22명의 성공회 주교와 대주교, 36명의 국회의원 등 2,0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의 서명을 받았다.⁴⁷

1859년 이탈리아 전쟁에서 교황령 군이 패배하고 볼로냐는 로마나 지방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도입되었으며, 1859년 11월 신임 루이지 카를로 파리니 총독은 종교 재판을 폐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모르타라를 강제로 납치하도록 했던 볼로냐

43 Green 2005, pp.654-656.

44 Green 2005, p.655.

45 Kertzer 1998, pp.163-167.

46 Kertzer 1998, pp.168-170.

47 Green 2005, p.656.

종교재판관 피에르 펠러티 신부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⁴⁸

에드가르도 모르타라는 1873년 당시 21세 프랑스에서 가톨릭 신부로 서품되었으며, 그의 대부인 교황 비오 9세와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했다.⁴⁹ 그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 유럽의 각국을 순회하면서 설교했으며, 히브리어를 포함 6개 언어에 능통한 인기 있는 설교자였다. 그는 벨기에 리에주 부하이Bouhay에서 1940년 3월 11일 8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⁵⁰ 그의 아버지 모몰로 모르타라 Momolo Mortara는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켰으나 그의 어머니 미리안나 Marianna는 그의 영향으로 가톨릭으로 개종했다.⁵¹

에드가르도 모르타라 사건은 유럽 유대인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시켰으며, 프랑스 유대공동체의 대표적인 유대인 인권운동 단체인 세계이스라엘연합 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⁵² 그리고 당시 영국 유대인 평의회 총재였던 몬테피오리 역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르타라를 부모에게 되돌리려는 노력을 경주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유럽 각국에서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각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그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5. 몬테피오리 활동의 초^超종파성

1840년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반유대주의의 환경에도

48 Kertzer 1998, pp. 240-242.

49 Green 2005, p.656.

50 Kertzer 1998, pp.295-298.

51 Green 2005, p.656.

52 Kertzer 1998, p.250.

불구하고 몬테피오리의 인권운동과 자선활동은 분명히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경계를 넘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큰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⁵³ 그의 인권운동과 자선활동, 그리고 팔레스타인 성지 방문은 유럽 주요 언론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보도되었다.⁵⁴

특히 그의 100세 생일 축하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에 대한 타종교 지도자들의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 1883년 10월 몬테피오리 100세 생일 기념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램스게이트Ramsgate에서 회의가 열렸다. 연사에는 램스게이트의 가톨릭 교구장, 지역 가톨릭의 지도자, 성공회 성직자 4명이 포함되었다. 위원회에 참여할 의향을 표시한 인사로는 램스게이트 시장, 그렌빌Grenville 경, 버데트-코츠Burdett-Coutts 남작, 시드니Sydney 경, 샤프츠버리Shaftesbury 경, 에라스무스 윌슨Erasmus Wilson 경, 캔트Kent 하원의원, 캔터버리Canterbury 및 윈저Windsor 학장, 런던 시장 당선자, 그리고 캔터베리, 도버, 마게이트 시장이다.⁵⁵

연사로 베드포드의 주교 샤프츠버리 경, 프리맨틀Freemantle의 맨닝Manning 추기경, 허만 아들러Herman Adler 랍비, 존 러복John Lubbock 경, 뱅크스Banks 목사, 나다나엘 로스차일드Nathaniel de Rothschild 경, 아더 코헨Arthur Cohen 등이 나섰다, 영국 유대공동체 지도자들은 물론 영국 정계, 관계 지도자,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 등 종교와 정치 이념을 초월한 국민적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타임즈> 등 영국 언론도 몬테피오리의 99세, 그리고 100세 생일에 관심을 보이고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⁵⁶

해외에서도 몬테피오리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의 10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축사를 보낸 사람들 중에는 칠레의 프리메이슨과 웨스

53 Green 2005, p.638.

54 Green 2005, p.656.

55 Green 2005, p.639.

56 Lipman and Lipman 1985, pp.362-368.

트버지니아의 아일랜드 가톨릭 자선 연합과 같은 단체도 있었다. 그의 100세 생일 축하 행사에 대한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이었다. 유대계 신문 〈유대인 크로니클〉은 물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신문들, 심지어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던 〈노보예 렘자Novoje Wremja〉조차도 몬테피오리의 100세 생일을 장문의 기사에서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차이퉁Zeitung〉, 〈나치오날 차이퉁Nationalzeitung〉 및 〈타그블라트Tagblatt〉 등 해외 언론은 모두 그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⁵⁷

몬테피오리는 그의 활발한 인권운동과 자선활동으로 비유대인 세계에서 상당한 수준의 주목을 받았다.⁵⁸ 1840년 다마스쿠스와 모르타라 사건 등 그의 인권운동이 해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다. 1840년대 러시아, 1860년대와 1870년대 루마니아의 유대인 박해는 해외 언론에서 주요 기사로 보도되었다. 이는 그의 대對 언론 홍보 활동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몬테피오리는 〈타임즈〉에 수시로 서신을 보냈고 서신은 〈타임즈〉에 게재되었으며, 하원의원으로 서 그가 보내는 보도 자료, 그가 후원하는 기금 모금 호소 등으로 그는 언론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가졌다.⁵⁹

IV. 결론

유럽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유대민족

57 Green 2005, pp.639-640.

58 *Jewish Chronicle*, November 14, 1884, p.9.

59 Green 2005, pp.639-640.

의 회복과 해방의 메시아사상은 서구의 해방사상과 합리주의의 충격 하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유대 민중들 사이에 이 메시아사상이 살아 있었다. 1840년대에 유대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메시아의 해^{messianic year}가 도래했다는 소문이 발칸반도와 동유럽에 넓게 퍼졌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사실로 믿었고 정신적인 동요 상태에서 이것을 기다렸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메시아적인 기대가 전통적, 기적적 메시아주의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몬테피오리에 의해서 의식 살인 혐의를 받은 다마스쿠스 유대인들이 구출되는 사건이 메시아적인 기대와 연결되면서 일어났다. 유대 민족의 기적적인 구속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다마스쿠스 유대인 구출 사건이 메시아 구원 과정의 한 모델이라고 추론했다. 몬테피오리의 다마스쿠스 유대인 구출 사건은 이러한 전통적인 유대인의 메시아사상과 결합하여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시온주의 운동의 발화점이 되었다.

몬테피오리의 초종파적 인기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첫째, 그의 나이이다. 19세기에 100세까지 사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의 99세와 100세 생일이 많은 주목을 받은 이유이다. 둘째, 몬테피오리는 중동지역에 유럽, 특히 영국 문명의 전달자로서 기능했다. 중동지역을 빈번하게 방문했던 그는 서양식 복장으로 중동지역의 전통적인 복장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셋째, 그는 유대교인으로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성지 이스라엘을 일곱 차례나 방문했다. 그와 동행한 언론은 그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과 초막절을 성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재현시켜 주었다. 이러한 그의 성지 팔레스타인의 강조는 종교개혁 이후 구약 성경과 히브리어 연구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개신교 교회에 신앙적 상상력과 함께 유대교라는 종교를 초월하여 큰 호소력을 보유

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기독교 시온주의의 흐름을 형성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몬테피오리의 인권운동과 자선활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독실한 정통파 유대교인으로서 그는 중동지역과 유럽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시민권과 핍박받는 유대인을 구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말년에는 유대민족 공동체에서 민족적 영웅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의 핍박받는 유대인 구출 활동은 유대민족의 회복과 고향 땅 팔레스타인에 귀환할 것을 꿈꾸던 유대인들에게 현실적인 시온주의 운동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랍비 유다 알칼라이(Rabbi Judah Alkalai, 1798-1878) 등 시온주의 선구자들은 이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시온주의 실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둘째, 몬테피오리는 유대인인 동시에 영국 시민권을 보유한 대영제국의 시민으로서 영국이 지배하던 중동지역에서 영국 정부, 특히 영국 외교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인권운동과 자선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영국 외무부와 의 긴밀한 관계는 그의 해외 활동에 큰 도움이 된 동시에 영국적인 가치와 문명을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다. 그는 종교적, 민족적으로 정체성이 강한 유대인인 동시에 전형적인 빅토리아 시대 영국 시민이었다. 그러나 몬테피오리는 인권운동과 자선활동 과정에서 빅토리아 시대 영국과 19세기 유대인의 민족적 경계를 초월했다. 그의 활동은 유럽과 미국 언론에 중요한 기사로 보도되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의 세계적 네트워크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그의 개인적인 부^富와 재정적인 능력은 로스차일드 가문에 비

해 미약했으나,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경제와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유대인 디아스포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참고문헌〉

- 맥스 디몬트(김재신 역). 1994. 『유대민족사』.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Bartal, Israel [Ed.]. 1987. *The Age of Moses Montefiore*. Jerusalem: Misgav Yerushalayim.
- Bimbaum, David. 2012. *Jews, Church & Civilization*. Vol. V: 1822 CE-1919 CE. New Paradigm Matrix.
- Frankel, Jonathan. 1997a. *The Damascus Affair: 'Ritual Murder', Politics, and the Jews in 184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Frankel, Jonathan. 1997b. "Ritual Murder' in the Modern Era: The Damascus Affair of 1840." *Jewish Social Studies*, 3(2): 1-16.
- Goodman, Paul. 1925. *Moses Montefiore*.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 Green, Abigail. 2010. *Moses Montefiore: Jewish Liberator, Imperial Hero*.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 Abigail. 2005. "Rethinking Sir Moses Montefiore: Religion, Nationhood, and International Philanthrop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0(3): 631-658.
- Hyamson, Albert M. 1945-1951. "The Damascus Affair - 1840." *Transactions* (Jewish Historical Society of England), 16: 47-71.
- Jacobs, Joseph and John Forsyth. 1902. "The Damascus Affair of 1840 and the Jews of America."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Jewish Historical Society*, 10: 119-128.
- Jerusalem Post*. 2018. "Colonel Charles Henry Churchill's letter to Sir Moses Montefiore, a first in supporting a Jewish state in Palestine." 26 June 2018.
- Kertzer, David I. 1998. *The Kidnapping of Edgardo Mortara*. New York: Vintage Books.
- Kertzer, David I. 2005. "Mortara Affair". In Levy, Richard S. (ed.). *Antisemitism: A Historical Encyclopedia of Prejudice and Persecution*.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pp. 470-471.
- Levinsohn, Isaac Baer. 1841. *Éfés dammim: a series of conversations at Jerusalem between a patriarch of the Greek Church and a chief rabbi of the Jews, concerning the malicious charge against the Jews of using Christian blood*. London: Longman, Brown, Green, and Longmans.
- Lipman, Sonia and Vivian D. Lipman, [Eds.]. 1985. *The Century of Moses Montefiore*. Oxford: The Littman Library of Jewish Civilization.
- Lipman, Vivian David. 2007a. "Montefiore, Sir Moses." *Encyclopaedia Judaica*. Ed. Michael Berenbaum and Fred Skolnik. Vol. 14.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p.457.
- Lipman, Vivian David. 2007b. "Montefiore, Judith." *Encyclopaedia Judaica*. Ed. Michael Berenbaum and Fred Skolnik. Vol. 14.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p.456.
- Loewe, Louis. [Ed.]. 1983. *Diaries of Sir Moses and Lady Montefiore, I*. London: The Jewish Historical Society of England.
- Oller, Jan P. 2009. *Gods, Guns, & Fear*. Bloomington: Author House.
- The London Gazette* No. 19558. 14 November 1837. p.2922.
- Raphael, Chaim. 1984. "The Phenomenal Life of Sir Moses Montefiore." *Commentary*, 77(4): 51-54.
- Sapir, Saul. 1996. "From Canterbury to Jerusalem: New Disclosures about the English Windmill in Jerusalem." *Cathedra*, 81: 35-60.

Jewish International Networks and Diaspora Jewry: A Case Study of Montefiore, a 19th-Century British Jew

Young Chol Choe

University College, Sungkyunkwan University

◇◇◇◇◇◇◇◇◇◇◇◇◇◇◇◇ Abstract ◇◇◇◇◇◇◇◇◇◇◇◇◇◇◇◇

Moses Haim Montefiore (1784-1885) was a representative leader of the Jewish community in England in the 19th century.

Montefiore was a pioneer of the Zionist movement 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ed greatly to promoting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cross religions and races. He tried to save Christians and Muslims in the Middle East when they were in trouble due to persecution, and he carried out charitable work for the poor, transcending religions such as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This paper examines Montefiore's activities to rescue persecuted Jews, his interfaith philanthropy, and his international philanthropic and human rights activism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his activities and the transnational Jewish networks.

미국의 이민정책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우평균*

[국문 요약]

본 요약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이민정책을 개관하고, 트럼프 제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혼란스럽고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실제로 이민정책을 둘러싼 담론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이민자 유입에 대한 접근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 내 이민 논쟁은 이민 확대를 수용하는 확대론자들과 이민 확대를 반대하는 제한론자들로 대별된다. 이민 확장을 주장하는 세력은 비즈니스, 노동, 시민권·인종·종교·친이민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민을 제한하자는 입장은 원주민 및 반이민 단체, 공화당의 하위 그룹, 특정 노동 단체 및 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러시아국립 모스크바대학교 정치학과에서 2년간 수학 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단독 저서로는 『조선 노동당의 당원통제』(2020)가 있으며 공동 저서로는 『유라시아와 유럽: 경쟁·협력·갈등』(2023),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2023), 『엘리트로 보는 유라시아의 변화 I』(2023)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 우크라이나와 체코에서의 영향력 공작 비교 연구”, “북러 신조약의 특성과 북러 관계의 성격: 대피동맹이론의 적용”, “6.25전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러시아의 역할과 예외주의적 강대국주의”, “Russia’s Abduction of Children in Ukraine War and Applicability of UN Genocide Convention”, “North Korea’s System Transition: Conditions, Possibilities, and Countermeasures”, “Commonalities and Implications of the Ukrainian War and the 6.25 Korean War”, “The Causes of the Ukraine War and Russia’s Decision to inv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ggression in Afghanistan” 등이 있다.

수 미국 대중이 지지하고 있다. 이민자 유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더 이상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민 유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데에서 이민정책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 집행과 경제적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이민정책은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주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적어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 더욱 성공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합법적인 이민 경로 확대와 함께 지역 사회에 대한 연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이 다양성, 혁신 및 기회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로서 계속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어: 미국 이민정책, 트럼프 행정부, 합법 이민, 서류 미비 이민자, 이민 행정명령

목 차

- I. 서론
- II. 미국의 이민정책 개요
 - 1. 이민정책 역사
 - 2. 이민정책 최근 현황
- III. 미국 이민정책의 논쟁과 이슈
 - 1. 이민정책의 주요 논쟁
 - 2. 불법이민 증가와 국경안보 문제
- IV.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
 - 1.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 2. 정치적 논란과 전망
- V.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과 동시에 1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이민정책(immigrant policy)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민 정책은 단순하게 미국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민정책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지를 확보했던 만큼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외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기존 바이든(Joe Biden) 정부의 이민정책의 골자를 변화시키는 많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과거에 미국의 이민정책은 이민자들뿐 아니라 유학생, 숙련 노동자 및 단기 거주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미국에 큰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를 받았다.¹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실효성 있는 이민법 제도를 개발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한계도 노정시켜 왔기 때문에 이민 국가로서 미국이 구축해 온 명성과 성과가 훼손될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고 있다.²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의 이민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합법적 이민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노동시장의 요구에 보다 정확하게 대응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한다. 둘째, 고용주와 직원이 해당 법률 시스템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미국 국경을 보호

1 우평균 2008, pp.3-33.

2 Bush, McLarty, Alden 2009, pp.5-25.

하며,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처벌을 부과하는 집행 체제를 통해 이민법의 무결성을 회복해야 한다.³ 셋째,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약 1,100만 명 이상의 불법이민자 중 다수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인도적이며 질서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개혁의 필요성은 미국의 이민제도와 법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와 다양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불법체류자에 해당되는 ‘서류 미비 이민자(L undocumented immigrants)’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을 포함한 마지막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은 1986년에 통과되었다. 2001년 처음 제안된 아동 시절 미국으로 데려온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법안이 이들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의미 있는 개혁은 부분적으로 의회의 미합의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은 종종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행정부에 따라 변경되는 행정 조치에 의존하게 되었다.⁴

그 결과, 미국의 이민정책은 혼란스럽고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실제로 이민정책을 둘러싼 담론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이민자 유입에 대한 접근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 정치에서 이민자를 수단으로 불안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정치 전략이 영향력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인 상당수가 미국으로의 이민이 감소하기를 원하고 있다.⁵

3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Immigration, 2007.

4 Carasik 2025.

5 Lichtenheld, Chaudhuri, and Lupieri 2024.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내용에 입각하여 미국의 이민정책을 개관하고,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이민정책을 개관하기 위해 19세기 이후 이민정책 역사와 최근 이민정책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제3장 제1절에서 미국 이민정책의 논쟁과 이슈에 관해 기술할 것이며, 제2절에서는 불법이민 증가와 국경안보 문제를 기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민정책의 변화가 야기하는 정치적 논란과 전망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미국의 이민정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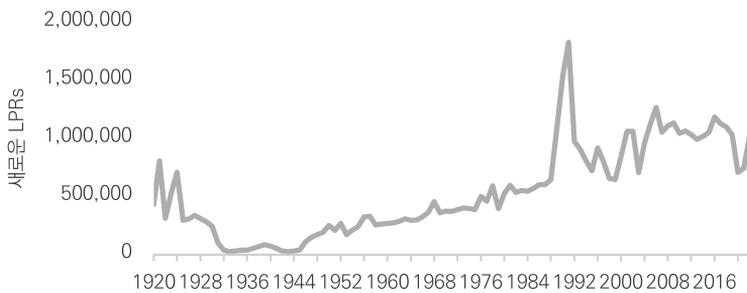
1. 이민정책 역사

미국 이민사를 이주민의 숫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대체로 ① 미국 이민사의 초기부터 1921년까지 이민의 문호가 열려있던 시기, ② 1921년부터 새로운 이민법이 만들어진 1965년까지 미국으로의 대량 이민이 제한되었던 시기, ③ 196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민의 문호가 다시 개방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으로의 대량 이민이 본격화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1921년 이민법의 개정으로 이민의 문호가 좁아지기까지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때까지의 이민은 주

로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대중을 이루었는데, 대규모 이민이 본격화되기 이전 즉 1820년 이전 영국계 이민을 중심으로 하여 탄생한 신생국 미국은 이때 이미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종교적으로는 개신교 Protestantism를 근간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고 있었다.⁶

〈그림 1〉 미국의 합법영구거주자 추이, 1920~2023년



출처: U.S Department of Homeland(2024).

19세기에 확대된 이민의 물결은 20세기 초반에도 그대로 이어져 미국 정부가 이민을 제한하는 쪽으로 선화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1900~1920년 사이에 약 340만 명의 이태리인들이 미국으로 왔으며, 1880~1910년 사이에 뉴욕시의 유대인 인구는 8만 명에서 125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태리인의 5/6는 이태리 남부의 빈농출신들로서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들이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대체로 동유럽과 러시아 출신들이었기에 미국의 개신교 문화와는 매우 이질적인 정통유대교를 신봉하며 히브리어의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새로운 이민자 그룹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이질성은 이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공황의 조짐이 보이자 이민을 제한하

6 King 2000, pp.121-127.

기 위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⁷

1921년 제정된 이민법은 1910년 현재의 미국 인구통계에 나타난 출신 국가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이민의 숫자를 국가별로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러한 쿼터제는 미국에 이미 이민을 많이 온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유럽의 동남부 이민의 숫자를 제한하고, 그 대신 서·북부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국가는 별도로 취급되어 이민을 제한하였다. 1924년에는 이민의 숫자를 할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인구통계를 1890년 것으로 변경하고 할당 비율은 3%에서 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럽 동남부 이민의 문호를 더욱 좁게 만드는 쪽으로 이민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그 결과 1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의 숫자는 1921년에는 357,803명이었던 것이 164,667명으로 줄었고, 유럽·서북부로부터의 이민 할당량과 동남부로부터의 이민 할당량은 8:2가 되었다.⁸

미국의 이민제도는 공민권운동이 확산되었던 1960년대에 큰 변화를 겪었다. 그 이전까지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던 국가별 쿼터제도를 통해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1965년 이민귀화법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제정에 의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즉 그간의 차별적인 국가별 쿼터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가에 이민 문호를 개방하되 다만 한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의 숫자를 2만 명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민비자 발급의 상한선을 설정하되 가까운 친척에 대한 초청이민과 난민의 수용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는 가족주의에 우호적인 쿼터를 도입하였는데, 사실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대부

7 Warde 2024, pp.96-143.

8 Warde 2024, pp.143-176.

분의 비자가 가족들의 초청 등을 근거로 발급되었기에 이 제도는 현실을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5년 새 이민법에 명시된 이민 비자 발급의 우선순위는 ①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의 성인자녀 20%, ②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의 성인자녀 20%, ③ 미국 노동부가 인정하는 전문직 종사자, 과학자, 탁월한 예술가 10%, ④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들 10%, ⑤ 미국 시민권자의 21세가 넘는 형제·자매, ⑥ 미국 노동부가 미국사회에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숙련 및 비숙련 근로자 10%, ⑦ 공산권의 난민 또는 중동으로부터의 난민 6%, ⑧ 기타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의 자녀들은 이민비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의 이민은 국가별 제한선인 2만 명을 상회할 수 있도록 했다.⁹ 1965년 제정된 새 이민법은 미국 이민의 숫자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이민의 원천이 유럽에서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으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⁰

1986년 미국 의회는 300만에서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민 개혁 및 통제법 IRCA: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을 승인했다. 이 정책은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공식적으로 의무화하고 서류 미비 이민자를 고의로 고용하는 관행을 불법화하지만 행정부의 처벌 집행은 느슨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이 법은 1982년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특정 계절노동자와 불법이민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IRCA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1982년 이전에 도착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1988년 5월 이전에 영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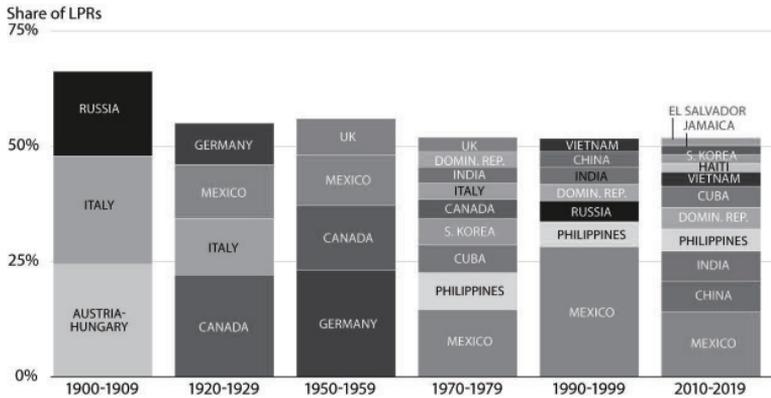
9 Daniels 1990, p.342.

10 1965년의 법은 이민의 숫자를 연간 29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가족 결합의 예외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합법적 이민의 숫자는 1970년대에는 연간 약 45만 명, 그리고 1980년대에는 8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1980년대에만 약 860만 명의 이민이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1980년대 합법적 이민의 4/5는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었다 (Mills 1994, pp.14-17).

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이며, 이 조치는 결국 300만 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으며, 그중 230만 명이 멕시코인이었다. IRCA가 통과된 후에도 불법이민은 계속 유입되었다.¹¹

〈그림 2〉 이민자 출신 국가, 1900~2019년

매 10년마다 전체 이민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민자 출신 상위 국가



출처: U.S Department of Homeland(2024).

1990년 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은 합법적인 이민 경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1965년 법을 확대하여 부여되는 전체 이민 비자 수를 늘리는 이민법에 서명을 하였다. 그 결과 이산가족 기반 이민은 여전히 우대 범주이지만, 고숙련 및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에 제도 우선권이 확대되었다. 이 법은 대학 교육을 받은 외국인을 위한 임시 H1B 비자뿐만 아니라 5가지 범주의 고용 기반 EB 비자를 만들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에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이 법은 또한 비자 발급에서 소외된 국가(미국으로의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비자를 분배하기 위해 다양성 비자복권 Diversity Visa Lottery을 만들

11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5.

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연간 발급되는 이민 비자의 수는 50만 개에서 70만 개로 급증했다.¹²

1994년 빌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는 멕시코에서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샌디에이고San Diego와 티후아나Tijuana 사이의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게이트키퍼 작전Operation gatekeeper’을 시작했다. 클린턴은 남서부 국경을 따라 국경 순찰대 요원의 수를 두 배로 늘리고, 14마일의 사막과 산에 울타리를 건설하기 위해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하였다. 이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이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선언하였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국경의 ‘군사화militarization’라고 비난하였다. 인권 단체들은 이 사건을 이후 15년 동안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Arizona의 더 위험한 동부 지역을 횡단하려던 5,000명 이상의 죽음과 연관 지었다.¹³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는 쿠바에 대한 소련의 경제 지원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1990년대 초에 미국으로 도망친 쿠바인의 수가 급증했다. 1994년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쿠바Cuba에서 불법 선박을 타고 출항 시 미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탈출을 허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쿠바 양국은 1994년과 1995년에 이민 협정에 서명하였고, 이 협정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신뢰할 수 없는 망명 신청 없이 바다에서 가로막힌 쿠바 이민자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허용되었다. 이 정책은 1999년 5살의 엘리안 곤잘레스Elian Gonzalez의 사례에서 두드러졌는데, 곤잘레스는 어머니와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사망한 후 연안 해역에서 발견되었다. 마이애미Miami에 있는 곤

1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5.

13 Nevins 2010, pp.76-92.

잘레스의 친척들은 곤잘레스의 양육권을 거부당했고, 곤잘레스는 쿠바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졌다.¹⁴

2001년 약 2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성년자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드림DREAM법안 도입, 2008년 지역 법 집행기관이 이민 및 세관 집행국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 도입 등의 조치가 있었다. 2010년에는 주 차원의 이민에 대한 행동주의State Activism가 본격 표출되기 시작했는데¹⁵ 애리조나 주지사 켄 브루어Jan Brewer가 연방정부에 대항하면서 서류 미비 이민자를 고용, 수용 또는 이동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제한적인 이민법 SB107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법 집행기관이 일상적인 정차 중에 사람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종 프로파일링 racial profiling 증가에 대한 민권운동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법안은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최소 7개 주가 SB1070의 자체 버전을 추진하려고 시도하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민 문제에 대한 연방 관할권을 이유로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대법원에 회부되었다. 대법원은 2012년 조항은 지지하되 몇 가지 핵심 조치들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¹⁶

2017년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시리아 난민을 무기한 금지하며, 난민 수

14 Senauthe 2006, pp.3-80

15 미국은 주마다 불법이민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를 포함한 일부 주들에서는 서류 미비 이민자가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고, 대학에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받고,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정반대 경향을 보여주는 주들에는 텍사스(Texas)와 같은 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이 연방 이민 담당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PDF)을 주의회가 통과시켰다. 바이든 집권기 그렉 애보트(Greg Abbot) 텍사스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텍사스-멕시코 국경에서 더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Roy, Klobucista, and Cheatham 2024).

16 Farina 2018, pp.75-103.

용 상한선을 5만 명으로 줄이는 테러 방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이란Iran, 이라크Iraq, 리비아Libya, 소말리아Somalia, 수단Sudan, 예멘Yemeni 국민의 미국 여행을 90일 동안 금지시켰다. 2017년 2월 연방 판사는 이 금지령에 대해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두 차례 개정했고, 2017년 6월 대법원은 세 번째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¹⁷

20세기 후반 들어 다시 급증한 미국 이민의 행렬은 이처럼 미국 내 인종 지도의 틀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총인구 증가에도 기여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내 인종 구성의 변화는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낳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문제 제기과 논쟁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에 대한 보완책보다는 주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과 대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이민정책을 개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1980년대 이후 남미 이민자들, 특히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정책 노선 차이,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이견 표출,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소송이 빈발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개혁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 이민정책의 효과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2. 이민정책 최근 현황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민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오랫동안

17 Davis and Shear 2019, pp.23-57.

동안 계속된 데에는 뿌리 깊은 이유가 있다. 마지막 포괄적 이민 개혁은 앞서 언급했듯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중에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연방 공무원들과 그러한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는 데 관심 있는 공무원들 사이의 대타협 *grand bargain*을 의미했다. 이 법안은 전자는 달성했지만 후자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 법안을 “사면 법안 *amnesty bill*”이라고 비난했다.¹⁸

이 같은 과정은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후 20년간의 노력에 영향을 미쳤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두 번의 시도는 좌파와 우파 모두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포괄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인 2013년으로, ‘8인의 갱 *Gang of Eight*’이라고 불리는 초당적 상원의원들이 남부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고 고용주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한편, 미국에 거주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법안에 합의했을 때였다. 이 제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68 대 32로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하원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존 보너 *John Boehner* 당시 하원의장이 표결에 부치기를 거부했고,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¹⁹

그 후 10년 동안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미 있는 이민 개혁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꾸준히 낮아졌다. 2016년 불법이민 반대 캠페인으로 대통령 당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18 NPR Staff 2010.

19 Weissert and Licon 2023.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하지만 필요하다고 옹호했고 민주당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폭발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 공중 보건 조치를 취해 남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사람들을 봉쇄했다. 행정부의 마지막 해 동안, 불법 월경 이주민은 458,000명으로 감소하여 월평균 40,000명 미만이 되었다.²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많은 민주당원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바이든이 취임 이후 트럼프의 조치들을 대체한 그의 이민정책들은 남부 국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남서부 국경에서 이주한 이민자는 2021 회계연도에 170만 명, 2022 회계연도에 240만 명, 2023 회계연도에 250만 명으로 증가했다.또한 2023 회계연도에 약 600,000명이 국경 수비대를 만나 지 않고 발각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됨. 2024 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동안 총 785천 건의 이동이 발생하여 미국은 2024년 한 해에 310만 건의 이동을 기록했다.²¹

남부 국경을 관리하는 임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불법 국경 통과자의 성격과 출처에 대한 역사적인 변화였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남부 국경 횡단자의 대부분은 노동 연령대의 젊은 멕시코 남성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중앙아메리카와 그 밖의 지역에서 온 가족들로 이민자 구성이 옮겨갔고, 이들은 출신국에서 “박해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reasonable fear of persecution}”을 주장하며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²²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들은 가난, 경제적 이동성 부족, 범죄, 정치적 혼란 등을 피해 도망쳐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망명 허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망명 신

20 Galston 2024.

21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4.

22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2024.

청을 사례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난민 신청을 심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010년대 이후 매년 해결되는 이민 사건의 비율은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계류 중인 사건은 2013년 약 400,000건에서 2023년 말까지 310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장기간 구금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들 대부분은 재판 날짜가 먼 미래에 맞춰져 미국에서 풀려났는데, 비평가들은 이 정책을 “잡아서 풀어준다(catch and release)”고 비난했다.²³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쿠바, 아이티(Haiti), 니카라과(Nicaragua), 베네수엘라(Venezuela)에서 온 최대 30,000명의 개인이 매달 최대 30,000명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최대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가석방(parole)” 권한의 사용을 극적으로 확대했다. 당국은 가석방 수혜자가 해당 국가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민국 직원은 언제든지 가석방 상태를 취소할 수 있다. 공화당이 이끄는 20개 주 연합은 바이든 행정부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민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공격했다.

공화당 소속인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지사들이 이끄는 바이든의 접근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민주당이 통제하는 대도시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24년 1월 초, 텍사스(Texas)와 루이지애나(Louisiana) 주 등에서 이민자들을 태운 버스를 뉴욕과 시카고 등으로 내보내는 ‘난민 밀어내기’를 시도했다. 결국 이 도시들의 비용이 늘어나자 민주당 시장들이 백악관에

23 Galston 2024.

구제를 요청하였다.²⁴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자신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가을까지 민주당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심지어 부모가 유아 시절에 미국으로 데려와 다른 나라를 모르는 “드림러(Dreamers)”조차도 신분을 합법화하는 조항 없이 국경 안보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법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었다. 상원 팀은 그러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실질적, 정치적 이유로 공화당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²⁵

우선, 많은 공화당원들은 대통령이 국경 폐쇄를 포함해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고 믿으며, 상원의 법안이 행정 권한을 강화하기보다는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2023년 초 하원이 통과시킨 국경 안보 법안을 이용하였다. 그들의 벤치마킹(benchmarking)으로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석방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망명 신청 근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트럼프 시대의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을 복원하고,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망명과 국경 폐쇄에 대한 상원의 타협안은 일을 완수하지 못할 소극적인 어중간한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다.

24 Scripps News Group 2024.

25 ‘드림러’는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다. 그들은 자라서 대부분의 삶을 미국에서 살았고, 많은 드림러들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고등 교육 학위를 취득하고 일하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가정을 꾸렸다. 대부분의 드림러들에게 미국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고향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드림러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없다. 다만 DAK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통해 특정 드림러에게 노동 허가 및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DACA에 등록하기 위해서 드림러는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2007년 6월 15일 이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연령, 교육, 이민 신분 및 범죄 행위 없음과 관련된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혜자는 2년마다 갱신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535,030명의 드림러가 DAC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제정된 드림법(Dream Act of 2023, S. 365)은 18세 미만으로 미국에 입국한 드림러에게 조건부 영주권(CPR)을 부여하고 있다 (National Immigration Forum 2024).

바이든은 처음에는 행정명령과 조치를 통해 트럼프 시대의 강화된 국경 정책 중 일부를 후퇴시켰지만, 트럼프의 반이민 발언이 여론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자 강화 쪽으로 돌아섰고, 2024년 봄 강화된 국경 법안을 지지했다. 바이든은 또한 이민 교도소를 확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2024년 6월 명령을 통해 국경 통과를 축소했으며, 이산가족 문제를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통제는 계속되는 등 추방 기구를 강화했다.²⁶

임기 초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게 이민정책은 특히 차별화의 핵심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정책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임기를 마감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취소하려 했지만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부 주정부들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봉착했다. 또한 집권 민주당이 의회 과반을 점하지 못하여 의회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노정했다.

III. 미국 이민정책의 논쟁과 이슈

1. 이민정책의 주요 논쟁

1980년대 이래 이민 급증의 주원인인 미주와 아시아에서의 이민자 대거 유입은 미주 지역에서 멕시코로부터의 유입이 갑자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멕시코의 비중은 1980년대에 전체 이민자의

26 Figueroa 2024

16%를 차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그 비중이 증가해서 18%를 차지했다. 불법체류자의 비중도 멕시코가 제일 많으며, 이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Florida, 일리노이Illinois 주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²⁷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슈는 미국으로의 이민 유입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이다. 미국 이민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쟁 차원에서는 ‘확대론자expansionist’ 대 ‘제한론자restrictionist’ 간의 대립으로 묘사된다. 이민 확장을 주장하는 세력은 비즈니스, 노동, 시민권·인종·종교·친이민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민을 제한하자는 입장은 원주민 및 반이민 단체, 공화당의 하위 그룹, 특정 노동 단체 및 다수 미국 대중이 지지하고 있다.²⁸ 이민자 유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더 이상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민 유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이민자들은 기존 미국인들에 비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상존한다. 이민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밖에, 최근 들어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민 제한론자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제도에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민 제한주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했던 탠튼John Tanton과 메이Cordelia Scaife May 같은 사람

27 U.S.Census Bureau 2000, pp.5-6.

28 Brown 2024, pp.236-256.

들은 미국이 인구 증가와 기타 환경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신규 이민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²⁹ 공화당원들 대부분 70%과 일부 민주당원들 18%은 미국에 들어오는 많은 이민자와 난민이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수의 민주당원 71%과 무소속 지지자 53%를 포함한 미국인의 절반 정도 53%는 이민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찬성한다.³⁰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간의 이민 문제에 대한 분열이 커지는 만큼 정치적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같은 당내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 간에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이민의 증가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정적,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민자들의 증가가 특히 저학력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5년간 미국의 소득분포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일반적인 임금은 상당히 느리게 상승하였고,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노동인구 중 13%를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28%가 고졸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8년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³¹ <표 1>은 이민 제한론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확대론자들의 반박을 요약하고 있다.

29 Feliz 2019.

30 Kafura and Sullivan 2022.

31 Nowrasteh 2021.

〈표 1〉 미국 제한론자들과 확대론자들의 논쟁

쟁점 입장	제한론	확대론
직업, 임금	이민자들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민자들 중 소수만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대부분 임금이 인상되고 있다.
합법 이민	일반적으로 합법이민이 쉬운 방법인데 왜 불법을 선택하는가?	합법이민은 너무 어려움(2017년에 약 2,300만 명 중에 5만 명만이 그린카드를 받았음). 이민법은 복잡 성면에서 소득세법에 이어 두 번째임
복지	이민자들이 복지제도를 남용한다.	이민자들은 미국 원주민보다 복지를 훨씬 덜 사용한다.
예산, 정부 부채	이민은 예산 부담과 정부 부채를 증대시킨다.	미국의 이민자들은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혜택으로 소모되는 세금만큼 납부한다.
경제적 불평등	이민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이민이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발견하기도 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발견하기도 함. 생활 수준은 소득 분배보다 훨씬 더 중요함
동화 assimiation	오늘날 이민자들은 이전 시대의 이민자들처럼 동화되지 않는다	멕시코인을 포함한 미국 이민자들은 100년 전부터 유럽에서 온 이민자 그룹과 마찬가지로 동화되거나 더 잘 적응하고 있다.
범죄	이민자들은 범죄의 주요 온상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는 미국 원주민보다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체포될 가능성이 낮다.
테러리즘	오늘날 이민자들은 테러리즘 때문에 특별한 위협에 처해 있다.	1975년부터 2017년 말까지 미국 땅에서 외국 태생의 사람이 저지른 테러 공격으로 인해 매년 살해될 확률은 약 380만 분의 1이었다.
이민정책의 개방성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갖고 있다.	미국으로의 연간 이민자 유입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보다 낮다.
사면 및 이민법 집행 실패	사면 및 이민법 집행 실패는 미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미국의 현행 이민법은 법치주의의 모든 주요 요소를 위반한다. 본질적으로 변덕스럽고 미국의 전통에 반하는 법을 집행하는 것은 안정적인 법치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주권	불법이민 또는 합법이민 확대는 미국의 국가 주권을 파괴한다.	이민정책이 다르다고 해서 미국 정부의 주권 방어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	이민자들은 공화당에 투표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가 대표적 사례	공화당의 이민정책은 이민자들을 밀어냈지만, 그 반대는 아니었다.
문화, 제도	이민자는 나쁜 문화와 사고를 유입하여 미국의 경제 및 정치 제도를 약화시키고 파괴한다.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미국의 부를 파괴한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 정치, 문화 제도를 약화시키거나 약화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스마트 smart 이민자	미국으로 향하는 엘리트들의 두뇌 유출은 다른 나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숙련된 엘리트들이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면 목적지 국가의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민자들이 부유해지며, 남겨진 사람들을 돕거나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회적 혼합성	이민자들은 혼잡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해치며 비인간적인 요소를 몰고 온다.	이민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저주가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축복이다.

출처: Nowrasteh (2020).

〈표 1〉에 따르면 이민정책과 이민자들이 미국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민에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지만, 그중 많은 내용이 사람들과 문화에 따라 다소 모호성을 갖고 있는 ‘공정성(fairness)’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감정(feel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통 사실에 대한 오해도 작용한다.³²

종합적으로 볼 때 이민자들의 유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국립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유입은 미국 경제에 100억 달러의 순혜택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입은 미국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측에서는 국립학술원의 추정만 단지 이민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그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와의 차이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민자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술들과 더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기능에서 비롯되는 이득 및 이민자들에 의해 창업되는 신규 기업들을 통한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³³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민자들이 경제 성장,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사한 특성을 가진 토착민보다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다. 포춘(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약 절반이 이민자 또는 그 자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기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민자들은 연방 혜택에서 받는 것보다

32 Pimentel 2024.

33 Duleep and Dowhan 2008, pp.31-50.

연방 소득 및 급여세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 공공재정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이민은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가 수요 변화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³⁴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통해 이민의 장기적 보상을 누리는 동안에 주와 지역 사회는 새로운 이민자를 흡수해야 하는 즉각적인 재정적, 문화적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는 지역 수준에서 이민에 대한 저항을 낳는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인 비용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기능을 주와 지방 자치 단체로 이전하여 지역 사회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³⁵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제2기 행정부는 서류 미비 이민자의 대량 추방,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입국 제한, 멕시코 체류 프로그램 복원, 국경 장벽 확장, 노동자 비자 축소 등을 옹호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에 의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을 때 16세 미만인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로서 추방으로부터 보호 받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노동 허가를 제공하는 DACA 보호 폐지를 추진하려 한다. 피터슨 연구소 [The Peterson Institute](#)에 따르면, 트럼프의 조치는 GDP 성장률을 낮출 것이며,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노동 공급을 축소하여 인플레이션 [inflation](#) 압력을 초래할 것이며, 트럼프 두 번째 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매년 수 퍼센트 포인트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³⁶ 반면 합법적 이민을 확대하면 토착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핵심 부문의 노동력 부

34 Macis 2024.

35 Song 2017, pp.3-50.

36 Bhatt, Noland and McKibbin 2024.

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³⁷

미국 이민정책에 있어 합법 이민 증대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양 측의 상반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 즉, 미국이 이민 및 난민 정책을 통해 증진하고자 하는 이익과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의 증대가 합의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고려가 독립적인 정책 과정으로 “주류화 mainstreamed”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그 정책들은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주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적어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 더욱 성공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³⁸

2. 불법이민 증가와 국경안보 문제

이민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 중에 논쟁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불법 체류자의 증가에 대한 것이다. 불법체류자의 유입 및 증가가 미국사회와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과연 이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에 대해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인구의 2/3가 이민자의 수를 줄이고 싶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하지만 역시 동일한 비율의 미국인들이 합법적인 이민은 바람직하며 가족들은 자신의 친척들을 초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존재를

37 경제학자 지오반니 페리(Giovanni Peri)와 알레산드로 카이우미(Alessandro Caiumi)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은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교육 수준이 낮은 미국 태생 노동자의 임금이 1.7%에서 2% 인상되었으며, 대학 교육을 받은 내국인들의 고용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eri and Caiumi 2024, pp.1-64).

38 Kerwin and Warren 2017.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이들이 없이는 미국의 중산층의 일상생활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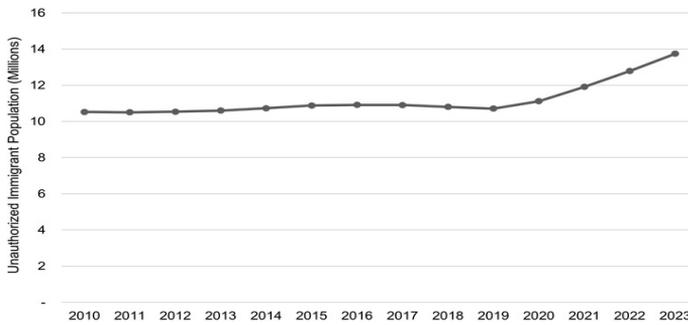
불법체류자의 존재는 고용주들에게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불법체류자들 개인에게는 비록 저임금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본국에서 올릴수 있는 수입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미국 정부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불법체류자들의 유입을 막는데 사용하고 있지만, 막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느슨한 법 집행은 기업인들이나 여타 이민자 유입을 선호하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압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³⁹

기존의 이민제도를 개선하고 노동력의 필요성을 감안해 이민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의 이민정책이 이제는 이민 가족을 재회시키는 것보다는 필요한 노동력의 정도에 따라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다시 말해 이민 관련 정책과 접근법에 있어서 취업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민정책이 원칙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가족을 중점을 두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제안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과 미국의 미래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전담기구’^{Independent Task Force on Immigration and America's Future}의 공동의장들은 1,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없다고 보면서, 이 과정은 합법적 거주자인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부

39 Passel and Krogstad 2024.

모들을 분리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들의 불법행동을 사면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과거에 미 의회가 특정 단체들을 사면해 줬을 때 불법이민이 크게 늘어났다고 근거를 대기도 한다.⁴⁰

〈그림 3〉 2010~23년 미국 불법이민자 인구 규모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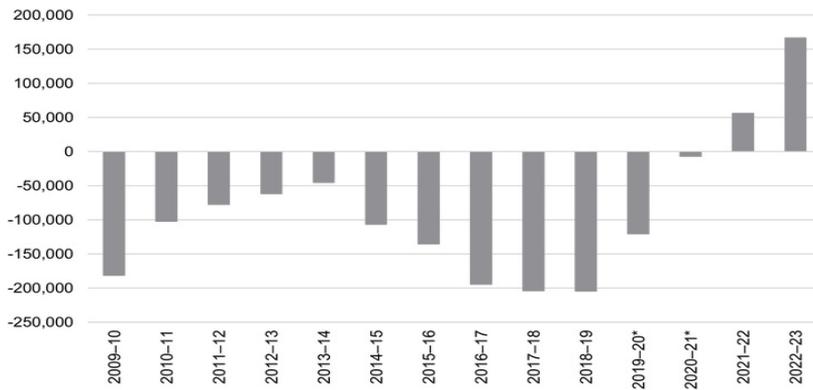
출처: Van Hook, Soto, and Gelatt(2025).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처하는 정치권의 반응으로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700마일에 걸친 담장을 설치하는 조치와 같은 강경책과 더불어 불법이민자들의 한시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초청노동자제도(guest-worker programme)와 같은 유화적인 조치도 함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초청노동자제도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적으로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서는 영구적인 거주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농업지역에서 수확기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농장주들 및 기업주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민정책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의원들 중에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속적

40 The Heritage Foundation 2020.

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유화적인 이민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기존의 가장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화당 측에서는 주요 지지층 중 산업계에서는 초청노동자제도를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보수층은 국경에 담장을 설치하고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원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에 공화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확고하게 당의 입장을 정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당의 입장보다 의원들 개인이 지역구의 이해에 따라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나타난다.⁴¹

〈그림 4〉 2010~23년 멕시코에서 온 미국 불법이민자 인구 규모의 연간 변화



출처: Van Hook, Soto, and Gelatt(2025).

2020년대에 들어와서 불법체류 인구가 약 1,100만 명에 달하게 된 데에는 진입이 출구에 의해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

41 Gimpel and Edwards 1998, pp.13-25.

국의 이민정책연구소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의 10년 동안 약 590만 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거나 비자를 초과하여 체류한 반면 570만 명의 불법이민자가 사망하거나 드물게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해당 기간 20만 명의 순증가에 그쳤다고 추정했다.⁴² 그러나 2021년경부터 미국경제가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에서 세계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되고 미국의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민 역할이 큰 폭으로 변화했다. 동시에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제적 혼란과 치안 불안, 카리브해 Caribbean sea의 갱단 폭력 사태,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억압이 가중되면서 새로운 난민이 생겨났고, 일부는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의 이민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유입 증가에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민 법원 소송의 적체,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불충분한 능력, 전반적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망명 신청자와 기타 이민자들이 장기간의 법원 심리를 기다리며 미국에서 풀려났다. 그 밖에, 이민자들은 인도주의적 가석방 경로를 통해 다수 입국했다. 2023년 초 바이든 행정부는 두 가지 새로운 인도주의적 가석방 절차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미국 스폰서가 있는 쿠바인, 아이타인, 니카라과인, 베네수엘라인이 자비로 미국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과 이민자들이 입국 지점에서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CBP One 앱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부분 2021년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가석방자들과 Uniting for Ukraine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과 같은 가석방자들은 1년에서 2년의 노동 허가과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았다. 이들 가석방자들은 불법이민 추정치에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신분이 일시적이고 재량에 의한 것이며 영주권에 대한 안내 경로를

42 Van Hook, Soto, and Gelatt 2025.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이민 당국이 가석방 신분 취소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메모를 발표하여 수혜자를 추방 대상으로 만들었다.

〈표 2〉 2010~2023년 미국 불법이민자 인구의 상위 10개 출신 국가

	2010년		2023년	
	숫자(명)	총 불법이민자 중 비율	숫자(명)	총 불법이민자 중 비율
합계	10,521,000	100%	13,738,000	100%
멕시코	6,564,000	62%	5,530,000	40%
과테말라	506,000	5%	1,402,000	10%
온두라스	338,000	3%	1,098,000	8%
엘살바도르	592,000	6%	1,078,000	8%
베네수엘라	37,000	0%	486,000	4%
콜롬비아	116,000	1%	351,000	3%
필리핀	189,000	2%	294,000	2%
브라질	137,000	1%	286,000	2%
에콰도르	179,000	2%	225,000	2%
인도	228,000	2%	199,000	1%

출처: Van Hook, Soto, and Gelatt(2025).

불법이민자의 출신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 이민 패턴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불법체류 인구의 출신국 구성이 재편되고 있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불법이민자 수는 170만 명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에서 온 이주에 의해 주도된 변화이다. 그에 더해 남아메리카로부터의 수는 729,000명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브라질로부터의 대규모 이주 때문이었다. 이러한 증가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96,000명이 증가한 멕시코의 불법체류 인구 순증가를 훨씬 앞질렀다.⁴³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멕시코의 단속 강화와 바이

43 Van Hook, Soto, and Gelatt 2025.

든 행정부의 일련의 망명 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 - 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주민 도착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중반 이후 불법이민자 인구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지의 여부는 새로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동에 달려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미국 - 멕시코 국경에 대한 이주자들의 접근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IV.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

1.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민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2025년 1월 취임 첫 주에 “이민에 관한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선거 운동 기간 중 공약한 대규모 추방과 국경 보안을 이행하기 위해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즉시 시행 가능한 것도 있지만, 법적인 다툼으로 진행될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기존의 이민정책, 즉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포함하는 내용과 더불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과거 정책 부활과 새로운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거 정책 부활

이민과 관련된 10개의 행정명령 중에는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부활시킨 것이 많다. 이 중 몇몇은 법정 소송 중이거나 전국적인 항의에 따라 철회되기도 했다. 그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하여 추가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필요에 따라 군대를 배치하기 위한 연방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대통령 권한을 발동했다. 비상사태 선포문에서 남부 국경을 넘어 유입된 불법 마약으로 인해 수 십만 명의 미국인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비극적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⁴ 트럼프는 2019년 국경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의회가 그의 노력을 좌절시킨 후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활용했다. 이 명령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 받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를 철회한 바 있으나 트럼프는 재취임 후 재차 시도하고 있다.

② 난민(refugee) 수용 중단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난민의 미국으로의 유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트럼프는 2017년 첫 취임 당시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the refugee resettlement program}을 처음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난민 입국 허용 인원을 지난 40년 이래로 가장 낮은 18,000명으로 제한했다. 2025년 1월 20일 난민 관련 행정명령 발표 이후 이미 미국 입국을 예약한 수천 명의 난민이 계획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난민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 주택 마련, 일자리 찾기 및 기타 필요 사항을 포함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

44 The White House 2025a.

했다.⁴⁵

③ 구금 및 석방 관행 중단(End “catch and release”)

행정명령은 일부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구금에서 풀려나는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한다.⁴⁶ 연방 공무원들은 수년 동안 수용 능력이나 건강 또는 인도주의적 우려로 인해 구금할 수 없는 특정 이민자들을 석방해 왔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구금 및 석방’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장기 구금을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과 법률, 가족 구금 공간 부족으로 인해 수만 명의 가족과 미동반 미성년자를 석방해야 했다.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발동 이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측에서는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들을 구금하고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민세관단속국으로 이송될 때까지 구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⁴⁷

④ 망명(asylum) 신청자의 멕시코에서의 미국 청문회 대기

대부분의 비멕시코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은 미국 이민법원 시스템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⁴⁸ 트럼프는 무단 국경 월경을 막기 위해 2019년에 이민 보호 프로토콜 Migration Protection Protocols로 알려진 정책을 처음으로 실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약 7만 명의 사람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냈다. 바이든은 처음 취임했을 때 이 정책이 위험하고 비인도적이라며 정책을 종료하려고 했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에 정책을 재개하라고 판결했고, 결국 판사의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뒤집

45 The White House 2025b.

46 The White House 2025c.

47 Rosenberg and Rreuzo 2025.

48 The White House 2025c.

힐 때까지 15,000명의 이민자가 프로그램에 더 배치되었다. 국토안보부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는 2025년 1월 25일 이 정책을 즉시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의 다른 명령으로 국경에서의 망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⑤ 제3국 망명 협정 third-country asylum agreements 촉진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와 합의하여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⁴⁹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와 망명 협력 협정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과테말라 정책만 시행되어 1년 동안 945명의 망명 신청자가 중미 국가로 이송되었다. 2기 트럼프 정부의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국무장관은 엘살바도르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중미 국가로 보내는 데 합의했다.

⑥ 일부 이민자들의 DNA 검사

일부 허가받지 않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특히 가족에 대한 유전자 [DAN](#)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⁵⁰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국토안보부에 이민자 가족의 DNA 샘플을 수집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구금 대상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에 DNA 검사 계약을 취소했다.

⑦ 추방 대상자 확대

이민자 체포의 초점을 안보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넘어 불법체류자까지 확대하고 있다.⁵¹ 바이든 행정부 당시 ICE는 이민자 체포를 불법적으로 국가, 국경보안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한 국가 내 사

49 The White House 2025c.

50 The White House 2025c.

51 The White House 2025d.

람들에게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건강, 군대 경력, 국가 내 체류 기간 또는 인도주의적 신청 대기 중 등 완화 요인이 있을 경우 집행 요원들은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대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5년 1월 21일 벤자민 허프먼 Benjamin Huffman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2011년부터 시행된 ICE 지침을 철회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병원,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체포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² 퀘이커 Quakers 교도들은 이 정책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⑧ 국토안보부 수사 부서의 이민 관련 업무 집중

국토안보부 수사 부서의 주요 임무는 인신매매, 마약 밀수, 아동 성학대 및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임무가 아닌 불법이민과 관련된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있다.⁵³ 트럼프 첫 임기 동안 수백 명의 요원을 일선 집행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이민자 체포 및 추방 지원에 예산을 조정할 바 있다.

⑨ 신속한 추방 절차 확대

2년 이상 국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신속한 추방 절차를 확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⁴ 2019년 트럼프는 ‘신속한 추방 expedited removal’으로 알려진 신속 추방 절차 fast-track deportation proceeding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이 정책이 국경에서

5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은 정책 중 하나는 이민 및 세관 집행 요원이 교회와 학교와 같이 이전에 보호되었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유권자의 35%만이 이 정책을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Gooding 2025).

53 The White House 2025d.

54 The White House 2025d.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들은 2년이라는 더 긴 기간이 아닌 14일 동안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다. 이민 옹호자들은 이 규정에 대해 이전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바이든이 이 정책을 뒤집으면서 사건이 격화되었다. 2025년 1월 24일 연방 등록부 고시 [Federal Register Notice](#)에 따라 정책이 시행되자 미국시민자유연합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및 기타 옹호 단체들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⁵⁵

⑩ ‘반항적인 국가들’^{recalcitrant countries}에 추방자들을 다시 데려가도록 압력을 가중시킴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 정부가 자국민의 추방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있다.⁵⁶ 미국은 수년 동안 베네수엘라 [Venezuela](#)와 쿠바 [Cuba](#)와 같은 ‘반항적인 국가들’을 추적해 왔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민 철수를 거부하여 추방 노력을 방해해 왔다. 트럼프 첫 정부 당시에 추방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캄보디아 [Cambodia](#), 에리트레아 [Eritrea](#), 기니 [Guinea](#), 시에라리온 [Sierra Leone](#)에 대해 비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콜롬비아 [Columbia](#) 대통령은 이민자 처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추방자를 태운 미군 비행기 두 대의 착륙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여 콜롬비아 대통령의 가족과 콜롬비아 공무원들에게 보복 관세와 비자 제한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보고타 [Bogota](#)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자 약속을 취소했다. 콜롬비아는 미국에 대항하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자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55 트럼프는 과거 1기 퇴임 당시보다 현재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무단 월경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국경에 ‘침공’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허가 없이 도착하는 이민자들에 대해 전례 없는 ‘입국 정지’를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입기 말에 시행한 망명 제한을 훨씬 뛰어넘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을 질서 있는 도착을 위해 입국항으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 접근법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한을 구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중단하려고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인도주의적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Chishti and Bush-Joseph 2025).

56 The White House 2025d.

공언했지만 곧 철회하고 항공편을 수락하기로 합의했다.⁵⁷

⑪ 이민자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무소 설립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에 대해 사람들이 정부에 알릴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자 한다.⁵⁸ 이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부에서 설립한 이민 범죄 피해자 조정 사무소 [Victims of Immigration Crime Engagement Office](#) 를 다시 설립하도록 했다. 반면 바이든은 사무소를 해체하고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참여 및 서비스 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이민 구금 시설 내 학대 신고와 범죄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이민 혜택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었다.

⑫ 임시 보호 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제한

행정명령은 일부 이민자들을 일시적으로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지위 [legal status](#) 는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limited in scope](#)” 고 언급하고 있다.⁵⁹ 트럼프는 첫 번째 행정부에서 엘살바도르 [El Salvador](#), 아이티 [Haiti](#), 온두라스 [Hondura](#), 네팔 [Nepal](#), 니카라과 [Nicaragua](#), 수단 [Sudan](#) 에서 온 약 40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법적으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하려고 했다. ALCU와 기타 인권옹호단체들은 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들 [Venezuelans](#) 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TPS를 확대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이 퇴임 전에 부여했던 3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추방 보호 조치를 취소했다.

⑬ 취업 허가(work permits)에 대한 조사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민법 [immigration law](#)’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57 Cano, Suarez and Miller 2025.

58 The White House 2025d.

59 The White House 2025d.

고용 허가가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가 않다.⁶⁰ 트럼프 시대의 다양한 규칙은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법원에서 소송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때로는 수년 동안 고용 허가에 접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여러 비영리 단체가 이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 연방 판사에 의해 취소되었다.

⑭ 대상 보호구역 관할권(target sanctuary jurisdiction)

이민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보호 관할 구역 [sanctuary jurisdiction](#)’이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민사 또는 형사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⁶¹ 이 조치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특정 지역에 대한 특정 법 집행 보조금을 중단하려는 유사한 시도보다 더욱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이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법무부 법 집행 보조금 [Department of Justice law enforcement grants](#) 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하고 보호구역법에 대해 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민 단속의 일부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관할권에 맞서 싸웠다. 2025년 1월 21일 미국 법무부는 법무부의 이민 단속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⑮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

법 집행 또는 이민 지위 확인 및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위해 국토안보부와 더 많은 정보가 공유하도록 보장한다.⁶² 국경에 도착하여 구금되는 비동반 이주 아동은 미국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미국

60 The White House 2025d.

61 The White House 2025d.

62 The White House 2025d.

내 후원자 **일반적으로 부모나 친척**에게 석방되어야 한다는 오랜 법적 합의가 있다. 트럼프 첫 임기에서 이들의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이 ICE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후원자의 가정 내 사람들의 자문 수집을 확대하여 불법 체포와 추방을 지원했다. 의회는 이 관행에 몇 가지 제한을 두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연방 당국의 구금에서 후원자에게 석방된 후 불법적으로, 때로는 위험한 직업에서 일하는 이주 아동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ICE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관계로 인해 비동반 아동에 대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⑯ 불법이민자에 대한 공적 혜택(public benefits) 거부

불법체류 이민자가 공적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⁶³ 트럼프 첫 행정부에서는 ‘공적 부담 **public charge**’이 될 수 있는 이민자는 입국 자격이 없으며, 그 신분을 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규정은 소송의 대상이 되어 법원에 의해 금지되었다.

⑰ 여행 금지(Travel bans)

해당 국가의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탐구 및 심사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식별하려고 한다.⁶⁴ 대통령 첫 재임 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과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무슬림 **Muslim**을 중심으로 한 5개국에서 온 거의 모든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전면적인 여행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 명령에 대해 법원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몇 차례의 수정 끝에 미국 대법원은 결국 세 번째 버전의 명령을 수용했다.

63 The White House 2025d.

64 The White House 2025e.

⑱ 미국 시민권자의 시민권 취소(Denaturalizing U.S. Citizens)

행정명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취소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려 한다.⁶⁵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법무부가 이러한 사건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많은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ACLU에 따르면, 이전 행정부에서는 종종 나치 및 기타 전범이 시민권 취소 대상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⑲ 공중 보건(health concerns) 문제에 근거한 추방(expulsion)

공중 보건 위협을 초래하는 이민자의 입국을 중단하거나 제한한다.⁶⁶ 2020년 3월 코비드 - 19 팬데믹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공중 보건 규칙인 Title 42를 시행하여 거의 모든 이민자들에게 망명을 신청할 기회를 주지 않고 멕시코로 신속하게 추방했다. 바이든이 이 정책을 종료할 때까지 2년 동안 계속되었다.

⑳ 국경에 군대 배치

국방부 장관에게 남부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재배치하는 임무를 맡긴다.⁶⁷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 재임 시절 그랬던 것처럼, 미국 - 멕시코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 과거에는 이민자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해 군사 기지도 사용되었다. 2025년 1월 이후 국방부는 국경 지역에 있는 2,500명의 현역 군인 외에도 1,500명의 현역 군인을 국경으로 추가 파견했다. 미군 항공기도 서류 미비 이민자를 국외로 출국시키기 시작했으며, 콜로라도

65 The White House 2025e.

66 The White House 2025d.

67 The White House 2025a.

Colorado에 있는 기지를 이용해 단속 작전 중 체포된 이민자를 처리할 예정이다.

㉑ 국경 장벽(border barriers) 건설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추가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주지사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령하고 있다.⁶⁸ 트럼프는 2017년 처음으로 국경 장벽 설치를 명령하고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군사 자금을 확보했다. 첫 임기 말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약 450마일을 건설했으며, 대부분 기존 구조물을 대체했다. 기존 국경 장벽은 대부분 1996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건설은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다.

㉒ 국경 장벽을 위한 토지 취득

법무장관이 국경 근처 또는 인근의 토지를 점유하여 장벽을 세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⁶⁹ 법무부는 트럼프 첫 임기 동안 국경 장벽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부지를 사용했다.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한 캠페인에 참여했고, 나중에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었다. 연방정부는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장벽 보호 법안 Secure Fence Act에 서명한 후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㉓ 불법 월경자들에 대한 형사 기소 강화

행정명령은 불법 입국 및 재입국에 대한 기소를 우선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⁷⁰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제프 세션스 Jeff Sessions 법무장관은 모든 국경을 넘는 사람

68 The White House 2025a.

69 The White House 2025c.

70 The White House 2025d.

들을 기소하는 무관용 zero-tolerance policy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가족과 분리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몇 년 후 헤어진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 task force를 구성했지만, 2025년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해산했다.

㉔ 구금 확대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구금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⁷¹ 트럼프는 첫 임기 초반에도 행정 조치를 통해 구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이 제한적이고 의회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그의 행정부는 새로운 시설을 개설했다. 또한 가족 구금을 확대한 오바마 정부에서도 구금이 확대되었다.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발표 이후 국방부가 군사 기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ICE는 10,000개 병상 규모의 새로운 시설 4곳과 700~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소규모 부지 14곳을 개방하여 구금 수용 능력을 두 배 이상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표하였다.⁷² 백악관은 또한 쿠바 관타나모 Guantanamo 만에서 심각한 범죄 배경을 가진 일부 불법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⁷³

㉕ 이민 집행을 위한 현지 협력

주 및 지방 법 집행 공무원이 국토안보부의 감독하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위 287(g)협력 협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⁷⁴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287(g) 협력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

71 The White House 2025d.

72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2025.

73 The White House 2025f.

74 The White House 2025d.

이들은 이 협정들 중 상당수를 유지했으며, 2024년 12월 현재 전국에 수십 개의 지역 법 집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비용을 많이 전가했으며 과거에는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이어졌으며, 경찰과 지역 사회 간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2025년 1월 20일의 명령에 따라 텍사스 법무장관은 행정부와 이민 단속을 돕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고, 그렉 애보트 ^{Gref Abbott} 주지사는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국경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 방위군 ^{State's National Guard}에 부여했다. 이로 인해 텍사스가 행정명령에 따라 다른 어떤 주보다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②6 이민 관리 인원 확대

행정명령은 ICE 및 국경 요원의 수를 늘릴 것을 약속하고 있다.⁷⁵ 트럼프는 첫 임기에서 15,000명의 국경 순찰 요원과 이민 담당관을 새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계획은 실패했다. 이전 행정부에서도 세관원과 국경 요원을 더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자격을 갖춘 인력을 찾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②7 입국 심사 강화

미국 입국을 원하는 모든 이민자를 “가능한 한 최대한 심사하고 선별할 것 ^{vetted and screened to the maximum degree possible}”을 약속하고 있다.⁷⁶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그는 또한 ‘극단적인 심사 ^{extreme vetting}’를 약속했고, 난민들이 오랫동안 가장 철저하게 심사된 입국자 범주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자와 난민으로부터 소셜 미디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민 옹호자들은 이러한 변화 중 일부가 난민 입국을 전면적으로 거부

75 The White House 2025d.

76 The White House 2025e.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 새로운 정책 추진

트럼프의 조치들 중 일부는 태생적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없애겠다는 그의 제안과 같이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다. 이 같은 정책이 만약 실행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할 것이다. 침공을 선언하는 명령대로 국경에 있는 이민자들이나 마약 카르텔 및 특정 다국적 갱단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령은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광범위한 합의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국경 상황을 “침략(invasion)”으로 정의

트럼프가 “침략”이 끝났다고 판단할 때까지 남부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중단한다. 최근 몇 년간 국경에서의 많은 체포로 인해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국경에서의 공중 보건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⁷⁷ 2025년 1월 23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침략 선언과 관련하여 각 주와 지방 정부에 이민 집행을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ACLU와 이민자 권리 옹호자 연합은 이 같은 선언이 미국 법을 위반하여 망명 접근을 차단한다고 주장하며 이 명령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② 국경보호를 군사적 우선순위로 삼음

국경을 봉쇄하고 “미국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미군의 임무라고 명시되어 있다.⁷⁸ 지금까지 이민은 군대의 핵심 임무의 일부가 아니었다.

77 The White House 2025g.

78 The White House 2025h.

③ 태생적(birthborn) 시민권 증식

미국 거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태생적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종료하려는 시도 혹은 임시 법적 지위에 국한하려는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에 대해 최소 20개의 민주당 주도 주와 이민자 권리 단체가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여러 소송을 제기한 후 두 명의 연방 판사가 즉시 명령을 차단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차 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⁷⁹ 주 법무장관과 이민자 권리 단체 연합은 태생적 시민권 관련 명령이 내려진 직후 그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④ 바이든 집권기의 국경 시대 인도주의 프로그램 폐지

일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프로그램을 종료한다.⁸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쿠바인, 니카라과인, 아이티인, 베네수엘라인은 해외에서 인도주의적 가석방 humanitarian parole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멕시코에서 대기 중인 이민자는 CBP One으로 알려진 휴대폰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망명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25년 1월 23일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시대 두 개의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CBP One 앱에서 국경에 접근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이민자들이 대거 입국을 취소했다.

⑤ 이민 등록(Immigration registration)

미국 내 모든 비시민권자가 등록하여 미국 정부에 지문을 제출하

79 The White House 2025i.

80 The White House 2025c.

거나 불이행 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다. 2025년 1월 21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민자를 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⁸¹

⑥ 이민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및 삭감

국경에서 석방된 이민자들에게 쉼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와 이민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한다.⁸²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수억 달러를 배정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관리들은 제공자들에게 법적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말했지만,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의회와 옹호자들의 반발로 방향을 바꿨다. 2025년 1월 법무부는 연방 자금을 받는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민자와의 법적 오리엔테이션 및 기타 프로그램 개최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는 구치소에서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서비스는 별도의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⑦ 국제 마약 카르텔, 갱단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마약 카르텔, 중앙아메리카 갱단 MS-13,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구아 [Tren de Aragua](#)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한다.⁸³ 또한 1798년 제정되어 2차 세계 대전 중 마지막으로 시행된 '적성국 국민법 [Alien Enemies Act, AEA](#)'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전

81 The White House 2025d.

82 The White House 2025d.

83 The White House 2025j.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체류 중인 TdA 갱단원을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AEA 적용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가능하다며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트럼프 정부는 추방을 강행했다(Rahman 2025).

문가들은 이 법이 미국 내 법적 지위가 있더라도 해당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 정치적 논란과 전망

트럼프의 이민 어젠다의 대부분은 망명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과 ‘멕시코 잔류’ 정책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와 같은 첫 번째 임기 때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대량 추방과 같은 새로운 조치와 법원에 계류 중인 생득권 시민권 취소 명령을 추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 멕시코 국경에 “침공”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이에 대처할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마지막으로 사용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고, 인도주의적 가석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민 집행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난민 재정착을 중단하며,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부모가 없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출생 시민권을 종료시키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지키기 위해 추방을 늘리고 군대를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정부에 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골드 카드 Gold Card”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를 원한다는 발언도 하였다. 이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⁸⁴ 이러한 조치들 중 다수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의 급격한 단절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백악관은 출범과 동시에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내용보다

84 Zirin 2025.

시각을 우선시하고, 이민자와 범죄에 대해 널리 퍼진 오해를 강화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비판자들은 이러한 단속의 상당 부분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2025년 2월 이민 및 세관 집행 당국은 전국에서 소위 범죄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체포된 사람은 약 3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민세관단속국 ICE 관계자들이 목표로 삼았다고 말한 트렌 데 아라구아 갱단원 100명보다 훨씬 적은 숫자이다. 크리스티 노엠 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가 쿠바 관타나모 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로 상습 범죄자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행정부는 나중에 관타나모로 보내진 이민자들의 약 30%가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저위협^{low threat}”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이전 행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작전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정부에서 당국이 과장된 선전과 홍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⁸⁵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민정책 집행에 따르는 법적 문제, 의회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주와 지방의 저항, 기업 이익의 반발, 다른 나라의 비협조 등 의제를 설정·집행하는 데 만만치 않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대중은 불법이민자^{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를 추방하고 국경 장벽을 완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목표 중 많은 부분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다수는 많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⁸⁶ 동시에 모든 서류 미비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과 관련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다.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의 현재 규모로 최종 추방을 받은 약 1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기에는 역부족인 측

85 Rose 2025.

86 Chishti and Bush-Joseph 2025.

면이 있다. ICE에는 약 6,000명의 ERO^{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경찰관이 있다. 따라서 ICE 단독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FBI, DEA, IRS 같은 다른 법 집행기관들을 포함하여 협력체제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⁸⁷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국경순찰대 CBP와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추가로 고용하여 인력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트럼프가 군대를 배치하는 데 있어 법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지역 경찰과 보안관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주 방위군을 사용하는 데에는 배치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서류 미비 이민자의 상당 부분이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 민주당 강세 지역의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 주에서는 주정부가 다른 주의 군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군 지도자들 역시 트럼프가 현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당성 제시 없이 미군에 이러한 국내 역할을 맡기는 데에 주저해 왔다.⁸⁸

트럼프의 이민정책의 핵심은 대대적인 추방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인데, 이는 연간 최대 1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이전에 추방된 최대 숫자의 두 배에 달한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놓았지만, 세부 계획은 불투명하다. 최근 국경을 넘은 사람들과 함께 불법체류 중인 1,100만 명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물류 및 재정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불법체류 인구를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대량 추방을 확대하는 정책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인 대다수가 수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 온 법을 준수하는 이민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얻을

87 The Associated Press, 2025.

88 익명의 한 전직 군 고위 관리자는 자신이 “게슈타포(Gestapo)”로 비춰지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Carasik 2025).

수 있는 길을 조건부로 지지하기 때문이다.⁸⁹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두 가지 주요 요인은 소송과 대중의 반발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한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수많은 정책들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몇몇 사례에서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2022년 대법원이 주정부의 소송 지위를 제한하고 하급 법원이 전국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선례를 남긴 후 소송대리인들은 변화된 연방 법원 환경에 직면해 있다.⁹⁰ 또한 행정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농업 및 서비스업과 같은 부문의 고용주들은 이미 대규모 집행 조치나 합법적인 이민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이민 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 국내 수준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 특히 남미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방은 자국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제한을 가하거나 아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반항적인 국가”의 경우 그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대안 국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트럼프는 추방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특히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이민 통제의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외부화(externalization)를 지원하기 위해 강압적 외교를 거래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원조를 중단하고, 파나마의 경우 운하를 장악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이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을 미국 이민 집행 시스템의 연장선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적, 외교적 규범을 뒤엎는 특단의 조

89 Carasik 2025.

90 Chishti and Bush-Joseph 2025.

치를 취했다.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차베스 로블레스Rodrigo Chaves Robles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지역 분쟁과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미국 이민자 항공편이 코스타리카에 착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⁹¹ 실제로, 멕시코로부터의 협력이 중요하며 2025년 2월 1일부터 본격화된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시대착오적 이기까지 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서의 신제국주의적 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가 행정명령을 통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정한 마약 카르텔을 쫓아 멕시코에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위협은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그의 권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 행정부는 의회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아 추방 노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백악관이 직면한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인 더 많은 요원을 고용하고 구금 능력을 늘리기 위해 자원을 늘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⁹² 트럼프의 정책 중 특히 이민세관단속국의 보호구역 진입 허용 또는 태생적 시민권 박탈 등 반대가 심한 정책은 집행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교 단체와 덴버의 공립학교들Denver Public Schools은 교회와 학교와 같은 민감한 장소와 그 주변에서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저지하지 않고 있다.⁹³ 이 기관의 지지자들은 그러한 장소에서 체포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그러한 장소 근처에서 체포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⁹⁴

태생적 시민권 박탈에 대해 다수의 법학자들은 헌법 수정인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 찬성과 주 의회의 4분의 3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것 이 그 보장을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반면, 소

91 Chishti and Bush-Joseph 2025.

92 Denean 2025.

93 Golden 2025.

94 Matusek 2025.

수의 사람들은 의회의 조치나 행정명령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4개의 법원이 이 명령을 막았다. 정부는 이 판결 중 두 건에 대해 항소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상정되면 대법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집권기 이민정책의 기초를 바꾸고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이민정책 노선으로 회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1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각 주 및 이민 옹호 단체와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저항에 직면하여 일부 조치들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며, 잇따른 소송 제기로 인해 정책 시행이 유예되는 등 부침을 거듭할 것이다. 이민정책을 놓고 미국 정치에서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뒷받침되는 포괄적인 이민정책 개혁 없이 행정적인 조치로 정책을 집행하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미국의 이민정책은 이민 확대와 제한 정책의 반복과정이었으며, 시대적으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에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민정책의 초기에는 유럽계 이민이 다수를 이루었고 미국 국내에서의 유색인종에 대한 배척을 반영하는 이민 대상에서의 배척 현상도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인종 및 민족의 유입을 금지하는 법안보다는 정원 규모를 두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변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의 고용 불안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기될 때마다

이민의 적절성 및 규모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이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안보, 인도주의적 관심사를 반영하면서 국내 정치 논쟁의 시금석이 되어 왔다. 미국 내 이민 논쟁은 이민 확대를 수용하는 확대론자들과 이민 확대를 반대하는 제한론자들로 대별된다. 이민 확장을 주장하는 세력은 비즈니스, 노동, 시민권·인종·종교·친이민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민을 제한하자는 입장은 원주민 및 반이민 단체, 공화당의 하위 그룹, 특정 노동 단체 및 다수 미국 대중이 지지하고 있다. 이민자 유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더 이상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민 유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민자들은 기존 미국인들에 비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상존한다. 이와 같이 양극화된 입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화되어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현실이 되었고, 미국 정부는 포괄적인 이민정책 개혁이 필요함에도 행정적인 조치로 정책 집행을 추진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의회 역시 포괄적인 이민 개혁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주요 정책 결정은 행정부와 사법부로 옮겨가고, 주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이민정책은 당파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국내 정책으로 이슈화되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분열과 같은 당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대립하는 중점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서류 미비 이민자 추방 문제, 망명과 국경 안보 정책에 대한 태도가 가장 대표적인 쟁점인데, 민주당원들은 더 관대한 접근법을 선

호하고 공화당원들은 더 엄격한 통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미국 이민 시스템이 집행과 경제적 기회의 균형을 더 잘 맞추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⁹⁵

도널드 트럼프 제1기 행정부는 망명, 국경, 추방 정책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국내 정책의 중심으로 삼았다. 반면에 그 뒤를 이어 집권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시의 정책을 뒤집고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코비드 팬데믹과 관련된 국경 제한이 종료되고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하면서 그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2025년 1월 집권한 트럼프 2기에는 과거 1기 집권 시 추진했던 정책들에 더해 전혀 새로운 정책까지 추진하고자 함으로써 변화의 폭이 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는 국경, 내륙, 추방 계획 전반에 걸쳐 퍼져 나가고 있으며,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인도주의적 우려보다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정책 개혁을 희생시키면서 국경 단속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대중의 불만을 조장하고, 불법이민뿐만 아니라 이민 전반에 대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미국 경제는 장기적인 번영에 필수적인 노동력 성장과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경 문제와 광범위한 경제적 필요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이 필요하지만, 여론의 양극화로 인해 이러한 개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 집행과 경제적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이민 제한론자와 확대론자 양측의 상반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민 시스

95 Macis 2024.

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데에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이 이민 및 난민정책을 통해 증진하고자 하는 이익과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의 증대와 더불어 이민과 난민에 대한 고려가 독립적인 정책 과정으로 주류화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결국, 앞서 밝혔듯이, 이민정책은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주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적어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 더욱 성공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합법적인 이민 경로 확대와 함께 지역 사회에 대한 연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이 다양성, 혁신 및 기회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로서 계속 변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우평균. 2008. “미국의 민족질서.” 백상재단. 『신세기의 민족질서와 한민족』. 서울: 백상재단.
-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2024. “Asylum in the United States.” January 15.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research/aylum-united-states> (검색일: 2025.3.15).
- Bhatt, Aniali V., Hogan, Megan, Noland, Markus and McKibbin, Warwick J. 2024. “Mass deportations would harm the US econom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eptember 26. <https://www.piie.comblogs> (검색일: 2025.3.15).
- Brown, Mary E. 1997. *Shapers of the Great Debate on Immigration: A Biographical Dictionary*. Santa barbara, CA.: Greenwood.
- Bush, Jeb, McLarty, Thomas F, Alden, Edward. 2009. *U.S. Immigration Policy.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63*. Washington D.C.: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 Cano, Regina Garcia, Suarez, Astrid, and Miller, Zake. 2025. “White House says Colombia agrees to take deported migrants after Trump tariff showdown.” AP News. January 27. <https://apnews.com/article/colombia-immigration-deportation-flights-petro-trump-us-67870e41556c5d8791d22ec6767049fd> (검색일: 2025.3.23).
- Carasik, Lauren. 2025. “Law, Politics Resisting Trump’s Immigration Machine.” *Boston Review*. January 24, <https://www.bostonreview.net/articles/resisting-trump-immigration-machine> (검색일: 2025.3.15).
- Chishti, Muzaffar and Bush-Joseph, Kathleen. 2025. “With ‘Shock and Awe,’ the Second Trump Term Opens with a Bid to Strongly Reshape Immigr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January 23.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trump-second-term-begins-immigration> (검색일: 2025.3.15).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5. “1952 – 2025 U.S. Postwar Immigration Policy.” <https://www.cfr.org/timeline/us-postwar-immigration-policy> (검색일: 2025.3.15).
- Daniels, Roger. 1990. *Coming to America: A History of Immigration and Ethnicity in American Life*. New York: Haper Collins, 1990.
- Davis, Julie Hirschfeld and Shear, Michael D. 2018. *Border Wars: Inside Trump’s Assault on Immigra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 Denean, Austin. 2025. “Trump’s immigration agenda gets broad support in boost to approval ratings.” *CBS Austin*. February 11. <https://cbsaustin.com/news/beyond-the-podium/president-donald-trumps-immigration-agenda-gets-broad-support-in-boost-to-approval-ratings-deportations-ice-migrants-asylum-southern-border-remain-in-mexico> (검색일: 2025.3.15).
- Duleep, Harriet Orcutt and Dowhan, Daniel J. 2008. “Research on Immigrant Earnings.” *Social Security Bulletin* 68 (1); 31-50.
- Farina, Maria Del Mar. 2018. *White Nativism, Ethnic Identity and US Immigration Policy Reforms: American Citizenship and Children in Mixed Status, Hispanic Famili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Feliz, Wendy. 2019. “Immigration Restrictionists ‘Hitting Their Stride Under Trump, But We Can Stop

- Them,” *Immigration Impact*. August 19. <https://immigrationimpact/2019/08/23> (검색일: 2025.3.18).
- Figueroa, Ariana. 2024. “Executive order limiting asylum at the U.S.-Mexico border signed by Biden.” *Nebraska Examiner*, June 4. <https://nebraskaexaminer.com/2024/06/04/executive-order-limiting-asylum-at-the-u-s-mexico-border-to-be-signed-by-biden> (검색일: 2025.3.22).
- Galston, William A. 2024. “The collapse of bipartisan immigration reform: A guide for the perplexed.” *Brookings Institute*. February 8.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collapse-of-bipartisan-immigration-reform-a-guide-for-the-perplexed> (검색일: 2025.3.15).
- Gimpel, James G. and Edwards Jr, James R. 1998. *Congressional Politics of Immigration Reform*. London: Longman.
- Golden, Hallie. 2025. “Denver Public Schools sues to stop Trump administration policy allowing ICE agents in schools.” *AP News*. February 13. <https://apnews.com/article/denver-public-schools-ice-immigration-lawsuit-d3baee5db9525ff56b7bc8f5c81117f> (검색일: 2025.3.22).
- Gooding, Dan. 2025. “Trump’s Early Immigration Crackdown Gets Mixed Reviews: Poll.” February 14. *Newsweek*. <https://www.newsweek.com/trump-immigration-policies-mixed-reaction-poll-2031525> (검색일: 2025.3.15).
- Kafura, Craig and Sullivan, Emily. 2022. “American Views of Immigration and Diversit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https://globalaffairs.org/research/public-opinion-survey> (검색일: 2025.3.18).
- Kerwin, Donald and Warren, Robert. 2017. “National Interests and Common Ground in the US Immigration Debate: How to legalize the US Immigration System and Permanently Reduce its Undocumented Population.”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https://cmsny.org/publications/jmh-sntinterests-commonground> (검색일: 2025.3.18).
- King, Desmond. 2000. *Making Americans: immigration, Race, and the origins of the diverse dem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ichtenheld, Adam, Chaudhuri, natalie and Lupieri, Sigrid. 2024. “Resistant to Reform-Improving U.S. Immigration Policy Through Data, Evidence, and Innovation.” Carnegie California. August 28. <http://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4/08> (검색일: 2025.3.15).
- Macis, Mario. 2024. “The immigration debate: policies and perceptions in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Johns Hopkins Carley Business School. November 1. <https://carey.jhu.edu/articles> (검색일: 2025.3.15).
- Matusek, Sarah. 2025. “Here’s how Trump has remade US immigration policy in just 1 month.” *Christian Science Monitor*. Feb. 20. <https://www.csmonitor.com/USA/politics/2025/0220/trump-immigration-action-military> (검색일: 2025.3.18).
- Mills, Nicolaus (eds.). 1994. *Arguing Immigration*. New York: Touchstone.
- National Immigration Forum. 2024. “Dreamers in the United States: An Overview of the Dreamer Community and Proposed Legislation.” October 23. <https://immigrationforum.org/article> (검색일: 2025.3.18).
- Nevens, Joseph. 2010. *Operation gatekeeper and Beyond: The War on “Illegals” and the Remaking of the U.S.-Mexico Boundar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Nowrasteh, Alex. 2021. “Immigration Restrictionists Are Undermining American Institutions.” CATO Institute. January 5. <https://www.cato.org/blog> (검색일: 2025.3.18).

- Nowrasteh, Alex. 2020. "The Most Common Arguments Against Immigration and Why They're Wrong." CATO Institute. January 5. <https://www.cato.org> (검색일: 2025.3.18).
- NPR Staff. 2010. "A Reagan Legacy: Amnesty For Illegal Immigrants." *NPR*. July 4. <https://www.npr.org/2010/07/04/128303672> (검색일: 2025.3.18).
- Passel, Jeffrey and Krogstad, Jens Manuel. 2024 "What we know about unauthorized immigrants living in the US." Pew Research Center. July 22.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4/-7/22> (검색일: 2025.3.18).
- Peri, Giovanni and Caiumi, Alessandro. 2024. *Immigration Effect on US Wages and Employment Perux*.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Pimentel, O. Ricardo. 2024. "No toughness on immigration without fairness." *Wisconsin Examiner*. August 26. <https://wisconsinexaminer.com/2024/08/26/no-toughness-on-immigration-without-fairness> (검색일: 2025.3.18).
- Rahman, Billal. 2025. "What Will happen to Deportees at El Salvador Prison?" *Newsweek*. March 17.
- Rose, Joel. 2025. "Critics fear that President Trump's immigration crackdown plays into misperceptions." *NPR*. February 26. <https://www.npr.org/2025/02/26/nx-s1-5294644/critics-fear-that-president-trumps-immigration-crackdown-plays-into-misperceptions> (검색일: 2025.3.15).
- Rosenberg, Mica and Rreuzo, Perla. 2025. "Four Years in a Day," ProPublica, Feb 7. <https://www.propublica.org/article/donald-trump-immigration-executive-orders> (검색일: 2025.3.15).
- Roy, Diana, Klobucista, Claire, and Cheatham, Amelia. 2024. "The U.S. Immigration Debat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August 7. <https://www.cfr.org/backgrounder/us-immigration-debate> (검색일: 2025.3.15).
- Scripps News Group. 2024. "Hundred of migrants bound for New York dropped off in New Jersey." January 3. <https://www.scrippsnews.com/politics> (검색일: 2025.3.21).
-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Immigration, 2007. Citizenship, Refugees, Border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The Role of Immigrants in the U.S. labor market." testimony by Peter R. Orszag, 110th cong. 1st sess. may 3.
- Senauth, Frank. 2006. *A Cry For Help: The fantastic Adventures of Elian Conzalez*. Victoria. Canada: Trafford.
- Song, Sarah. 2017. "Why Does the State have the Right to Control Immigration." *Nomos* 57: 3-50.
- The Associated Press. 2025. "Your immigration questions answered: What has changed under Trump, what hasn't and what's next." February 15. <https://apnews.com> (검색일: 2025.3.15).
- The Heritage Foundation. 2020. *20 Ways States Can Prevent Illegal Immigration*.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 The White House. 2025a.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claring-a-national-emergency-at-the-southern-border-of-the-united-states> (검색일: 2025.3.16).
- The White House. 2025b. "Realigning 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realigning-the-united-states-refugee-admissions-program> (검색일: 2025.3.16).
- The White House. 2025c. "Securing Our Borders."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securing-our-borders> (검색일: 2025.3.16).

- The White House. 2025d.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rotecting-the-american-people-against-invasion> (검색일: 2025.3.16).
- The White House. 2025e.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rotoecting-the-united-states-from-foreign-terrorists-and-other-national-security-and-public-safety-threats> (검색일: 2025.3.16).
- The White House. 2025f. “Expanding Migrant Opertions Center at naval Station Guantanamo Bay to Full Capacity.” January 2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expanding-migrant-opertions-center-at-naval-station-guantanamo-bay-to-full-capacity> (검색일: 2025.3.18).
- The White House. 2025g. “Gu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guaranteeing-the-states-protection-against-invasion> (검색일: 2025.3.18).
- The White House. 2025h. “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united States.”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clarifying-the-militarys-role-in-protecting-the-territorial-integrity-of-the-united-states> (검색일: 2025.3.18).
- The White House. 2025i.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5/01/protecting-the-meaning-and-value-of-american-citizenship> (검색일: 2025.3.18).
- The White House. 2025j. “Designating Cartels And Other Organization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signating-cartels-and-other-organizations-as-foreign-terrorist-organizations-and-specilly-designated-global-terrorists> (검색일: 2025.3.18).
- U.S.Census Bureau. 2000. *Overview of Race and Hispanic Origin 2000*. Census 2000 Brief.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4.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multiful fiscal years*.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4. “*Staling Stats Factsheet: Fiscal Year 2024 Ends with Nearly 3 Million Inadmissible Encounters, 10.8 million Total Encounters Since FY2021.*” October 24. <https://homeland.house.gov/2024/10/24> (검색일: 2025.3.18).
-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2025. “ICE expands detention capacity with Delaney Hall Facility in New Jersey.” February 26. <https://www.ice.gov/newsroom/releases/ice-expands-detention-capacity-with-delaney-hall-facility-in-newjersey> (검색일: 2025.3.18).
- Van Hook, Jennifer, Soto, Ariel G., Gelatt, Julia. 2025. “The Unauthorized immigrant Population Expands amid Record U.S.-Mexico Border Arrivals. Migration Policy Institute. February. <https://www.migrationpolicy.org/print/18112> (검색일: 2025.3.20).
- Warde, Bryan. 2024. *Inside U.S. Immigration Policy: The Historical and Social Forces Shaping Contemporary Debat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Weissert, Will and Licon, Adriana Gomez. 2023. “Immigration reform stalled decade after Gang of 8’s big push.” *AP News*. April 3. <https://apnews.com/article> (검색일: 2025.3.20).
- Zirin, James D. 2025. “Trump’s immigration policy: ‘Give me your oligarchs, your rich...’” *The Hill*. March 8, 2025. <https://www.yahoo.com/news/opinion-trump-immigration-policy-oligarchs-140000939.html> (검색일: 2025.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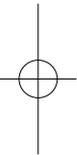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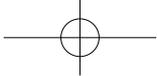
U.S. Immigration Policy and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Immigration Policies

Pyung Kyun Woo

Senior Fellow,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Abstract ◇◇◇◇◇◇◇◇◇◇

This paper outlines the immigratio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changes in immigration policy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U.S. immigration policy is often described as chaotic and resistant to reform. Indeed, the discourse surrounding immigration policy tends to intensify political polarization and has led to increasingly stringent access for immigrants crossing the southern U.S. border. The immigration debate in the United States is broadly divided into those who support immigration expansion and those who oppose it. The forces advocating for immigration expansion include business, labor, civil rights, racial, religious, and pro-immigration groups, while the position of restricting immigration is supported by native-born Americans, anti-immigrant groups, certain factions of the Republican Party, specific labor groups,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American public. Supporters of immigration



expansion emphasize that immigrants help sustain the U.S. economy by working in industries that Americans are increasingly unwilling to work in. Those who oppose immigration expansion typically argue that immigrants are taking jobs away from U.S. citizens. However,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the U.S. immigration system requires comprehensive reform. This reform should not merely consist of administrative action, but rather legislation that balances enforcement with economic opportunity. Both sides agree that immigration policy is most successful when it benefits the states sending immigrants or, at the very least, does not appear to discriminate. Such a policy could help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thrive as a nation built on diversity, innovation, and opportunity by strengthening federal support for communities and expanding legal immigration pathways.

Keywords: U.S. immigration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legal immigration, undocumented immigrants, immigration executive order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인도적 지원

김향은*

[국문 요약]

2023년에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해외입양인은 법적으로 재외동포에 속하고, 해외입양인 동포를 지원하고 이들의 정착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 가운데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국으로 귀환한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된 공적 기관을 통한 입양의 연도별 실태와 해외입양아의 국가별 배치 등 입양과 관련된 통계적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 사업과 재외동포청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향후 지원 과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 건강한 공동체의 구축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핵심어: 입양, 해외입양,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 지원

*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 폴브라이트 방문학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자문위원, 통일부 산하 부산하나센터 자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단독 저서로는 『예비 입양가족의 입양 현안과 심리적 불안』(2014), 『청소년 복지론』(2018),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Expectations of Adoption Practices and Parenthood in Korea(2014)가 있다. 공동 저서로는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정서기능을 키워주는 부모』(2003), 『가족 희생양이 된 자녀의 상담과 치료』(2008),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2008), 『현대 가족관계론』(2009), 『다문화 사회의 이해』(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011), 『진보의 다문화 읽기』(2011), 『인간발달의 쟁점』(2012), 『초점화된 가계도: 가족상담 현장에서의 적용』(2019)이 있으며 공동 번역서로는 『애착』(2023)이 있다. 논문으로는 “예비 입양가족의 입양 현안과 심리적 불안” 등이 있으며, 공동 논문으로 “Openness in Korean Adoption” 등이 있다.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해외입양 추이
- III.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지원의 현황
 - 1.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사업
 - 2. 재외동포청 지원 사업
- IV.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지원 과제
- V. 나가며

〈참고문헌〉

1. 들어가며

뉴욕타임스(NYT)는 최근의 보도 기사를 통해 한국을 세계 최대의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를 둔 나라라고 묘사한 바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1953년부터 해외입양을 시작해 부유한 나라가 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만 명에 가까운 아동을 해외로 보냈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¹

해외입양은 비극적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전쟁 고아와 혼혈아의 입양으로 시작된 해외입양이 1980년대에 세계 1위를 점한 데 이어 여전히 상위를 유지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한 입양아 송출국인 데는 빈곤, 인구 과잉, 복지 미비, 혈연 중시 등이 작용하고 있다.² 이 구도 속에서 원가족과 출생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사후지원의 강화가 요구돼 왔다.³

2023년에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해외입양인은 법적으로 재외동포에 속하고, 해외입양인 동포를 지원하고 정착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 가운데 하나다. 2023년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를 동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관장해 온 보건복지부와 함께 귀한 입양동포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적극 가담할 뜻을 표명하고 있다.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입양아동이란 보호

1 최영권 2023.

2 김혜경 외 2020, p.486; 이봉주 2004, p.64; 장윤수 2008, p.83.

3 최연혁 2023, p.131.

4 재외동포청 2025.

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은 보호대상 아동 가운데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2023년 현재까지 집계된 우리나라의 입양아동의 누계는 국내외 입양을 망라해 총 250,1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⁵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해외 입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따라 2007년부터는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앞질러 왔다. 그러나 입양기관을 통한 공식적 입양이 시작된 이래로 오랫동안 해마다 성사된 입양의 압도적 다수가 국외 입양이었고 그 누적 인원은 2023년 말 현재 168,506명에 달한다. 해외입양의 역사가 70년이 넘는 시점에서 이들을 동포로 인식함은 물론이고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강화가 촉구되고 있다.

해외입양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의 내용을 분석한 선행연구⁶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해외입양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지만 주로 정부의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외입양인의 입장에서 적용이나 활용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초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입양인 중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한국에 귀환하여 국내에 머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흔히 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언어적·문화적 적응, 사회적 고립, 경제적 문제에 더하여, 입양인으로서 느끼는 정체감의 혼란이나 해외입양인으로서 경험할 수

5 통계청 2025.

6 임영언·임재완 2012, p.77.

있는 모국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괴리 등 복합적 난관에 직면하기 쉽다. 이들 중에는 외부의 지원 없이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위기 또는 보호 대상자들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된 국가에서 한국으로 귀환한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외 입양의 통계적 추이와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을 위한 지원의 향후 과제와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고자 한다.

II. 해외입양 추이

2023년 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성사된 전체 입양의 누적 건수는 총 250,188건이다. 이 가운데 국내 입양은 81,682건으로 전체 입양의 약 1/3에 불과한 반면, 국외 입양은 168,506건으로 전체 입양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이후로는 정부의 해외입양 억제 정책으로 해마다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앞서고 있지만, 과거 해외 입양에 의존해 온 기간이 길었기에 여전히 전체 통계는 해외입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이루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단위: 명)

구분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50,188	238,105	2,464	1,880	922	1,172	1,057	880
국내	81,682 (32.6%)	74,409 (31.0%)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국외	168,506 (67.4%)	63,696 (69.0%)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863	681	704	492	415	324	229
국내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226 (54.5%)	182 (56.2%)	150 (65.5%)
국외	398 (46.1%)	303 (44.5%)	317 (45.0%)	232 (47.1%)	189 (45.5%)	142 (43.8)	79 (34.5%)

출처: 정민정, 2022. “추방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도개선-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입법현황과 대응방안,” 보호대상 입양인 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p.20에서 재인용. 통계청(2025).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지표누리 e-나라지표.

〈표 2〉 입양국가별 해외입양 현황(1958~2016년)(단위: 명)

연도	계	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1958 ~2009	151,290	109,072 (72.1%)	11,173 (7.4%)	9,381 (6.2%)	8,723 (5.8%)	6,335 (4.2%)	3,393 (2.2%)	2,248 (1.5%)	578 (0.4%)	387 (0.3%)
2010	1,013	775 (76.5%)	6 (0.6%)	74 (7.3%)	21 (2.1%)	43 (4.2%)	18 (1.8%)	60 (5.9%)	12 (1.2%)	4 (0.4%)
2011	916	707 (77.2%)	4 (0.4%)	60 (6.6%)	16 (1.7%)	33 (3.6%)	21 (2.3%)	54 (5.9%)	15 (1.6%)	6 (0.7%)
2012	755	592 (78.4%)	4 (0.5%)	49 (6.5%)	10 (1.3%)	26 (3.4%)	13 (1.7%)	45 (6.0%)	9 (1.2%)	7 (1.0%)
2013	236	181 (76.7%)	2 (0.8%)	19 (8.1%)	5 (2.1%)	7 (3.0%)	-	15 (6.3%)	3 (1.3%)	4 (1.7%)
2014	535	412 (77.0%)	4 (0.7%)	33 (6.2%)	7 (1.3%)	20 (3.8%)	7 (1.3%)	38 (7.1%)	9 (1.7%)	5 (0.9%)
2015	374	278 (74.3%)	-	36 (9.6%)	5 (1.3%)	10 (2.7%)	6 (1.6%)	22 (5.9%)	6 (1.6%)	11 (2.9%)
2016	334	222 (66.5%)	3 (0.9%)	31 (9.3%)	5 (1.5%)	23 (6.9%)	10 (3.0%)	23 (6.9%)	3 (0.9%)	14 (4.2%)
계	155,453	112,239 (72.2%)	11,196 (7.2%)	9,683 (6.2%)	8,792 (5.7%)	6,497 (4.2%)	3,468 (2.2%)	2,505 (1.6%)	635 (0.4%)	438 (0.3%)

출처: 보건복지부(2014). 국가별 국외입양 현황. 보건복지부(20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력 비준동의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p.10에서 재인용.

한편 해외입양의 국가별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북미와 중북부 유럽, 오세아니아 국가와 같이 이른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9개 백인계 국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58~2016년 사이에 이뤄진 해외입양의 경우 미국으로 입양된 경우가 72.2%로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그다음은 프랑스 7.2%, 스웨덴 6.2%, 덴마크 5.7%, 노르웨이 4.2%, 호주 2.2%, 캐나다 1.6%, 룩셈부르크 0.4%, 이탈리아 0.3% 순이었다(표 2) 참조.

III.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지원 현황

1.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사업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 2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아동복지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다. 2009년에 개설되어 정부의 입양 지원 사업을 담당해 온 중앙입양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입양과 관련된 사안뿐 아니라 아동권리 전반에 관한 정책과 시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평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아동정책 영향 평가,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활성화,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 사업

및 시설 운영 지원,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등이 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 사후관리 지원도 하고 있다. 지원 사업의 내용으로는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운영, 국내외 입양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입양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등이 있다. 한편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대상의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1)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을 위한 일반 지원 사업

아동권리보장원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의 영역과 내용은 크게 입양과 관련된 기록물의 통합적인 관리와 전산화의 구축, 입양정보 공개 및 가족찾기 등과 관련된 입양정보 탐색의 지원, 모국연수나 한국어교육 등 해외입양인을 위한 사후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분류된다, 각 범주별로 지원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입양 기록물 관리

입양 기록물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영구 보존
입양인의 입양배경, 친생부모 인적사항 등 입양기록물 수집 및 전산화

정부, 입양기관, 입양업무 수행 아동시설과 협력체계 구축

(2) 입양 정보 지원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체성 확립 지원

⁷ 아동권리보장원 2025.

입양정보공개 청구, 가족찾기 지원
언론·방송사 등을 통한 가족찾기 지원
친가족 상봉 및 서신교환 지원
해외 거주 무연고 입양인의 유전자 정보 등록 지원⁸

(3) 해외입양인 사후지원

모국 연수 지원
세종학당 연계 한국어교육 지원
해외입양인 대상 사후서비스 지원
해외입양인을 위한 국내 민간단체 지원

2) 국내 체류 보호대상 해외입양인을 위한 지원 사업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가운데 사회적 적응이나 경제적 자립 등의 문제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입양인이나 범죄 등에 연루돼 입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추방입양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통합서비스를 통해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호대상 해외입양인의 지원 배경, 목적, 원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

(1) 보호대상 해외입양인 지원의 배경, 목적, 원칙

① 배경

- 사업근거 **입양특례법 제1장 제3조 제4항 국가 등의 책무**, **입양특례법 제3장 제25조 사후서비스 제공**
- 입양인 사후서비스의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관심 증가
- 입양국의 국적 미취득 및 부적응 등으로 국내 입국한 국외 입양

8 안준한 2025, pp.3-12.

9 아동권리보장원·해외입양인연대 2022.

인 증가, 미국 입양의 경우 입양 후 별도로 시민권 취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13년까지는 IR-4비자로 출국 미국 내 체류 자격 불안인, 범죄에 연루될 경우 한국으로 추방 송환

② 목적

- 추방입양인의 삶의 위기 극복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 정착 도모
- 추방입양인의 주민등록 회복과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내 보호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 국내 거주 위기입양인의 위기 상황 완화 지원

※ 서비스 제공에 있어 추방입양인 주민등록 소지자를 위기입양인 F-4 소지자 보다 우선함

③ 기본원칙

- 국가 보장 급여 우선의 원칙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 복지 지원제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 보장 급여 지원이 먼저 행해져야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보호대상 입양인 통합서비스 사업 내 지원과 동시 수혜가 불가함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

- 자립지원의 원칙 자립을 위한 구직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하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중단 또는 서비스 제공 내용 변경 결정

- 개별성의 원칙 생계비 등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고려

(2) 지원 내용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보호대상자로 분류된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국내 정착과 자립, 자활을 돕기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보호대상 해외입양인의 위기 정도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실시를 기조로 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초생활을 위한 주거, 생계, 의료, 심리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보호대상 해외입양인을 위한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표 3〉 국내 체류 보호대상 해외입양인을 위한 지원 내용

구분	주요 지원
주거	(주거지) 보장원 명의 전·월세 입주, 월세·관리비 지원(최대 2년) (주거비) 전·월세 지원이 불가할 경우 고시원 주거비 제공 (공과금) 공공요금 지원(수도·전기·가스 포함) (기타) 초기 주거지 환경조성 지원(생필품, 가전 등)
생계비	(정착지원금) 초기 접수된 추방입양인 (지립지원금) 국내 거주 추방·위기입양인 (보조생계비) 국내 거주 추방·위기입양인 중 가족부양, 소득미비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 지원 건강검진 1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건강검진 활용 가능)
심리치료	종합심리검사(풀베터리 검사) 1회 지원 영어 심리상담 지원
한국어 교육	전문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
주민센터 업무	주민센터 업무 동행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생계·의료·주거)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기타 서비스 연계	(직업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계 기술교육, 직업교육 지원 (법률자문) 추방입양인 본국 귀환, 여권·비자 발급 등 법률 자문 기타 일시적 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심사 동일)
장려금	통합서비스 내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독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해외입양인연대(2022). 보호대상 입양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토론회.

2. 재외동포청 지원 사업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대변자 기능을 수행한다는 비전 아래 2023년 6월 창설됐다. 재외동포청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책목표는 재외동포의 의견 및 기본계획 수립,

10 아동권리보장원·해외입양인연대 2022.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구촌 한인 공동체 구축, 국력에 걸맞는 적극적인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제고,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은 종합적·구체적 지원 정책 수립, 재외동포의 성공적 국내 정착을 돕는 맞춤형 지원, 국내외 취약동포에 대한 지원, 역사적 특수동포, 원폭 피해동포 등 소외된 동포에 대한 지원, 위기에 처한 국내외 동포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한편 해외 입양인도 재외동포의 개념에 포함해 일반 재외동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적 지원뿐 아니라 입양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¹¹

1)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일반 지원 사업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일반적 지원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재외국민, 재외동포,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경우를 포함해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다. 센터 내 민원콜센터와 통합민원실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시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11 재외동포청 2025a, 2025b, 2025c.

(2)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① 본원

운영 장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운영 시간: 평일 09~18시

지원 사항:

발급 및 신고 지원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 해외이주·해외이주 포기·영주귀국 신고, 재외 국민 등록부등본 발급, 귀국신고, 해외소재 확인, 국외거주 보호대상자 지원서비스 등**

안내 및 상담 **국적 상실, 국적 회복, 재외동포사증: F-4, H-2 등, 국외 병역의무자 병역 이행, 가족관계등록 신고, 국세 및 관세·일자리 및 각종 취업 지원 제도, 국민연금 관련 상담 및 안내, 건강보험 관련 상담 및 안내,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상담 및 안내**

② 분원

운영 장소: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정부종합행정센터

운영 시간: 평일 09~18시

지원 사항:

발급 및 신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귀국 신고 등**

안내 및 상담 **국적, 동포사증, 출입국 등 법무, 병무, 가족관계, 국세, 관세, 보호, 고용, 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 등**

2) 국내 체류 입양동포를 위한 전담 지원 사업

(1) 입양동포 전담창구 운영

운영 장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

운영 시간: 평일 09~18시

지원 사항: 입양업무 종합상담,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

원, 해외입양인연대G.O.A.L. 등 입양인 정책 유관기관 업무 절차 및 각 기관 추진사업 안내, 입양 관련 문의 상담 및 회신, 기관별 재외동포청, 아동 권리보장원 공모사업 신청절차, 입양정보공개청구, 유전자 검사 및 가족 찾기, 사증 F-4, H-2 발급 상담 등, 민원문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상담 및 관련기관 연결 등 민원 지원, 입양동포 유관기관 간 연락, 입양 관련 조사, 연구보고서, 뉴스레터 작성 및 발간¹²

(2) 입양동포 지원체계 구축

①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국내 체류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해외입양인,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2025년 4월 29일](#)

② 입양동포의 실태 파악 및 욕구 분석

국내 체류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의 수요 파악을 위한 국내 체류 입양동포 실태 조사 [2025년 중 실행 계획](#)

IV.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지원 과제

첫째, 귀환 해외입양인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들은 다른 보호 대상자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입양과 관련된 정체성 혼란은 물론, 해외입양인으로서 입양국에서 직면했을 수 있는 소외, 차별, 배제의 경험, 이주자로서 겪는 언어적·문화적 충격과 부적응, 모국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와 갈등, 출생국과 입양국에서의 상실, 분리, 이탈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다층적으로 축

12 김채영 2025, pp.13-16.

적돼 있을 수 있다.¹³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한 만큼, 우선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해외입양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사업 계획 가운데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실태 조사가 포함 된 것은 바람직하나, 일회성 조사가 아닌 지속적 조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테이크 과정은 물론 지원 중과 지원 후에 이들의 문제와 욕구를 정밀 진단하는 검사, 조사, 상담을 강화해 이들의 필요에 바탕을 둔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정·보완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을 바탕으로 이들의 순조로운 장·단기적 적응과 안정된 정착을 돕는 단계와 절차, 추진 체계 및 전달 과정의 시스템 구축과 체계화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꾸준한 정비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즉,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으로부터, 초기 정착, 중·장기적 적응을 돕는 적절한 사후지원을 연결하는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매뉴얼화하고 프로토콜을 보다 정교화하며 지속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정부 부처 내의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완해 가야 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재외동포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등 정부 부처, 입양기관, 입양단체 등 민간기관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책임 구분,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시스템의 체계화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문제와 욕구에 기반한 지원의 개별

13 김재민 2016, p.313; 민은경 2021, p.27; Bartholet 1993.

화와 다양화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체류 입양인은 입양인으로서 당면하는 정체감 혼란의 문제를 비롯해 해외이주자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¹⁴ 이들의 정착을 돕는 지원은 입양과 관련된 지원, 문화적 적응과 관련된 지원, 자립을 돕는 지원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¹⁵

입양 지원은 출생기록 열람, 유전자 검사, 뿌리 찾기 등의 정보 지원과 입양 이슈와 관련된 심리·정서 문제의 진단과 상담을, 적응 지원은 한국어교육, 문화규범 안내, 생활정보 지원과 주민과의 교류 촉진을, 자립 지원은 진로탐색, 취업알선, 직업교육, 사회적 기업 등 자원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과 보호대상을 위한 생계, 주거, 의료 기초생활 보장 지원을 수준별로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자조집단, 차세대 대상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¹⁶

넷째,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을 위한 지원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이 일을 도맡아서 수행할 전담 인력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오늘날까지 해당 사업의 전문화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대한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조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의 한계로 인하여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¹⁷

초기 아동권리보장원이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했을 때는 물론, 최근 들어 해외입양인연대가 이 일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한정된 인원이 과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14 장윤수 2008, p.83.

15 김향은 2024, p.83.

16 Cho 2025, p.62; Kim 2025, pp.27-31.

17 김연수 2022, p.12.

이다.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국내 정착을 전담하는 행정 요원을 비롯하여 전문 상담가, 사례 관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격을 갖춘 이들을 양성, 선발, 재교육하며, 담당 인력의 소진 예방을 통한 후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지원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은 네트워킹이다.¹⁸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지원 사업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 동원 가능한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연계 없이는 입양 및 해외입양의 특수성과 복합적 이슈, 다중적 욕구를 지닌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관계기관이나 구성원 간의 유기적 연대 없이는 이들을 위한 성공적 정착 지원의 길은 요원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원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 실무 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입양인과 기관, 지역사회, 지역주민 간의 연결과 교류, 해외입양인 간의 상호 지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정책, 서울시 등 지자체의 이주민 정책 등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노력은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과 부처 간 공조 체계를 활성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해외입양인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출생 정보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를 정부가 일원화하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¹⁹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정착 과정과 지원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국내 정착과 지원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18 강광주 2022, p.52; 김호 2024, pp.37-39; 도규리 2025, pp.17-25.

19 소현숙 2023, p.10; 이주연 2023, p.22.

분석하고 더 나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도 요구된다. 경험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 지원에 대한 지원, 곧 ‘메타 지원’이 이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힘 있는 지지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 모델과 이를 지원하는 성공적인 지원 사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성공과 관련된 의미 있는 기여 요인이나 장·단기적 효과, 영향력, 시사점 등을 밝히고 확산적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성공 사례에만 주목하지 않고 실패 사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 원인과 결과를 꼼꼼히 분석, 검토하여 향후 개선과 보완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²⁰

일곱째,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해외입양인을 위한 지원은 일시적 체류 기간에 제공되는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일회성 서비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위험군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고도의 연속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떤 경우든지 서비스 대상이나 내용의 특성상 자칫 시혜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의 성격을 띠기 쉽고 그에 따른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바람직한 국내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주민 가운데 정착도우미를 선발·연결해 해외입양인의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제공한다면 쌍방향·호혜적 교류, 이해, 기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해외입양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장하는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모범적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 김향은 2025, p.57.

V. 나가며

한국은 2020년을 기준으로 여전히 해외입양아 수출국 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격상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도적 대우는 한참 뒤져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²¹ 해외입양아의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UN아동권리협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등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해외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오랫동안 민간 입양기관에 전적으로 맡겨져 왔다.²² 2009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이 출범한 이후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시작됐다.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에 연루돼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의 문제가 불거진 것을 기회로 위기입양인의 정신심리치료적 접근에 관한 연구²³를 지원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사례관리가 시작됐다.

2019년에 중앙입양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 후로는 관내 입양인지원센터 [현 입양사업본부](#)에서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총괄해 왔다. 추방입양인을 비롯해 한국사회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입양인을 대상으로 생계보호, 의료보장, 주거지원, 한국어교육,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후지원 서비스의 체계적인 틀을 정립해 왔다. 최근에는 이 사업을 해외입양인 단체인 [해외입양인연대G.O.A.L](#)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3년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개념에 해외입

21 최연혁 2023, p.131.

22 정민정 2022, 19.

23 박영수·정애리·김향은, 2014.

양인을 포함하고 입양동포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마다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를 개최하고, 입양동포와 모국 간의 상호이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자조활동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 또한 입양동포 단체 간의 연대 강화를 지원하고, 입양인 세대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기획하는 등, 재외 입양동포 디아스포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²⁴

한편 해외에 있는 입양동포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입양동포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나둘씩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에 맞춰 재외동포의 민원 지원을 위해 개소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에 입양동포 전담창구를 마련했으며, 입양동포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입양동포 실태 조사를 계획하는 등, 입양동포 디아스포라를 위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²⁵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에 대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쳐온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갑자기 사례가 증가한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제한된 여건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호 대상 입양인의 초기 적응을 위한 생계, 거주, 의료, 교육, 상담 등 필수적인 기초적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온 시간이었다. 이제부터는 영역별로 더욱 정교화되고 다각화된 지원을 모색할 시점이다.

차제에 해외입양인 디아스포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실천에 대한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

24 이현준 2024, p.41.

25 김채영 2025, p.16.

는 발전 방안을 현실화하는 연속적 시도와 성과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과 적절한 안배,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의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 원리를 따르기 어려운 인권과 사회복지 부문에서조차도 효율성의 문제는 종종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곤 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투입한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대상에게 얼마나 좋은 성과를 얻었는지를 중시하는 효율성의 잣대로만 본다면,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소수를 위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일 수 있다.

입양된 국가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입양, 이주, 복합적인 심리정서적 이슈를 지닌 채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정착하는 데 느리고 더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을 돕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과도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정착과 적응, 자립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와 기관, 개인과 집단의 상당한 물리적·정서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고비용 저효율’의 소모적인 사업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개인의 문제를 개인만의 문제로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건강한 집단과 사회, 국가는 공동체의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 구성원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이를 통해 위기와 위협에 처한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 건강성과 회복, 재건을 도모한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유리되지 않도록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개인과 공동체를 돌본다.²⁶

이런 차원에서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도

26 김향은 2024,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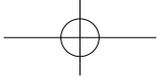
적 지원의 연대적 모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디아스포라 가운데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정책 수립과 실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해외입양인 지원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이 증대되고 관·산·학 간의 유기적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광주. 2022. “국의 입양인의 귀국 이후 대응서비스에 대한 고찰.” 보호대상 입양인 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41-53.
- 김연수. 2022. “원활한 모국정착을 위한 장·단기적 제언.” 보호대상 입양인 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7-18.
- 김재민. 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기억과 전망> 35: 313-314.
- 김채영. 2025. “입양인 전담창구 사례 등 설명”.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13-16.
- 김향은. 2024. “사회적 기업을 통한 보호 대상 해외입양인 지원의 과제.” 사회적 기업을 통한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자립 지원을 위한 토론회집.
- 김향은. 2025.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을 위한 국내 정착 지원의 과제”.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53-58.
- 김혜경 외. 2020. <가족복지론>. 공동체.
- 김호. 2024.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코칭과 사회적 기업에의 적용 방안.” 사회적 기업을 통한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자립 지원을 위한 토론회.
- 도규리. 2025. “입양인 가족 국내 정착지원 사례.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17-25.
- 민은경. 2021.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 해외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 협약 읽기”, <여성문학연구> 53: 27-37.
- 박영수·정애리·김향은. 2014. “위기 입양인을 위한 정신심리치료 접근방안”.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 2014. “국가별 국외입양 현황”.
- 보건복지부. 2017.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력 비준동의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0.
- 소현숙. 2023. “입양으로 살펴보는 한국 근현대사”. 국가적 입양 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1-10.
- 아동권리보장원. 2025. 아동권리보장원 소개. 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129&cntntsId=1105에서 5월 1일 인출.
- 아동권리보장원·해외입양인연대. 2022. <보호대상 입양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토론회>.
- 안준한. 2025. “가족찾기 사업 소개.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3-12.
- 이봉주. 2004. “한국의 입양: 현황과 미래 전망.” 입양: 실제와 정책 그리고 다문화. 입양 국제 컨퍼런스 자료집, 61-89.

- 이주연. 2023. “기록과 정보공개.” 국가적 입양 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11-24.
- 이현준. 2024. “재외동포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업을 통한 보호대상 해외입양인 지원.” 사회적 기업을 통한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
- 임영연·임채완. 2012. “해외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 한국 내 주요 신문보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6(26): 77-104.
- 장운수. 2008. “한인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세계지역연구논총> 26(3): 83-103.
- 재외동포청. 2025a.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68에서 5월 1일 인출.
- 재외동포청. 2025b. 지원센터 소개.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45에서 5월 1일 인출.
- 재외동포청. 2025c. 재외동포청, 입양동포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 재외동포청 보도자료 3월 25일.
- 정민정. 2022. “추방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도개선-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입법현황과 대응방안.” 보호대상 입양인 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19-37.
- 정민정. 2025. “미국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문제와 개선 방안.”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33-51.
- 최연혁. 2023. “유럽 입양인들과 차세대 재외동포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정책의 고찰.” <외교> 147: 131-145.
- 최영권. 2023. “NYT 초저출산 1위 대한민국, 세계 최다 해외입양국 오명 벗지 못해”. 서울신문 9월 18일.
- 통계청. 2025.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지표누리 e-나라지표.

- Bartholet, E. 1993. “International adop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uture of Children* 3(1): 89-103.
- Cho, Amanda. 2025. “Actual Policy Need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59-62.
- Kim, Oliver. 2025. “Proposal for Establishing an Education & Community Center for Overseas Korean Adoptees.”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27-31.



Child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Overseas Koreans Agency. Furthermore, by reviewing the future support tasks for the diaspora of overseas adoptees residing in Korea, this study seeks to propose improvements in a more progressive direction and provide insights into the construction of a healthy community.

Keywords: Adoption, Overseas Adoption, Overseas Adoptees, Diaspora of Overseas Adoptees, Support for Overseas Adoptees

논문 작성 규정

1. 원고의 분량

① 원고는 글자 크기 10pt, 본문(표 및 각주), 각주, 국문 요약, 영문 요약을 포함하여 A4 20매를 초과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은 원고 분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고의 구성과 작성

① 원고는 국문 요약, 영문 요약, 본문(표 및 그림), 각주, 참고문헌으로 구성되며 국문 요약과 영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을 포함하여 A4 1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② 시작할 때 “서론” 또는 “들어가며”, 끝날 때 “결론” 또는 “나가며” 등을 사용하며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1, 1)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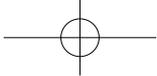
③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출전의 표기는 각주로 하며 본문 각 페이지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의 경우 하버드 스타일과 시카고 스타일을 합쳐진 형태로 본문이 아닌 각 페이지 밑에 위치한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하며 저자 성, 연도, 페이지수를 예를 들어 “Rousseau 1755, p.29.”처럼 표기한다. 다음 또는 이후 각 주에서도 동일한 출전이 나올 때 *ibid.*나 *op.cit.* 또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을 사용하지 않고 “Rousseau 1755, pp.40-41.”처럼 표기한다. 한글, 중국인명은 성과 이름을 모두 기입한다.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간지명, 발행 연월일, 면수를 “〈중앙일보〉 2023.04.08, p.5”처럼 표기한다. 저자가 4명 이상인 경우는 맨앞에 있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홍길동 외 1991, pp.35-36.”처럼 표기한다.

④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참고문헌은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만 포함시킨다. 저자의 경우 서양어는 “성, 이름”으로 표기하며 한국어, 중국어는 “성+이름”으로 표기한다. 순서는 한글(가나다 순), 영어(abc 순), 기타 외국어 순서로 한다.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를 사용하며, 저서는 영어 등 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으로 된 저서는 이중격쇠 『』로 표기한다. 잡지 명칭은 〈〉를 사용한다. 동양 저널의 경우 권호, 서양 저널의 경우 volume, number와 페이지를 표기하며 예를 들어 15권 1호의 경우 31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이면 “15(1): 31-69”로 표기한다.

〈참고문헌〉 작성 예:

- 정한울. 2019.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한국인의 정책선호: 웹 서베이 실험을 통한 프레임 효과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15(1): 31-69.
- Miguel, Edward. 2005. “Poverty and Witch Kill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4): 1153-1172.
- Palier, Bruno. 2010. “Continental Western Europe.” In Francis Castles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pp.601-61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iketty, Thomas. 2013. *Le Capitalisme au XIXe Siècle*. Paris: Seuil.
- Proudhon, Pierre-Joseph. 1851. *Les Confessions d'un révolutionnaire, pour servir à l'histoire de la révolution de Février*. Paris: Garnier Frères.
- Tesliuc, Emil, Lucian Pop, Margaret Grosh, and Ruslan Yemtsov. 2014. *Income Support for the Poorest: A Review of Experience in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ions in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doi:10.1596/978-1-4648-0237-9.



⑤ 각 문단의 첫 줄은 탭으로 첫줄 들여쓰기를 하며 스페이스바로 각 문단의 첫 줄 띄는 것을 금지한다. 스페이스바로 각 문단의 첫 줄을 띄는 경우 스페이스 자체가 하나 하나 글자로 인식되어 편집 시 하나씩 지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논문 작성에 대한 기타 사항은 편집부로 문의한다.

사단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People in Northeast Asia

동북아한민족협의회는 1999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팔레스 호텔로얄 볼룸에서 50명이 모여『동북 아세아선교회』로 시작하였으며, 2000~2002년 3월까지『동북아세아선교회』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방배 1동 909-8²층 20명에 임차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후『동북아세아선교회』는『동북아한민족협의회』로 2003년 2월 15일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¹⁰⁷호를 받아 대북지원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 2008~2017년 기간에는 남북 교류중단으로 NGO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탈북자 주민들을 돕고 있다.

사단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는 북한동포 의약품 지원^{항생제, 영양제, 비타민, 결핵약 등}, 북한동포 생필품지원^{밀가루, 식용유 등}, 북한 농어촌 지역 옷감지원, 생필품^{라면, 쌀, 세탁비누 등}, 비료지원 등을 통해 민족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시대를 향해 기도로 비상하며 복음통일의 역군으로서 NGO가 되길 갈망하고 있다.

● 북한 의약품 지원

1차로 2000년 5월에 북한에 지원할 의약품^{항생제, 비타민, 영양제 등} 원화 10억 원을 미국 샘 의료재단 협조아래 모금하여 지원하였고, 2차로 2003년 5월 의약품^{항생제, 비타민, 영양제 등} 56만불^{원화 6억7천만원} 상당을 남포항을 통해 북한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경유하여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결핵 약 한 알이 없어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 30만 명을 위해 ‘SBS 북한결핵 어린이 돕기’ 패널리로 참석 전국적인 후원 모금에 동참, 선교비를 후원하였다.

본회는 이 민족의 소망과 열망인 평화통일의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북한 동포에게 생필품(밀가루, 옥수수, 분유, 식용유 등)과 의약품(항생제, 영양제, 결핵약, 비타민, 연고 등)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정부의 통일정책,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본 통일방향을 홍보하고 북한동포의 사랑의 실천(물자지원)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일익을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다(정관3조).

● 북한교회 의류지원

2002년 9월 28일 평양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가정예배 처소에 양복 옷감2000벌을 지원하였다.

● 평양 빵 냉동공장 지원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식료품 보관에 따른 문제로 인해 2006년 5월 평양 빵공장에 냉동설비 12억원을 남포항을 통해 북한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경유하여 지원하였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동포 의약품(항생제, 영양제, 결핵약, 비타민, 구충제, 연고 등) 지원, 북한동포 생필품(밀가루, 옥수수, 분유, 식용유 등) 지원, 북한 교류 및 시설지원.(봉수 빵공장, 냉동설비), 북한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정예배처소 물품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포럼, 세미나, 간행지 발간, 북한선교(가정예배 처소 중심),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을 진행한다.

동북아한민족연구소는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과제를 연구 목적으로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및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단행하는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산하 연구소이다.

사단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를 섬기는 분들

본회직명	성명	주요 경력
대표회장(이사)	양병희	대한성서공회이사장/기독교연합신문사 대표이사
이사장(이사)	이정익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장 / 영안장로교회 당회장
부이사장(이사)		전 CBS 방송이사장 / 희망재단 이사장 / 신촌성길교회 원로목사
이사	김진홍	CBS청주방송국이사장 / 금천교회 원로목사
이사	백승역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중경총회장 / 서산이룸교회 원로목사
이사	박응순	인천경찰청 중앙경목위원 / 주안중앙교회 당회장
이사	선중희	전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사무국장 / 행복한동산교회 당회장
이사	온재천	아산기독교연합회회장 / 광혜교회 당회장
이사	안주훈	개인사업 / 영안교회장로
이사	정광식	(주)지엔씨오토 대표이사 / 은평교회 집사
이사	박양수	개인사업 / 장로
이사	이범균	디엠케이 대표이사 / 장로
사무총장(이사)	한안석	대통령직속민주평통자문위원 / 미 정부법인 워싱턴북한선교회 이사 / 개혁주의생명신학 실천신학회 협력이사
감사	조관섭	개인사업 / 장로
감사	강명식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장		
후원이사	김기주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김현수	개인사업 / 안수집사
후원이사	김대수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김형곤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김수남	약사 / 안수집사
후원이사	김중배	개인사업 / 안수집사
후원이사	권형남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사장 / 안수집사
후원이사	박영희	개인사업 / 권사
후원이사	박용균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백성국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신동욱	회사원 / 장로
후원이사	이건수	백석대학교수 / 장로
후원이사	이준영	개인사업 / 안수집사
후원이사	유택열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이강식	개인사업 / 안수집사
후원이사	이동규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안영준	교사 / 안수집사
후원이사	양병찬	개인사업 / 장로
후원이사	최중수	우리의원 원장 / 안수집사
후원이사	하영균	개인사업 / 안수집사

자문위원	김진섭	전 백석대 부총장 / 전 백석신학대학장
자문위원	김성훈	법률사무소 청지기 대표 / 경기도 고문 변호사
자문위원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 기독교통일포럼 공동대표 / 거룩한문성문교회 원로장로 / 기독교 통일포럼고문 / 통일선교아카데미본부교수 초대원장 / 4.19혁명공로자회 고문
자문위원	이양호	동북아한민족연구원장 / 전 고려대학교 교수 /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자문위원	조창희	안양대 겸임교수 / 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문위원	주도홍	문화예술경영연구원장 / 민우세무법인 고문
자문위원	주도홍	전 백석대 부총장 / 전 기독교통일학회 회장
자문위원	주동일	동원대학교 교수 / 영안교회 장로 /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부총회장
자문위원	송태호	송내과의원 원장 / 영안교회 장로
연구위원	이동현	교회정보기술연구원장 / 스마트섬문화운동본부 운영위원장
통번역위원	김조셉	전 영안교회 영어예배부 전도사 / 프리랜서 통번역
통번역위원	유진	영안교회 영안방송실 통번역 간사
재정간사	이정순	동북아한민족협의회 재정간사 / 영안교회 권사
행정간사	박춘덕	통일부 정보분석국 사무원 / 잘누리연구소 여행연구소장 / 중앙향토문화해설사
연구간사	오홍엽	동북아한민족연구소장 / 친디루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홍보간사	정영교	중앙일보 연구원 / 영안교회 집사 / 중앙일보 외교안보부 기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20개 상임위원 / 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표회장	이 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양 병 희	이 정 익	김 진 홍	백 승 역	박 응 순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선 중 희	은 재 천	안 주 훈	정 광 식	박 양 수
이 사	사무총장 / 이사	검사	검사	
				
이 범 군	한 안 석	조 관 섭	강 명 식	

사단법인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 인사말

우리 동북아한민족협의회는 2003년에 발족되어 발전을 거듭해 오다가 2008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남북관계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지난 2018년 동계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씨앗이 되어 민족의 남은 과제로써 조국의 평화와 복음통일과 사람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와 복음 및 사람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국가안보와 더욱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은 지속되기를 기도하며, 동북아한민족협의회 홈페이지가 북한동포를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2000년 양복지원

2002년 9월 28 일 평양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가정예배
처소에 양복 옷감 (2000벌*10만원=2억원)을 지원하였다.

28 September 2002

법인설립허가

2003년 2월 15일 동북아한민족협의회는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 (107호)를 받아 활동하였다.

15 February 2003

의약품 56만불 지원

2003년 5월 의약품(항생제, 비타민, 영양제 등) 56만불(원화 6억
7천만원) 상당을 남포항을 통해 북한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경유하
여 지원하였다.

1 May 2003

1 May 2006

평양 땁공장 냉동설비 12억원 지원

2006년 5월 평양 땁공장에 냉동설비 12억을 남포항을 통해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경유하여 지원하였다.

*결핵 약 한 알이 없어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 30만 명을 위해 *SBS
북한결핵 어린이 돕기' 패널로 참석 전국적인 후원 모금에 동참, 선
교비 후원하다.

15 February 2003

법인설립허가

2003년 2월 15일 동북아한민족협의회는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 (107호)를 받아 활동하였다.

의약품 56만불 지원

2003년 5월 의약품(항생제, 비타민, 영양제 등) 56만불(원화 6억
7천만원) 상당을 남포항을 통해 북한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경유하
여 지원하였다.

1 May 2003

1 May 2006

평양 땁공장 냉동설비 12억원 지원

2006년 5월 평양 땁공장에 냉동설비 12억을 남포항을 통해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경유하여 지원하였다.

*결핵 약 한 알이 없어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 30만 명을 위해 *SBS
북한결핵 어린이 돕기' 패널로 참석 전국적인 후원 모금에 동참, 선
교비 후원하다.



사업

북한의약품, 양복지원, 항공장 냉동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고 있는 동북아 한민족협의회가 앞장서고 있다.



북한의약품지원 사업 16억7천만원

2000년 6월에 북한에 지원할 의약품(항생제, 비타민, 영양제 등) 원화 10억 원을 미국 셀 의료재단 협조아래 모금하여 지원하였고, 2003년 6월 의약품(항생제, 비타민, 영양제 등) 56만불(원화 6억7천만원) 상당을 남포항을 통해 북한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경유하여 지원한다.



북한교회 양복지원사업 2억원

2002년 9월 28 일 평양봉수교회와 월골교회 가정예배 처소에 양복 20감 (2000벌*10만원)을 지원하다.



항공장 냉동설비 지원 12억원

2006년 5월 평양 항공장에 냉동설비 12억원을 남포항을 통해 북한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경유하여 지원하다.



탈북지원 및 운영비용 10억원

2008년 - 현재까지 남북교류 중단으로 NGO 등의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국내에 있는 탈북한 이주민을 돕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북한 강영섭위원장과 교류



북한 빵공장 냉동설비 커팅식, 오경우 서기장과 함께



북한 빵공장 냉동설비 탐방



북한 빵공장 작업공정



북한 빵공장 작업공정



북한 빵공장 작업공정



북한 의료원 방문



북한 의료원 방문



북한 유치원 방문



북한 유치원 방문



북한 소년궁전 방문



북한 원예과수지 방문



북한 원예과수지 방문



북한 종교계 인사들과 면담



북한 봉수교회 예배



북한 평양 형제산구역 세포 1동 35인민반 주민들과 가정예배



북한 칠골교회 예배



북한 칠골교회 앞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안교회
Young An Presbyterian Church



인사말

45년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안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영안교회는 제직 4,472명 등 16,000명의 영안가족이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영안교회를 통하여 철저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며 성경교육을 통한 청지기 훈련을 실시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현장 사역을 통해 이 땅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영안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경중심의 교회요, 복음중심의 교회요, 선교중심의 교회요, 또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영안교회는 교회설립 45주년을 맞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없는 도약을 꿈꾸며 구체적인 비전을

세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성목회, 건강한 영혼, 가정, 사회를 만드는 치유목회, 교육과 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목회,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젊은이를 키우는 비전목회입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고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몸부림과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균형목회를 향한 영안교회는 앞으로 2030년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외적으로는 선교에 내적으로는 성숙을 향해 전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팀 사역을 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자들로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저의 온 삶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러한 목회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영안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항상 관심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시는 국내외 목회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영안교회 인터넷 공간이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의 도전과 위로가 되고 영적인 회복과 충전을 누리는데 또 하나의 영안교회로 자리매김 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감격과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담임목사 양병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영안공동체

영안장로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훈련된 평신도와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25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영안공동체”라는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영안교회는?	균형목회상	비전(Vision)	사명들	세 가지 전략
1. 그리스도의 몸 2. 복음의 일꾼 3. 교회의 일꾼 4. 전도 사역 5.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1. 영성목회 2. 치유목회 3. 교육목회 4. 비전목회	1. 성령충만 2. 확실한 신앙고백 3. 고지 선점(인물 양성) 4. 통일 시대 준비	1. 전도 2. 양육 3. 성숙, 교육 4. 훈련 5. 예배, 친교, 봉사	1. 나이테 전략 - 신앙의 중심으로 흡수 2. 평생 교육 -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 3. 평신도 사역 - 은사 발견 및 봉사 파견

영성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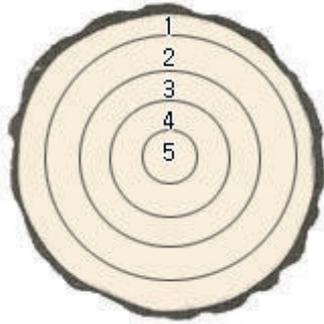
- 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 예배 회복
- ② 기도 회복 - 기도운동 활성화

치유목회

- ① 영육간의 치유 - 내적/영적/ 심령/ 인격, 전인적 치유
- ② 가정 - 관심/사랑/행복 프로그램
- ③ 사회적 치유 - 윤리/준법/노인사역/싱글사역/소외 이웃돌보기 등

교육목회

전도 1단계: 복음전파	양육 2단계: 구원의 확신	성숙 3단계: 신앙성숙	지도자(재생산) 4단계: 리더십 양성
1. 태신자 걱정 및 전도교육 2. 전도특공대 및 기도특공대 3. 새가족반 기초과정(세례필수과정)	1. 새생명반 2. 정착반	1. 확신과 성숙반 2. 제직학교반 3. 성경통독반 4. 성경일독반 5. Q.T반	1. 목자세미나 2. 헌신자 훈련 3. 중직자 세미나 4. 제직 세미나 5. 필요한 재교육



목회자를 돕는 평생프로그램

1. 구원상담 새가족등록 후 접견
2. 새가족반 기초1, 정착반
3. 훈련반 확신, 제직학교반
4. 지도자반 봉사 및 지도자 훈련

비전목회

- ① 국내 선교
- ② 국외 선교
- ③ 통일시대 준비

